

1997 | 연구보고서

**미성년자 음주·흡연 규제연령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미성년자 음주 · 흡연 규제연령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치 안 연 구 소

Research Institute of Police Science

미성년자 음주 · 흡연 규제연령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研究陣》

김 준 호 (고려대학교)

김 선 애 (나사렛대학교)

목 차

서	론	1
제 1 장	： 청소년의 개념	8
1절	청년기의 특징과 연령 규정	8
2절	청년기의 특성 : 발달론적 관점	18
제 2장	： 약물과 범죄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	38
1절	： 유해약물의 남용 실태	39
2절	： 약물과 범죄의 인과관계	41
3절	： 약물 남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45
1.	선택적 상호작용 이론	46
2.	상황일치 이론	50
제 3장	： 청소년보호법상의 연령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54
1절	：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	55
1.	입법 동기	55
2.	구체적인 내용	56
3.	법률제정에 대한 평가	57
2절	： 비교법적인 고찰	58
1.	미국	58
2.	독일 :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	61
3.	일본 : 미성년자음주금지법과 미성년자흡연금지법	64
1)	미성년자음주금지법	64
2)	미성년자흡연금지법	65
4.	비교결과	65
3절	： 청소년보호법의 법체계상의 문제점	67
1.	청소년보호법의 기타 국내법과 중복·모순관계	67
1)	민법과의 중복·모순	67
2)	현행 청소년기본법과의 관계	68
3)	기타 법령과의 모순·충돌	69
2.	법률만능주의	70
1)	법률적용의 일반원칙	70

(가) 신법우선원칙	71
(나) 특별법우선원칙	71
(다) 특별법우선원칙과 신법우선원칙의 내재적인 한계	72
3. 청소년보호주체의 애매성	73
4. 법률문언의 모호성	75
4절 : 결론	78
1. 보호연령의 통일적인 적용	79
2. 사법적인 통제의 합리화	81
3. 기타 법률들과의 유기적인 조화	82
제 4 장 : 음주 및 흡연에 대한 태도에 대한 심층면접	83
1. 술과 담배의 남용실태	83
2. 음주와 흡연과 비행간의 관계	85
3.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태도	86
4. 단속 경험 및 단속에 대한 태도	87
5. 규제연령에 대한 태도	88
6. 연령확인 절차 문제점	90
7. 위반시 처벌에 관한 태도	90
8. 청소년보호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전제 조건	91
결 론	94
참고 문헌	107
부 록	111
[부 록 1] 독일의 청소년보호법	111
[부 록 2] 일본의 청소년 관계법률	116
[부 록 3] 청소년 음주 흡연 금지 연령	117

서론

IMF 한파가 밀어닥치면서 청소년문제가 언론에서 소홀히 취급되기는 하나,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가 학교폭력을 포함한 청소년문제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학교주변에서 싸움을 하거나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학생은 예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친구나 후배들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갈취하거나 집단적으로 다른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는 요즈음 들어 부쩍 늘어난 행태이다. 최근에 조사된 한 연구에 의하면 중학교 남학생 중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학생이 60%에 달하며,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교에까지 퍼지고 있어 50%의 초등학생이 친구들이 학교폭력으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제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청소년비행의 배경에는 두 가지 근본 원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첫째는 학력중심사회인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 못하는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학력중심 사회에서 명문대에 진학한다는 사실은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사실 우리나라의 명문대의 교육의 질이 소위 비명문대보다 더 좋다는 증거도 없다. 교수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란 매우 힘들지만 비명문대 교수들이 명문대 교수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증거는 없다. 교육시설 등에 차이가 있기는 소위 명문대의 시설도 외국의 명문대와 비교하여 보면 열악하기는 오십보 백보이다. 결국 명문대에 진학한다는 것은 학벌과 학연을 따기 위한 수단이지 교육의 질에 있는 것은 아니다.

혈연, 지연, 학연이 판을 치는 사회에서 학연의 의미는 중요하다. 혈연과 지연은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노력에 의해 사회적 연줄망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학연뿐이다. 학벌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소위 기득권 층에 진입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은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명문대는커녕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없다는 현실은 사회적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5,60년대 가난했던 시절에는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지금은 사정이 변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으나 공부를 못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더 심

각한 것은 중학교 졸업 후 성적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다. 이들은 십대 초반에 사회적 낙오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된 학생들은 서로 모여 집단을 이룬다. 비행집단을 이룬 청소년들은 공부에는 관심이 없으며, 학교 주변에까지 침투한 온갖 유해업소에 드나들게 된다. 유해업소에 출입하려면 유흥비가 필요하게 되며,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며 친구들의 금품을 갈취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 나라 청소년비행의 두 번째 중요한 이유인 청소년 불건전한 문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불건전한 문화는 두 가지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첫째는 인쇄매체나 영상매체, 컴퓨터를 통한 음란물과 술, 담배, 본드, 부탄가스 등 유해물질 오남용과 관계된 것이다. 유해매체와 유해약물은 유해업소와 직결된다. 노래방, 비디오방, 만화방 등은 유해매체와 연결된 유해업소이며 소주방, 단란주점, 디스코장 등은 유해약물과 관련된 유해업소이다. 즉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와 약물, 그리고 이러한 유해물을 유포하고 조장하는 유해업소와 관련된 불건전한 문화이다. 둘째는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되고 있는 폭력문화이다.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문화, 선배가 후배를 버릇을 가르친다라는 명분에서 쉽사리 폭력을 휘두르는 문화는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에까지 확산된 폭력문화이다. 험한 욕설을 서로 간에 쉽사리 할 수 있는 문화가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유해문화와 폭력문화는 비행소년들 사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거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확산되어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반장도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으며, 학급의 규율을 잡기 위해 같은 반 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불건전한 청소년문화 중에서 특히 우려되는 점은 우리 나라 청소년들 사이에 음주와 흡연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조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고등학교 학생의 80% 가까이가 음주와 흡연의 경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심각한 정도가 이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음주와 흡연 자체가 비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아울러 음주와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남용을 하는 학생의 비율은 4-50%이며, 나머지 학생들은 어쩌다 술을 마셨거나 담배를 피운 경험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나

라에서는 술에 대해서는 허용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제사를 지낸 후에 음복이라는 형태로 술을 마실 기회도 있으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술과 담배를 경험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심지어는 수학여행 기간 중에 선생님과 더불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적지 않아 비록 비율이 높기는 하나 나름대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술과 담배에 빠져든다는 사실이 심각한 비행에 젖어드는 출발점이 될 개연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음주와 흡연은 의미를 갖는다. 환언하면, 음주와 흡연 경험이 있는 모든 학생이 비행청소년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비행청소년치고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이 없다는 점과 더불어 음주와 흡연이 보다 더 심각한 약물비행인 본드나 부탄가스 등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음주와 흡연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심각한 청소년문제는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청소년 약물이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성인의 약물남용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요즘 세대를 볼 때 청소년 약물남용이 민산의 불이 아닌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1997년에 발효된 청소년보호법이 음주와 흡연 등 불건전한 약물과 음란물을 위시한 불건전한 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근간으로 하였다는 점은 올바른 시각이라 아니 할 수 없다¹⁾.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은 출발 당시부터 동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연령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최근 행정쇄신위원회의 법률개정 계획으로 인해 몇 살까지가 보호대상 청소년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 역시 보호대상 청소년의 연령에 관한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의 제2조 1항에 의하면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18세 이상부터는 동법에 의해 청소년으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음주나 흡연이 허용되며, 유해매체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령규정은 다음의 3가지 면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첫째, 청소년의 연령의 규정하고 있는 다른 현행법과 청소년보호법간의 상충이 된다는 점이다. 현행 각종 법률을 보면 18미만에서 20세 미만까지 다양하게 청소년의

1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폭력문화가 배제되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될 것이다.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화진흥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민법이나 미성년자보호법과 풍속영업법, 소년법 등에서는 “20세 미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극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과 술,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는 주요 법률인 풍속영업법내에서 조차도 보호대상 청소년의 연령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세 미만은 술이나 담배를 마시거나 피울 수 없으며 술집에 출입을 할 수는 없지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을 술집 접대부로 고용할 수는 있다는 모순이 있다.

둘째, 청소년이라는 용어와 유사한 용어들이 사용되어 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기본법 등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며, 영화진흥법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18세만을 “연소자”로 하고 있으며, 민법이나 미성년자보호법,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연령에 대한 규정이 없이 “미성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민법에서 규정한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원용하고 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과 미성년자를 풍속영업의 종류에 따라 출입제한연령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미성년자를 혼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 “아동”, “미성년자”, “연소자” 등의 용어가 법률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면 서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개념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서로 유사한 개념이라면 하나의 개념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서로 유사한 개념이 다양한 법에서 혼용되고 있는 실정에서는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규정과 사회*문화적 규정간의 상충의 문제이다. 조선 시대에는 사회문화적으로 결혼을 하면 성년으로 인정된 반면에 나이가 많더라도 아직 미혼이면 완전한 성년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로 들어서면서 초혼 연령이 늦어지게 되면서 결혼 여부보다는 교육과정 중 어느 단계에 있는가가 성년으로 인정여부에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예컨대 중학생은 연령으로 보아서나 교육과정 상 단계로 보나 미성년으로 간주되는 반면에 대학생이라면 성년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생 본인들도 대부분 청소년 즉 미성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미성년이다. 그러나 18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규정할 때 상당수의 고등학교 3학년이 성인으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신학기가 3월에 시작하는 나라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3/4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 전에 18세가 된다. 부연하면 3월 이후에 태어난 학생은 8세에 국민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관행상 나이는 19세가 되며 생일이 지나면 만 18세가 되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미국과 같이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마찬가지로 존재하나, 교육단계보다는 법률적 규정이 우선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전통과 사회문화적 환경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한편 20세 미만 즉 19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면 대학 1학년의 대부분과 2학년 학생의 일부분이 청소년으로 규정되어 대학교 2학년 학생이라도 만 20세가 되지 않으면 술이나 담배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미성년에서 벗어나며 특히 대학생은 성인으로 간주되는 사회에서 20세 미만은 모순이 있으며, 나이가 많더라도 고등학생이면 아직 미성년으로 간주되는 사회에서 18세 미만이 청소년이라는 규정은 사회문화적 규범과 상충되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야심적으로 마련한 청소년보호법은 그 취지와 목적에 있어서 그 의의가 크나 이러한 연령 규정의 문제 때문에 발효된 직후부터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시켰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연령규정에 대한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해답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청소년의 연령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보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장에서 여러 학술적인 이론을 검토하여 청소년에 대한 개념 정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학술적인 개념은 청소년이라는 용어에 대한 사전적인 해설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청소년의 연령에 대한 관심을 갖는 중요한 이유는 어느 연령부터 술담배와 음란물 접촉을 허용하여야 하느냐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를 성인에 가까우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

기로 간주하느냐 혹은 청소년기는 불안한 시기이며 성인이라기보다는 아동에 가까운 속성을 보이는 시기로 규정하느냐를 고려하여 규제연령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발달심리학, 사회학, 아동학 등의 이론에서 보면 청소년은 성인과 아동의 중간단계로 규정된다. 이론에 따라서는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규정되기도 하며, “비교적 안정된 시기”로 규정하는 학설도 있다. 만일 청소년기가 성인보다는 아동에 가까우며 청소년기가 불안정한 시기라고 한다면 청소년의 연령을 가능한 한 높여야 할 것이다.

술,담배에 대한 규제는 물론 그 자체가 청소년에게 권장할 만한 물질이 아니라는 도덕적 판단에 의거한 것이나 더 중요한 것은 술,담배가 더 심한 약물에 빠져들어가는 출입구 약물이라는 점과 술,담배가 다른 비행이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2장에서는 술담배를 비롯한 약물과 청소년비행을 포함한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살펴 볼 것이다. 만일 술,담배가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매우 적다고 하면 구태여 청소년의 연령을 20세 미만으로 규정하여 대학교 2학년 학생의 일부분까지 금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편 술,담배와 청소년문제행동이 연관이 크다고 한다면 연령규제를 18세로 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3장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연령규정에 대한 현행법률간의 상충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각종 법률에서 청소년의 연령규정이 어떻게 상이하며 어떻게 상충되는가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동시에 해결점을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외국의 입법사례를 살펴보아 이러한 상충적인 모순을 외국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려한다.

4장에서는 학부모, 학생, 청소년관련단체 전문가, 수퍼주인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려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에 대한 연령규정, 특히 술,담배를 허용할 수 있는 나이는 법률적인 문제를 넘어선 사회문화적인 규범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의 시행과 관련이 되는 학부모, 학생은 물론이고 청소년 전문가, 그리고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수퍼주인, 약방주인, 술집 주인 등의 의견을 심층면접을 통해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조사를 통해 나타난 다수의 의견을 청소년 연령규정에 수정 없이 반영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데 참고되어야 할 사회문

화적인 요소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 나름대로 청소년에 대한 합리적인 연령을 규정하려 한다.

제 1 장 : 청소년의 개념

1절 청년기의 특징과 연령 규정

인간은 수정의 순간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통해 신체적 기능에서뿐만 아니라 심리적 기능에서도 변화를 겪는다. 인생의 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발달이라 부르는데, 발달의 개념에는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가 모두 포함되며 하나의 특정한 변화가 다른 기능에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발달은 상호작용적이고 누적적이다.

인간의 전 생애를 발달적 접근의 기본틀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20세기 중반까지도 드문 일이었으며 그나마 발달심리학에서의 강조점도 주로 아동기 이전에 치우쳐 왔던 것이 사실이다. 1970년대 이후 발달심리학의 연구 대상은 아동기에서 벗어나 개인의 후반부 생애로까지 확장되었다. 평생발달적 관점을 갖고 있는 발달심리학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영아기, 유아기, 학동기, 청년기, 성인 초중기, 성인후기 등으로 나눈다. 각각의 발달단계는 어느 한 단계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으며, 이전의 단계는 이후의 단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각기 단계마다 뚜렷한 특징을 갖는다.

인간의 전 생애 발달 과정 중 청년기에 대한 관심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00년 전에 이미 '격정적이고 성급하고 자기충동에 따라 행동하기 쉽다.... 그들은 자신이 전지하다고 생각하며 자기들 주장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든 도에 지나치기 때문이다'라고 청년의 본질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중세에 와서는 청년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아동은 곧 바로 성인이 되는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청년기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비교적 최근인 19세기 말 경에 다시 활발해졌으며, 최근에는 발달단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청년기라는 인간발달 단계는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개념이다. 농경사회에서의 아동은 어려

서부터 부모가 하는 일을 보고 배우고 성장하며 어느 일정한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아동도 아니며 어른도 아닌 시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청년기뿐 아니라 아동기도 이와 사정이 다르지 않다. 아동에 관한 사고도 고대에서 170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동이 어른과는 질적으로 다른 아동만의 고유의 특성이나 사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40세를 넘을 수 없었던 시대에는 아동기가 독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어려서부터 성인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므로 아동들은 이미 6-7세에는 생계에 가담해야만 했으며, 오히려 아동기는 성인기의 일부로만 여겨졌을 뿐이므로 자연히 청년기라는 발달단계는 주목받을 수 없었다. 또한 산업화 초기에도 일부 부유계층을 제외한 일반 아동은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청년기라는 단계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 교육기간의 연장 등은 청년기를 인간 발달단계의 중요한 한 시기로 자리잡게끔 하였다.

인간의 발달단계의 한 단계인 청년기는 이 시기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다. 흔히 제 2의 탄생이라고 불리는 청년기는 신체적·심리적·정신적으로 볼 때 아동이 성인이 되어 가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청년기는 아동기적인 환경에서 성인적 환경으로 이행해 가는 시기이며 두 환경간의 교차된 영역을 갖는 시기이다. 즉 청년은 심리적으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중간적 위치에서 과도기적 성격을 띄고 사회적으로는 기존의 사회구조에 편입되지 못하는 주변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청년기는 아동기나 성인기에 속하지 않는 독특한 시기이지만 동시에 양자에 모두 속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중성은 청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불안정과 불균형을 초래시킨다. 또한 청년기에 속한 청년은 때로는 아동으로 때로는 성인으로 대우받고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한 편에도 속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청년은 주변인이나 중간인 이라는 호칭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또한 Hurlock(1976)은 청년기를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전환기이며 심리·정서·흥미·행동·가치관 등의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기, 불안기, 비현실적인 시기로 특징짓고 성인기로 향하는 출발점이 되는 시기로 보았다.

청년기의 전환기, 혹은 과도기로의 성격을 Lewin(1951)은 장이론(field theory)의 관점을 갖고 다음 몇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아동이 성인으로 달라져 간다는 것은 자신의 소속집단의 변화를 의미하고, 이 변화는 청년의 행동에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된다. 부연하면 소속집단의 변화는 사회적 이동을 의미하며, 이 이동은 구성원의 위치 변화를 가져온다. 개인의 환경 구조의 변화는 행동상황과 생활영역의 변화를 야기시킨다. 이 변화는 기존의 근접영역에의 용이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하며 새로운 영역을 근접영역으로 전환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이 영역의 변화는 행동을 규정하며 이 변화 속에 처한 청년은 과도기적 성격을 띄게 되는 것이다. 둘째, 아동집단에서 성인집단으로 달라져 가는 것은 청년들을 미지의 세계, 바꿔 말하면 인지적으로 구조화되지 못한 영역으로 끌어 들어가는 일이다. 이 구조화되지 못한 영역은 명확히 구별할 수 없으며 분화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미지의 영역에서는 본인의 현재 활동의 방향성을 인식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방향 설정마저도 위태로워진다. 따라서 청년기에는 행동에 있어 불안정성이 지배적이 되는 것이다. 셋째, 청년기에는 성적 성숙을 비롯한 신체의 변화를 의식하게 된다. 이 변화는 청년에게 하나의 미지의 영역으로 작용한다. 이전의 신뢰할 수 있었던 영역이었던 신체가 미지의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신체 영역이 인간에게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만큼이나 불안도 심하게 나타난다. 넷째,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전이시 일반적으로 사람은 이전 영역에서는 격리되면서도, 아직 새 영역 내에서의 지위를 확고히 점유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지위로 인한 개인의 정신상태의 불안정성이 초래된다. 환언하면 청년의 세계가 충분히 분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 허용되는 것, 가능한 것에 대한 한계점이 명확하지 못하다. 다섯째, 청년기는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미래 시간적 전망에 있어서의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아동기의 이상목표와 현실목표가 충분히 분화되어 있지 않던 때와는 달리 청년기가 되면 미래의 구조가 점차로 분화되어 미래에 대한 현실, 비현실이 역시 분화된다. 그러나 청년들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불안정하고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이 청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이 되는 과도기적 성격을 내포한다. 따라서 청년은 이제까지의 아동집단이나, 이제부터의 성인집단 그 어느 쪽에도 짊 수 없어 자기소속에 대해 불안해하는 경계인, 주변인으로 묘사된다. 주변인의 행동특징인 정서불안정성과 과민성은 청년으로 하여금 균형을 잃은 행동을 보이게 하며 동요하게끔 만든다. 그렇지만 청년은 끊임없이 정서적인 독립, 이성과의 자유 교체, 책임 있는 역할수행 등을 추구하며 스스로의 생활목표와 자아정체감 발전을 위해 진력하는 존재이기도 하다(Schertzer &

Stone, 1974).

청년기라는 영어의 'Adolescence'는 본시 '성장한다' 또는 '성장해서 성숙에 이른다'의 의미인 라틴어인 'Adolescere'에서 온 말이다. 여기에서 성장이란 생리적·심리적·사회적인 성장(to glow into maturity)을 가르치는 함축어이다. 왜냐하면 성인이 되기 위하여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에는 생리적 성숙만으로는 부족하며 심리적 성숙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지적 발달이 이루어지고 정서적, 사회적으로 성숙하는 현상인 심리적 성숙은 성인과 같은 신체와 성기관이 발달하는 생리적 성숙에 비해 오랜 시간이 걸리며, 사회가 복잡하고 문화가 발달할수록 정서적, 사회적 성숙의 완성은 그만큼 지연된다. 다시 말하면 심리적 성숙의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기간이라 볼 수 있는 역할유예기간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청년기의 기준 설정 문제가 대두된다. 청년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연령, 신체적·생리적 성숙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청년기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년기는 사춘기로 시작되어 성인의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됨으로 끝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청년기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의 조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보는 청년기는 생식기관과 이차적 성특징들이 나타날 때 시작하여 생식체계의 완전한 성숙과 함께 끝난다. 따라서 이러한 생물학적 성숙도가 빠른 9세부터 20세까지의 시기를 청년기로 규정한다. 인지적 입장에서는 추상적 사고와 논리적 추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상위인지 능력을 갖기 시작할 때를 청년기의 시작으로 보고,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 때를 청년기의 종료로 본다. 즉 형식적 조작 사고의 출현과 완전한 획득이 그 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교육학적인 입장에서는 청년기를 학교라는 제도화된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형식의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하는 사회화의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학적인 입장에서는 청년기란 사춘기의 출현으로 시작되며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처양식이 확립되어 사회가 그들의 성인됨을 인정할 때 종결된다고 본다 (Sebal, 1968). 여기에서의 사회적 인정이란 법적 규정을 의미하며 우리 나라는 만 20세를 법률상의 성인으로 인정하여, 성인의 날 의식을 치르며 선거권이 주어지고 부모의 승인 없이 결혼할 수 있으며 유홍업소를 출입할 수 있다. 또한 만 20세가

넘으면 법률을 위반했을 때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처능력의 획득과 사회적 인정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사회적 인정 없이도 대처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 청년기의 시작과 종료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렇듯 청년기 기준 설정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관점과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불가피한 일인 것이다. 제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청년기의 시작은 다음 세 경향으로 대별된다(정우석, 1988); 청년기의 시작을 12세로 보는 경향(대표학자 : Kroh, Hurlock), 13세로 보는 경향(대표학자 : Goodenough, Stern, Spranger, Comenius), 14세로 보는 경향(대표학자 : Tumlriz, Meumann). 청년기 종료 역시 통일된 의견은 없으며 19-20세에서부터 24-25세경까지 여러 가지 경향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청년기의 시작과 끝의 연령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청년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동일하지 않고 각자 서로 다른 견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발달심리학에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13세에서 24-25세를 청년기로 보고, 신체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때를, 심리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는 때를 청년기로 간주한다(조복희, 정옥분, 유가호, 1989).

청년기는 발달심리학에서 인간의 전생애 발달과정을 분류하는데 주로 쓰여지는 용어이며, 이 시기에 해당하는 층을 청년이라 명한다. 그러나 사회학과 법률적 용어에서는 청년이라는 용어보다는 아동, 소년, 미성년, 연소자, 청소년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청소년 개념은 시대나 학자, 관련법규,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됨으로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만 해도 아동과 청소년 관련법규는 해당규정에 따라 이들 용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우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면서, 다만 아동에게 교육이나 보호가 계속 필요할 경우 20세까지 계속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기와 청년기의 구분을 두고 있지 않다. 민법은 '만 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이라 규정하며 미성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소년법은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이라 규정하며, 근로기준법은 여자와 18세 미만의 자를 도덕상이나 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사용치 못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 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9세에서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

다. 이상에서와 같이 용어에서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통일된 연령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국가간에도 청소년의 연령 규정은 차이를 보인다.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는 청소년을 14세 이상 - 18세 미만으로, 핀랜드는 16세 이상 - 18세 미만으로, 프랑스는 13세 이상-18세 미만, 영국은 8세 이상 - 17세 미만으로 한다. 국가간 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는 주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규정이 다를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7개주가 16세까지를 3개주가 18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은 8개주가 16세까지, 11개주가 17세까지, 24개주가 18세까지, 1개주가 19세까지, 2개 주가 21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의 연령적 구분은 대체적으로 18세 미만인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양권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청년기를 연령으로 규정하는데에는 각기 다른 이견들이 있다. 또한 해당 연령층을 지칭하는 용어상의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들을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청년기의 연장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오늘날의 후기 산업사회, 아니 더 나아가 정보화 사회에서는 연장된 청년기가 요구된다. 질 좋은 영양 상태와 성 개방 문화는 사춘기의 시작시기를 앞당겨 신체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청년기는 연령적으로 점점 일찍 시작되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적응력을 갖추기 위해 습득해야만 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방대함으로 인해 더 긴 재학기간이 요구됨으로 청년기의 종료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에서의 젊은 세대는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말미암아 십대와 이십대 초반을 대부분 각종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젊은이의 경우 대학을 나와야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지상과제가 되어 버린 현실에서는 청년기 기간이 심리적이고 생리적인 기준에 의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단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연장된 청년기는 몇몇 단계로 세분할 수 있다. 청년기의 구분은 학자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2단계(전기, 후기), 또는 3단계(초기, 중기, 후기)로 나뉘어진다.

청년기를 3단계로 구분하는 학자로는 Cole, Erikson, Hurlock, Sullivan, Thorndike, Tumlriz 등이 있으며, Comenius, Olson, Shuttleworth 등은 2단계로 청년기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몇몇 연구에서는 학제에 기준하여 중학교, 고

중학교, 대학교 시기를 각각 청년전기, 중기, 후기로 세분하고 있다(김제한, 공석영, 김충기, 1991; 정인숙, 1979; 제경숙, 1989). 이 중 제경숙(1989)은 각 단계의 특징을 중학교 시기인 전기에서 자아와 대상간의 심리적 갈등이 시작되고, 중기에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며, 후기에 와서는 가정관·인생관·세계관이 정립된다고 개괄하고 있다. 또한 김제한 등(1991)은 청년기를 신체적, 생리적 성장과 더불어 정신적 성숙과 사회적 성숙 등 다양한 변화와 발달 양상이 나타나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 청년기를 세 단계로 구분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열거한다. 먼저 청년전기는 감수성이 대단히 민감하며, 동요되고 흥분되기 쉬우며, 대인관계에서 심리적 거리를 가지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그 결과로 고립화와 타인에 대한 반항심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다음의 청년중기는 성장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불안은 줄고, 오히려 성장과 발달에 대한 희망이 증가하며, 자신의 능력이 확대되어감을 느낀다. 마지막 단계인 청년후기는 참된 인간의 체험을 느끼는 것으로 대표되며 넓은 가치 세계를 내다 보게 되고, 이성에 대한 사랑도 그 양상이 보다 지성적으로 확실해짐을 깨닫게 된다. 이 단계의 청년은 정신적인 안정을 이룩하고 장래생활에 대한 방침도 결정되며 세계관도 대체로 확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유아에서 성인이 되기까지의 전체적인 발달과정 속에서 정신발달의 전과정을 연령적으로 구분한 Tumlirz(1927)는 크게 인생의 정신발달 과정을 네 과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발달단계의 중간에는 이행기 또는 준비기라고 여겨지는 시기를 개재하였다. Tumlirz에 의하면 청년기는 내계(內界)의 획득시기로서 연령적으로는 14세에서 17세에 해당하며 여기에 준비기인 17세에서 20세까지가 덧붙여 진다. 즉 그는 청년기를 자아와 외계와의 관련형식 양상에 의해 세 가지 위상으로 구분한 것이다. 각각의 세 가지 위상은 연령에 의해 구별되어지며 각 위상마다의 특징을 달리한다. 제 1위상은 11세에서 14세까지를 포함하며 반항기 또는 부정기로 명명된다. 2차 성징과 더불어 출현하는 성적 관심의 증대는 이 시기의 청년을 불안에 빠뜨린다. 이들은 자신의 성충동을 이해할수도 통제할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정신세계는 불안·불결을 경험하게 되며 자신이나 외계에 대해 모두 부정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제 2위상은 14세에서 17세까지이며 제 1위상과는 달리 성숙기라 불리운다. 이 시기의 청년은 전 시기의 내적 혼란을 통해 자신의 내적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내면 세계를 침범당하지 않으려는 많은 노력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독립된 방이나 자신만의 공간을 갖기를 갈구하며, 서랍을 잠그고, 밤 늦게 혼자

일기 쓰는 것을 좋아하는 등의 행동양식을 보인다. 따라서 내면 세계를 지키기 위해 자기 이외의 세계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 일어난다. 마지막 단계인 제 3위상은 청년기와 장년기의 중간 단계에 오는 이행기로서 17세에서 20세까지의 청년이 포함된다. 이 시기는 청년·처녀기라 불리우며 주관의 세계와 외계 즉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발달시키며 두 세계간의 조화를 구하며 대처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사고와 행위의 유아독존에서 벗어나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며 부모나 교사와 같은 권위에 대한 태도도 변화한다.

Kroh(1930) 역시 청년기를 세 단계로 구분한 대표적인 학자 중의 하나이다. Kroh가 청년기를 구분한 지표는 반항현상으로 인생의 전 과정을 세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이행기를 두어 총 아홉단계의 과정적 구분을 설정하고 있다. 그는 청년기를 13세에서 시작하여 남자는 17세, 여자는 16세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았다. 청년기의 첫 번째 위상은 현실로부터의 도피와 불안의 부정으로 표현되며 13세경에 시작되는데 이 시기의 청년은 자기반성적인 태도를 띄게 되고 반항, 비판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부정주의가 지배적이 된다. 이 부정주의는 불안과 동요를 동반하여 유아독존적인 태도와 동시에 유아기적 성향이 의존성이 공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제 2위상은 건설에 대한 충동과 자아주장 시기로 이전의 아동기적인 성향에서 탈피하여 순수한 청년기 적인 세계에 들어서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예술과 도덕에 관한 근본적 태도에 관해 사색하고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때로는 탐닉과 회의에 떨어지기도 한다. 제 3위상은 가치의 추구, 이상과 현실과의 조화단계로 이전의 발달을 기반으로 한 세계관과 인생관이 확립되고 목표가 뚜렷해지며 실재적인 노력이 행해지는 시기이며, 이상주의적 개념이 편실과 타협하며 조화를 이루는 시기이다. Kroh는 이 제 2위상과 제 3위상의 연령 구분은 명확히 규정짓고 있지 않다.

Buhler(1927)는 위의 학자들과는 달리 청년기를 심리적 경향에 근거하여 2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청년기 전기는 여자의 경우 11세 내지 13세, 남자는 14세 내지 16세에 시작되며 이 시기는 부정적 경향이 특색이며 사춘기라고 한다. 이 청년기 전기의 부정적 경향은 불쾌감, 불안, 저항, 난폭 등으로 표출된다. 또한 감수성이 매우 민감하므로 동요되기 쉽고 내부의 불만에 의해 주위에 반항적이며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 쉽다. 따라서 이 단계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하지 못하며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며 타인에 대한 반감이 증폭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시기

는 Buhler에 의해 부정기라 명명된다. 청년기 후기는 성숙이 완성되어 감에 따라 전기의 성장과정에 수반되는 고뇌와 불안이 줄어들고 의욕이 이와 대치되는 단계로 긍정기라 명명된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 새로운 희망과 희열을 찾게 되며 이 때 참된 자연과 예술의 체험을 하게 되며, 특히 이성에 대한 사랑도 지성적인 면을 중시하게 된다. 이 시기의 특징은 발달한 만족감, 생명의 약동감, 자유와 힘의 감정을 들 수 있다. 이 청년기 후기는 Buhler에 의하면 17세 경부터 시작하여 약 21세 혹은 24세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청년기의 연령은 각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청년기가 단순한 생리학적인 연령으로만 규정할 수 있는 특정한 기간이 아니며 사회문화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청년기는 점점 더 연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청년기 자체가 몇몇 단계로 세분화되고 있다. 학자에 따라 청년기는 2단계, 혹은 3단계로 구분되고 있는데, 각각의 최종 단계는 비교적 정신적 안정을 이룩하는 성숙의 시기로 특징지워진다. 청년 후기로 구분되는 이 시기는 좀 더 성인과 유사한 가치관을 갖게 되며 사회적 역할을 수용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단계로 간주됨을 알 수 있다. 학자들에 의해 합의된 연령 구분은 없으며, 또한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17, 18세 경부터 이러한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청년기와 성인기의 중간단계로 이행하는 시기로 조화로운 사고가 발달하며 환경에 대한 긍정적 사고가 획득되는 특징을 띄며 보다 어른에 가까운 시기이고 어느 정도 안정된 가치관을 형성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음주 및 흡연의 연령 규제 문제는 청년 후기보다는 주로 청년기 전기, 다시 말하면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연령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와 같은 결론은 Hirschi와 Gottfredson(1982)의 연구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연령과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아르헨티나, 영국, 웨일즈, 프랑스, 일본, 스웨덴, 그리고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자료들 통해 연구한 결과 범죄는 국가나 문화의 차이 없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범죄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범죄는 일방통행적인 성격을 지닌다. 일단 범죄를 시작하면 그치기 힘들다는 말이며,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음주와 흡연 역시 일단 습관화되면 끊기가 힘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나쁜 습관을 규제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몇 살에 음주 및 흡연을 허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은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도출되기는 매우 힘들다고 사료된다.

2절 청년기의 특성 : 발달론적 관점

성격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오래된 주제이다. 많은 학자들은 성격과 범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회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범죄와 비행은 설명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배후에는 비행은 심리적 불안감 혹은 억압된 감정의 표출이라는 주장이 근거에 있는 것이다. Yablonski(1988) 같은 학자는 비행소년을 사회화된 비행소년, 신경질적 비행소년, 분열증적 비행소년, 사회부적응 비행소년 등으로 나누어 성격적 특성과 비행 사이에 관계가 있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청소년기의 특성을 살펴보는 작업은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즉 청소년기를 발달단계 별로 나누어 각각의 사회심리적 특성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어떠한 단계가 가장 사회심리적인 문제가 많은지를 알아보는 작업은 음주 및 흡연의 규제연령을 설정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발달이라 함은 심신의 구조, 형태 및 기능이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인간은 전생애를 통해 특징적으로 구분되는 각 단계마다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이 있다. 이 발달과업은 개인의 신체적 성숙, 가치관 및 사회환경의 문화적 기대와 압력 등에 의해 좌우된다. Neugarten(1969)에 의하면 모든 사회에는 연령, 계층의 구분이 있고 각 연령층에 적합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는 사회적 기대가 있다고 하여 각 발달과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압력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발달과업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학자인 Havighurst에 의하면 발달과업이란 인생의 각 시기마다 이루어야 할 과업으로 이것의 성공적인 성취는 행복과 다음 단계의 성공을 가져오고 반면에 실패하게 되면 불행과 다음 단계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정의한다(1953).

그는 발달과업의 중요성에 대해 '단순하고 변화가 없는 사회에서는 성인기 초기에 인생의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해결책을 알고 있었으나 사회적 변화가 급격해서 개인이 변화된 조건에 자신을 계속적으로 적응시켜야 하는 현대의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현대 사회에서의 삶은 배워야 할 과제의 연속이다. 여기서 제대로 배우면 만족과 보상이 오고 배우지 못하면 불행과 사회적 거부를 얻게 된다. 개인이 배워야 하는 인생의 발달과업은 우리의 사회에서 건강하고 만족할만한 성장을

구성한다. 이들은 한 사람이 충분히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으로 판단되고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각 발달 단계는 일정한 과업을 수행해 내기에 결정적인 시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Havighurst(1953)에 의하면 발달과업의 내용은 '생물학적 기초', '문화적 기초', '심리학적 기초', '교육적 관련'에 입각하여 결정된다. 발달과업에는 전문화권에서 보편적인 것이 있고 이와는 달리 특정 문화권 내에서만 볼 수 있는 것도 있다. 다시 말하면 발달과업중 그 기초가 생물학적 성숙에 있는 것은 문화간 차이가 적고, 사회적 요구에 근거한 것은 문화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청년기의 문제나 발달과업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의해 다양하지만 어떤 사회적 구조에 있어서나 작용하게 되는 기초적인 심리학적 원리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usubel(1954)은 청년기가 문화간에 차이를 초월해 각 문화권내에서 공통적인 심리학적 문제를 갖는다는 근거를 다음 다섯 가지 관점을 들어 설명한다.

첫째, 청년기는 인격발달의 이행단계이기 때문에 청년기의 급격한 신체 성장, 사회 지위의 변화 등에 의해 나타나는 불안과 혼란은 문화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청년기의 생리학적 변화는 공통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 변화가 기인이 되어 일어나는 새로운 충동의 발생과 여기에 적응하고 그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요성은 또한 보편적인 것이다.

셋째, 부모의 어린이에 대한태도가 청년의 성격형성에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록 부모의 육아방법이 문화권에 의해 다르다 할지라도 어린이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의 틀이 보편적이기에 청년기의 문제는 문화권간에 보편성을 띤다.

넷째, 청년기에 일어나는 균형의 파괴에 대처하는 적응기술, 즉 퇴행, 공격, 투사, 보상 등과 같은 적응의 기초적 기술은 문화에 관계없이 보편적이다.

다섯째, 어떤 사회에서나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독립과 책임을 지닌 개인이 되고 즉각적인 태락을 연기시킬 줄 알아야 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의 도덕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사회를 막론하고 청년기는 개인의 생물적, 사회적 지위가 변화하는 시기이며 이에 따라 개인의 의무나 책임, 특권, 역할에 현저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새로운 행동의 표준이 만들어지는 시기임을 부인할 수 없다.

어쨌든 인간이 성장·발달해 가는 과정에서의 각 단계별 발달과업의 수행은 전생을 통해 성공적인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각각의 단계의 발달과업은 이후 단계로의 성공적인 전이를 위해 필요하며 원만한 인간으로서의 완성을 위해 수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미 열거한 바와 같이 청년기에는 여러 가지의 과도기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현상은 이후의 성인생활을 위한 하나의 준비적인 단계로서의 행동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과도기적인 행동을 원만히 수행해 나갈 때 청년은 비로소 건전한 한 인간으로서의 성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기에 발생하는 일탈 문제를 고찰하고, 이에 대한 이해 및 지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청년기의 공통된 발달 과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여기에서는 청년기의 공통된 발달 과업을 학자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발달과업의 개념을 완성시킨 Havigurst(1952)는 청년기의 발달과업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첫째 신체 변화와 남성 여성으로서의 역할 인지, 둘째 자신의 신체구조를 이해하고 신체를 유효하게 사용하는 일, 셋째 동년배와의 세련되고 새로운 인간관계 학습, 넷째 부모나 다른 성인으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다섯째 경제적 독립에 대한 자신감 성취, 여섯째 직업의 선택과 준비를 위한 활동, 일곱째 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태도의 발달, 여덟째 사회적 책임있는 행동을 추구하며 수행, 아홉째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준비, 열째 행동지침이 될 수 있는 가치와 윤리관의 확립 등이 청년기의 성취해야만 하는 발달과업이다.

이에 보다 구체적으로 청년기의 발달과업을 규정한 학자로는 Cole(1959)를 들 수 있다. Cole은 청년기의 발달과업을 아홉 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영역에 몇몇 가지의 세부 발달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청년기의 발달과업은 ① 이성에 대한 흥미의 확립 ② 가정으로부터의 해방 ③ 정서적 성숙 ④ 사회적 성숙 ⑤ 직업의 선택 ⑥ 지적 성숙 ⑦ 여가의 이용 ⑧ 인생관 ⑨ 자기에 대한 동일화 등이다. 첫 번째 영역인 이성에 대한 흥미의 확립은 이성에 대한 흥미를 발달시키고 연

장자에게 향하던 애정을 동년배인 이성에게로 전이시키는 문제, 신체 성숙을 당연시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둘째, 가정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부모의 감독으로부터 이탈하며 안정감을 부모에 의존하기보다 자기자신에게서 구하는 능력의 획득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정서적 표현이 유해한 형식에서 무해한 형식으로 변환되어야 하며 정서적 장면에서 객관적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불가피한 일에 직면할 수 있는 능력과 어린이다운 공포나 불안을 제거하여 궁극적으로 정서적 성숙을 꾀하는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성숙 영역은 특정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안정감을 발달시키고 통상적인 사회적 관계로서 타인과 협의할 수 있어야 하며 집단의 활동에 지배와 도피하는 일이 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함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영역인 직업의 선택은 자신의 능력을 합리적으로 정확히 평가하는 것과 성공가능한 직업영역을 선택하고 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충분한 직업훈련을 완성시키는 것과 같은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여섯째 지적 성숙을 의해 인식에 대한 욕구와 지적발달의 완성을 이루고 권위에 대해 일반적인 의심을 품고 실증을 구하는 자세를 익혀야 하며, 일곱째 여가의 활용 영역의 세부발달 과업은 흥미도 있고 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놀이나 취미를 발달시키고 특별히 준비를 요하지 않는 통속적인 게임을 잘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여덟 번째로 인생의 의의를 찾아내려는 부단한 태도가 발달되어야 하는 시기가 청년기이며 이상과 행동의 도덕적 원리를 터득하고 양심과 의무에 충실한 행동을 해야 하는 인생관 영역의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기에 대한 동일화 영역은 자기에 대한 정체지각이 정확하며 자기에 대한 타인의 높은 지각을 깨닫고 가능성이 있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자기 정체를 붙잡아야 하는 세부 발달과업을 갖는다.

간단한 청년기의 발달과업의 제시로는 Corey(1946)의 서술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청년기의 발달과업을 간략하게 다섯가지로 축약한다. 첫째, 신체의 변화를 수용하고 여기에 순응하는 일, 둘째, 적절한 성적역할을 학습하는 일, 셋째, 성인(특히 부모)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하는 일, 넷째, 성인의 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일, 다섯째, 가치체계를 발전시키는 일 등이 Corey가 제시하는 청년기의 발달과업이다.

이상과 같이 학자에 따라 청년기의 발달과업의 세부항목에서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지만 그 커다란 틀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해 가는 과정 중인 청년기에 속한 청년들은 신체적이고 정서적이며 심리사회적인 영역에서

의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 사회 속에서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과도기라 불리우는 청년기가 인간발달단계 중 단지 과도기로서가 아닌 한 발달단계 그 자체로서의 중요성이 인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청년기는 사춘기로 시작되는데 이 발달단계는 어린아이였던 모습에서 탈피하여 어른이 되도록 많은 심리사회적 압력이 증대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속한 청년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동성과 이성과의 친구 관계를 형성하며 진로를 정해야 하는 것과 같은 발달과업을 수행해야만 한다. 청년기는 성인의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됨으로 끝을 맺는다. 성인이란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자신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하며 앞으로 본인의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한 국가와 사회의 국민과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현대 사회의 도시화와 산업화, 정보화, 핵가족화, 자녀수의 감소, 다변성 등은 교육기간과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의 연장을 가져왔다. 환언하면 청년기의 기간상의 연장을 의미한다. 더욱이 오늘날의 사회는 사춘기가 과거보다 빨리 시작되고 있다. 사실상 청년기의 시작은 빨라지고 있으며 청년기의 종료는 늦어져 청년기의 전체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에 따라 통과의례를 만들어 아동과 성인을 명확히 구분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도 과거 분명한 성인의 자각을 심어주고 성인의 대접을 해준 관례의식을 치뤘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졸업식이나 성년의 날 등의 일종의 통과의례가 있지만 이러한 관례가 완전한 성인이 된 것을 보증해 주지는 못한다. 재학기간은 연장되고 있으며 경제적 독립과 결혼 연령이 늦어져 신체상으로는 이미 성인이지만 사회적으로 성인의 지위를 획득하고 역할을 담당할 수 없는 청년기는 자연 연장될 수밖에 없다. 이 자체에 청년기 문제의 한 원인이 있다.

청년기가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00년대에 Hall이 ‘청년기’라는 책을 내면서라 할 수 있다. 1920년대 새로운 세대의 출현은 청년기라는 인생의 한 발달단계의 위치를 서구에서 확고히 하게 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청년들의 반전운동과 히피의 물결은 청년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고조시켰으나, 이미 이 청년운동가들은 십대가 아닌 이십대와 삼십대 초반의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청년기라는 개념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당시의 십대에 국한된 청년기는 청년기 자체의 연장으로 인해 이제 그 연령층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며 청년기를 앞서 살펴본 바 대로 연령에 의해 좀 더 세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청년기를 초기와 후

기로 구분하고 초기를 'puberty'로, 후기를 'youth'라는 시기로 상정하기도 한다 (Keniston, 1970). 본 고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이 중 청년기 초기에 맞추어 청년 초기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청년 초기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법학, 사회학에서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불리워진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청소년'이라 하면 '문제'가 연상될 정도로 기성세대들은 청소년 자체와 그들의 행동을 일정한 틀 속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평가는 극단으로 치우쳐 엇갈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혹자는 청소년에게서 집중적으로 문제 행동을 발견하며 성문제를 일으키고 심리적·사회적 부적응 현상을 보이며 방황과 반항으로 묘사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는 경험적인 증거는 거의 없다(이춘재, 1988). 오히려 반응양식에서의 극단성은 청소년들보다는 아동들이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반응양식을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Lighth, Zax, Gardiner(196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격조사표에서 양극단의 점수를 선택하는 경향성은 아동이 청소년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은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태도와 행동에 부정적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며 더 극단적으로 반응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에게서 꿈과 희망, 추진력, 미래, 이상 등을 연상하기도 한다.

어떤 견해가 옳은지에 대한 평가는 쉽게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을 어떤 성격으로 규정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한 개념 정의 이상의 것이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견해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에 대처하는 대처전략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기를 바라보는 견해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청소년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이 대별된다; 첫째, 청년기는 반항의 시기이다. 둘째, 청년기는 순응의 시기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각 학자들의 청소년기(청년기 초기)를 포함한 청년기 전반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전략의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청년기는 반항의 시기로 보는 견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청년기를 상징하는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질풍과 노도'라는 개념이며, 청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묘사되곤 한다. 이 질풍과 노도는 Hall(1904)이 주창한 견해이며 청년을 보는 일반인의 시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의 연구는 Hall

의 과학적인 태도와 방법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그는 청년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운다. Hall이 쓴 'Adelescence'는 청년기를 인생에서의 특별한 시기로 본 첫번째 시도로 기념비적인 저서이다. Hall의 이론 체계는 크게 4가지의 영향을 받아 구축되었는데, 그 중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Darwin의 생물학적 진화론 개념이다. Hall은 진화론의 개념을 인간발달 연구에 적용하였다. 그는 인간의 모든 발달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고 유아기나 아동기에 있어서의 환경의 영향은 거의 무시했으나, 청년기에 오면 개인의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발달견해를 갖고 있다. 두 번째로 Hall은 Haeckel의 발달 기본법칙인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의 집약된 반복이다'라는 명제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즉, 태내 발달은 인간의 진화과정과 매우 비슷한 발달단계를 거친다는 것이며, 이 반복원칙은 출생 후의 발달에도 계속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즉, 인류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야만사회로부터 문명사회로 발달하였듯이 개인의 발달 또한 유아기로부터 청년기를 거쳐 성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Lamarck의 습득된 형질도 유전된다는 법칙에 의해 한 개인의 행동은 그 개인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또 유전된다고 보았으며, Rousseau의 자연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아동기까지는 방임의 상태로 두다가 교육이 가능해지는 청년기가 되면 교육자가 개입해서 지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상의 이론적 영향을 바탕으로 Hall은 인간 생애의 단계를 상정하였고 그 하나의 단계로 청년기에 주목하였다. Hall의 주장에 의하면 청년들은 갈등하고 방황하고 반항하는 존재로서, 이러한 과정은 아주 당연하고 오히려 필요한 것이며 사회문화적 차이를 막론하고 전 인류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Hall이 청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로 간주하고 이 시기가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년기가 인간의 진화과정에서의 과도기적 단계의 반영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부연하면 아동도 성인도 아닌 애매모호한 위치에서 청년은 자아의식과 현실적응 사이의 갈등, 소외, 외로움, 혼돈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한 긴장과 혼란이 이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조차 지지되어진다. 정신분석이론의 창시자인 Sigmund Freud는 인간의 발달단계를 구분하는데 있어 심리성적 발달을 토대로 한다. 그에 따르면 정신 에너지인 성적 본능 에너지인 리비도(Libido)가 연령의 변화에 따라 집약되는 위치가 변화하는데 이 변화에 의해 인간의 성격은 발달한다. Freud는 인간의 심리성적 발달단계를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출생 후 약 1세까지를

구강기, 약 1세에서 3세까지를 항문기, 약 3세에서 5,6세까지를 남근기, 약 5,6세부터 12세까지를 잠복기, 12세 이후를 생식기로 분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제 3단계인 남근기에 인간의 기본적 성격이 형성되는데, 이 시기에는 이성부모에게 느끼는 성적 애착으로 인한 동성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남아의 경우 Oedipus complex(여아의 경우 Electra complex)가 출현하고 이 갈등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이고 이 동일시의 산물이 바로 초자아와 성역할의 습득이다. 각각의 발달단계에서 순조로운 발달을 보인 사람은 장차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성숙되어 간다. 그러나 이 남근기를 성공적으로 거치지 못하고 동성 부모와의 동일시에 혼란이 생겼던 아동들은 다섯 번째 단계인 생식기에 와서 성적 에너지를 합당하고 원만하게 처리할 능력을 키우지 못해 권위에 반항하거나 비행행동을 보인다는지 이성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Freud는 청년기 이후에 개인이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으로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즉 부모와의 유대 및 갈등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자기의 인생을 확립하는 것이 곧 성인이 되는 것이다.

Anna Freud는 Sigmund Freud의 정신분석이론을 계승하여 인간의 성격 구성요소나 발달단계에 있어서는 Sigmund Freud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Sigmund Freud가 인간의 성격형성에 있어 남근기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한 반면, Anna Freud는 청년기의 특징에 강조점을 두어 청년기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론을 발전시켜 청년기를 이해하려고 하였으며, 청년기에 나타나는 혼란과 방황을 그 이전에 나타났던 외디푸스 콤플렉스의 재출현에 의해 겪게 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녀의 이론의 골격은 청년기에 발달된 생리적, 내분비적 기능의 변화로 말미암아 본능적 욕구인 원초아가 강해지고, 이에 반해 자아가 그 힘을 잃고 약화되는 틈을 타고 잠복기동안 잠잠했던 외디푸스 콤플렉스가 재등장한다는 데 있다. 청년기의 이러한 시련의 정도는 초자아와 원초아간의 관계를 자아가 얼마나 평형을 잘 유지하게 해 주는가에 달려 있다. 이 평형상태는 원초아의 강도나 잠복기에 형성된 성격구조, 또한 자아가 사용하는 방어기제의 성향 및 효율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Anna Freud가 바라보는 청년기는 Hall의 견해와 동일한 질풍과 노도의 시기이다. 그녀가 규정한 청년기는 혼란과 방황의 시기이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생물학적 요인과 발달의 반복적 현상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학자인 Friedenberg(1959)도 개인의 정체(identity)는 청년이 부모 및 다른 권위적 인물과의 갈등을 경험함으로써 발달한다고 보았으며, 청년은 그들을 복종하게 하려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통해 본인의 개성과 독립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Friedenberg도 보편적인 방황과 반항으로서의 청년기를 지지하는 견해를 갖고 있다.

Tumlirz는 인간의 정신발달의 전과정을 연령에 의해 총 네 단계로 구분한 학자이다. 제 1단계(유아기)는 정신의 제형성의 혼란시대로서 1세에서 5세에 해당하며, 2단계(아동기)는 외계의 획득시대로서 7세에서 11세, 3단계(청년기)인 내계의 획득시대로서 14세에서 17세, 마지막 4단계는 장년기로서 20세 이상으로 연령을 구분하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Tumlirz(1927)는 청년기를 내계(內界)의 획득시대(獲得時代)로 보고 있다. 그의 견해는 역시 Hall의 견해와 유사하여 청년기를 부정기(否定期)로 표현한다. 청년기가 부정기로 간주되는 것은 정신발달이 외계(外界)에서부터 내계(內界)로 전환되는 것, 다시 말하면 주의를 안으로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의 원인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충동에 대한 자각이다. 부연하면, 청년기에는 변성, 초경, 몽정, 체모 등과 같은 2차성징(二次性徵)에서 오는 새로운 충동을 느끼고 자신의 신체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초기에는 그 변화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고심하며 어두운 미지의 세계에 끌려 가게 되고, 그 결과 지금까지의 평안했던 심적 평안은 깨어지고 급진적으로 불안의 세계로 떨어지게 된다. Tumlirz에 의하면 이러한 생리적 변화에 의해 유발된 불안과 동요가 원인이 되어 정서상의 문제나 자아의식의 고양, 내성적 태도의 발생, 독립의욕의 증대 등이 나타나게 된다. 이 중 특히 불안은 청년기에 해당하는 자들을 반항과 난폭과 태만과 냉담 등의 행동을 나타나게 하고, 그 불안한 심정은 외계뿐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청년은 성에 대한 관심을 억압하려고 하면서도 억압할 수가 없어 갈등 속에 빠진다. 이러한 내적 혼란을 통해 청년은 자기의 내적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새롭게 발견한 내적 세계를 타인에 의해 침범당하지 않고자 청년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비밀 유지를 위해 애를 쓰게 된다. 이 때문에 청년은 폐쇄된 어두운 내면생활을 하기 시작하지만, 그들이 처한 위치에서 사회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이중된 생활을 해야만 한다. 이 양면생활의 발견은 가치의 전환으로 표현된다. 이로 인해 성인에 의해 주어지던 가치체계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이던 아동기의 특성이 사라지고, 부모나

기타 타인의 권위에 반항하고 전통적 가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비판을 가하게 되며, 전반적인 성인문화에 반항하게 되는 특성을 띄게 된다. 하지만 불안정한 청년기의 의식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충분한 신념을 가질 수 없으므로 자기가치의 평가와 비난으로부터 숨기 위해 성인과 멀어져 동년배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를 나타내며 집단적 허세를 부리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Tumblr에 의하면 청년기는 성인으로 또는 사회인으로서의 생활태도가 확립될 때까지 가치관, 사고, 생활양식, 인생관 등이 정립될 수 없는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갈등기'이다.

청년기를 좀 더 세분화하여 질풍노도의 시기를 한정지은 학자로는 Kroh과 Buhler가 있다. Kroh(1930)는 청년기 초기(제 1위상)를 현실로부터의 도피와 불안의 부정기로 보고 있으며, Buhler(1927)는 청년기 전기를 부정기로 간주한다. 그녀에 의하면 청년기 초기에 해당하는 청년은 반항이 무익하다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마치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끌려가는 것과도 같아 보인다. 따라서 그들은 자살을 생각하고 직접 이를 기도하기도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저항과 절망이 죄의식으로 변할 때에는 비밀에 대한 충동까지 생겨 자기만의 세계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부정기로 묘사되는 청년기 초기는 먼저 작업능력의 저하로부터 시작되고, 여기에 수반하여 불쾌의 체험도 급증하게 되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고립화와 타인에 대한 반감형태가 출현하게 된다. Buhler는 부정기의 교육적 의의는 중차대하며, 이 시기에 대한 연구는 교육상 많은 의의를 갖으며 유익한 일이라고 보았다. 이상과 같이 Kroh와 Buhler 두 연구자는 공통되게 청년기 초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로 보면서 또한 약 17세를 중심으로 갈등과 반항, 방황으로 묘사되는 청년기의 모습이 끝남을 주장한다. Kroh에 의하면 제 2위상부터, Buhler에 의하면 청년기 후기부터 긍정적 경향을 특색으로 하는 새로운 청년기가 시작된다.

청년기에 대한 대표적인 두 번째 견해는 Bandura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Bandura(1964)는 청년들이 반드시 Hall의 견해와 같이 질풍과 노도의 시기를 겪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겪을 필요조차 없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성인들은 청년들의 반항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행동에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또한 과장하고 있다. 여기에 TV를 비롯한 대중매체는 청년 행동에 예견적인 역할마저도 담당한다. 그들은 전형화된 청년의 행동특성을 일반화하고 하나의 틀을 세워 그 틀로 모든 청년문제를 짜맞추려고 한다. 대중매체가 만들어 놓

은 틀은 곧 청년을 바라보는 고정화된 시각이 되고 이 틀에서 벗어난 것은 무시되어진다. 그 결과 청년들은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관념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아이러니컬한 일이 벌어진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다시 말하면 낙인찍은 청년의 행동특성은 청년에게 다시 피드백되어 청년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스스로의 내면세계를 중요시하면서도 주변의 집단 속에 소속되고자 하는 이중적 욕구를 갖고 있는 청년의 경우 대중매체가 만들어 놓은 또래 집단 특성 내에 포함되고자 하는 경향성은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 두지 않는다. Bandura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질풍노도의 시기로 묘사되는 청년기는 성인의 틀에 의해 각색된 청년의 사실 아닌 모습일 뿐인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경험적 연구 결과가 있다. 1975년에 행해진 Offer와 Offer의 십대를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는 갈등과 방황이 청년발달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도 아니며 꼭 필요한 것도 아님을 밝히고 있다. 최근에 행해진 청소년의 생활만족 정도에 관한 국내의 한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가족생활이나 자기자신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순형, 이영미, 1997). 이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행동이 굳이 반항적인 행동양식으로 간주될 필요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청년이 강렬한 욕망을 느끼고 낮은 세상으로 내몰리면서 자신의 생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는 정신분석가인 Gustin(1961)의 주장은 청년기가 질풍노도의 시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본인의 자아의식의 고양을 위해 경주하는 시기인 것만은 확실함을 생각하게 해준다. 중요한 것은 모든 청년이 자신의 생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모두 격동의 시기를 겪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반항보다는 오히려 순종을 택하는 청년이 더 많다는 점이다.

청년기에 관한 연구는 동일한 현상을 두고 주로 심리학과 사회학에서 각기 다른 관점과 접근 방법을 두고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심리학적 연구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개체발달적인 측면을 강조해 왔고, 반면 사회학적 연구는 주로 사회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청년기의 연구에서 발달적 측면을 거의 무시해 왔다. Mead는 청년기에 대한 Hall의 견해에 대해 직접적인 도전을 한다. 즉 청년기가 신체 및 생리적 변화로 인해 전문화권에 걸쳐 누구나 심리적 혼란과 갈등을 경험한다는 Hall의 견해에 Mead는 문화인류학적 방법으로 문화비교연구에서 얻은 증거를

내세워 청년기 혼란과 갈등의 보편성을 부정한다. 따라서 청년기에 일어난다고 보는 혼란과 갈등은 서구사회에서 청년기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로 야기되는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인 것이지 청년기의 생리*심리적인 특징은 아니라는 것이다.

청년기가 반항의 시기인가 아니면 순종의 시기인가에 대한 논란은 이론중심의 논쟁으로 끝나기가 쉽다. 그만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청년기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발견된 사실에 의거한다기 보다는 이론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청년기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변화성'이라면 이 변화하는 실체를 잡는 실증적인 연구의 어려움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또한 청년이 스스로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즐겨하나 반면 외부에 의해 관찰되고 규정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성은 청년기의 연구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때문에 청년기를 어떠한 성격으로 규정하는가의 문제는 벽에 부딪치곤 한다. 또한 동일한 현상을 다른 관점을 갖고 독자적인 영역을 발전시켜 온 학제간의 교류 부족 현상은 이러한 어려움을 심화시킨다. 청년기에 대한 앞서 기술한 상반된 견해차를 다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개념은 Erikson(1959)에 의해 주창된 '정체감'에서 찾아볼 수 있다. Erikson의 '정체' 개념은 청년기의 특징을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주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청년에 대한 양극단적인 견해를 지양하고 보다 유연한 자세에서 청년의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주는 청년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Erikson에 의하면 청년기는 반항의 시기만도 동조의 시기만도 아니다. 다만 정체 확립과 정체혼미사이에서 싸우는 시기이다. Erikson이 바라보는 청년기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의해 주창된 '정체감'이라는 개념의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청년기에 대한 상반된 견해의 폭을 좁힐 수 있는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를 '정체감' 개념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Erikson의 자아정체감 개념은 청년기에서 성인기까지의 인성 발달을 이해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1950년대에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Erikson이 정체감이란 개념을 자아심리학의 기본개념으로 사용한 이후 이 개념은 정신의학, 심리학, 교육학과 같은 인간에 관한 모든 과학에 필수 용어로 등장하게 되었다. 자아정체감이란 Erikson의 자아발달 이론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 청년기의 행동과 발달특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어 왔다. 그의 이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는 자아정체감은 자아 이론 중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rikson

은 종래의 정신분석이론에서 사용하던 자아의 개념과 최근의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자기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개념으로 자아정체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전혜경, 1986). 그의 이론은 근본적으로는 Freud의 정신분석이론에서 출발하였으나 성격발달 및 자아정체감 확립에 있어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중시하고 있으며(박선기, 1977), 자아 자체내의 갈등에 중점을 두어 양극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Erikson은 인간의 자아정체감은 실제적인 성취에 대해 ‘성의있고 일관된 인정’을 받게 될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환언하면, 자신이 속한 문화 속에서 의미있는 성취를 했을 때만 자아정체감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젊은이가 전체성(Wholeness)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동기의 긴 세월 동안 겪어 온 자신과 미래에 내다 본 자신 사이의 점진적인 연속성과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남이 자신을 보고 기대하는 것 사이에 연속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Erikson, 1968). Erikson은 또한 자아정체감이란 생애초기에, 아동이 되고자 하던, 또는 되도록 강요받은, 즉 그가 의존하던 사람에 대한 계속되는 동일시의 총체라고 표현하여 자아정체감을 동일시 이상의 것으로 끌어올렸다(Erikson, 1968). 그가 말한 자아정체감은 자기의 연속성, 단일성 또는 독자성, 불변성이고,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인 것이다(Erikson, 1968).

자아정체감이란 용어는 Erikson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이며, 그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지만, Erikson 자신도 명료하게 조작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의적으로 해석되어지곤 했는데, 그의 이론을 종합해 보면 정체감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눈 것을 발견할 수 있다(박선기, 1977; 이정란, 1987). 그는 정체감을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는데, 객관적 측면을 심리·사회적 정체감(psychosocial identity)으로, 주관적 측면을 개별적 정체감(individual identity)으로 명명하였다. 심리·사회적 정체감이란 한 개인이 관여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귀속감 또는 일치성을 의미한다(Erikson, 1959). 즉 이 정체감은 민족의 고유의 역사에 의해 이룩된 고유 가치에 대한 개인적 귀속감으로서 민족 주체 의식과 같은 집단적 정체감을 뜻하며, 나아가 자신이 소속된 소집단의 가치에 대한 귀속감도 포함하는 정체의식이다(Erikson, 1956). 반면, 개별적 정체감이란 개인이 집단 내에서도 타인과는 다른 독립된 고유한 존재로서 갖게 되는 정체감을 의미하며, 개인적 정체감과

자아정체감으로 나누어진다. 개인적 정체감이란 어떠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변함이 없는 자기 동질성과 자기 연속성에 대한 자각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아정체감은 이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자기존재의 동일성과 독특성을 지속하고 고양시켜 나가는 자아의 자질을 의미한다(Ericson, 1956). 즉 자아정체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신념, 가치, 역할에서 지각하는 안정성과 통일성, 독특성 및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연속성과 동질성, 또 타인과 독립된 고유한 존재로서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려는 일련의 노력의 집합체라 하겠다.

자아정체감 이론은 점성적인 순서에 따라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Erikson의 단계이론의 소산이다. 그는 자아정체감이란 성취와 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고정적이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개정되는 자신에 대한 현실감이라 주장하며, 자아정체감은 유아기에서 그 효시를 찾을 수 있으며, 동일시의 유용성이 사라지는 청년기에 형성되어 노년기까지 그 발달이 지속되는 전생애적 발달을 한다고 하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 정신적 체제를 하나의 고도로 체제화된, 그러나 발달의 어느 단계에서도 방향과 연속성을 갖는 일관된 정체감으로서 지속해 나가려는 능력을 길러 나가는 과정이 바로 정체감 형성 과정인 것이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감은 유아가 자신을 그 주위의 사람이나 사물들과는 구별되는 개인으로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며, 이 시기의 모자 관계의 경험에서 오는 일관성과 동질성으로부터 신뢰감이 형성, 발달됨으로 이것이 정체감의 원시적 핵을 이루게 된다. 기본적인 신뢰감의 형성이 이 시기의 행동과 대인관계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 그 이후의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자아정체감 형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청년기에 기본적 신뢰감이 자신의 고유성과 일관성을 잃지 않게 하는 자아역량의 보루가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청년기에 이르러 이전의 동일시의 효용성이 없어지는 데에서 부터 진정한 정체감 형성이 시작된다. 즉 청년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심적 참조체계로 간직해오던 이전의 동일시들이 그 유용성을 상실하게 될 때, 누적되어 온 동일시들 중 실험, 선택적 거부, 수용이라는 과정들을 거쳐 수용된 동일시와, 이에 새로 획득된 동일시들이 융화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아체계에 집적되어 자아정체감의 핵을 이루게 됨으로 자아정체감이 새로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Erikson은 정

체감 탐구를 많은 청년들의 지금까지 갖고 있던 동일시를 없애버릴 수 있는 위기라고도 부른다(Erikson, 1959).

이런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정체감에는 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Erison은 그러한 요인들을 심리·사회적 위기라 하여 아래와 같이 7차원으로 나누고 이들 각각의 극복이 바로 정체감 형성과 확립의 기본이라 하였다(Maier, 1969). 첫째, 시간 전망의 획득 대 시간 확산으로, 청년이 자신의 장래를 분명히 전망할 수 있을 때에만 자아정체감이 성숙되어진다. 청년이 시간과 활동이 그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식을 상실했을 때 신경병 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것은 자살과 빈번하게 관계되는 정체감의 문제이다. 둘째, 자기 확신 대 냉담단계이다. 자신에 대한 자각과 타인이 그에 대해 갖는 자각이 조화를 이룬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자기 확신인데 이것이 획득되어야만 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으며, 실패의 경우에는 자신에 대해 냉담해지거나 무관심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셋째, 역할 실현 대 부정적 정체감의 단계를 들 수 있다. 역할 실현은 개인이 여러 다양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획득되어지는 것인데, 이에 실패할 경우에는 부정적 정체감이 형성되게 된다. 부정적 정체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감이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자기 자신이 능력이 없다든가, 선천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체감을 의미한다. 넷째, 성취 기대 대 작업 마비 차원이 있다. 이는 직업적 정체감 추구 및 장기적 목표 확립에 필연적으로 획득되어야 하는 요인이다. 작업 마비는 자신의 과업에 관계된 경쟁을 부적절하게 의식하는데서 유래된다. 다섯째, 성역할 정체감의 획득 대 양성적 확산을 들 수 있는데, 청년은 자신의 성 역할과의 동일시를 느껴야 한다. 양성적 확산이 된 청년은 분명하게 하나의 성 또는 다른 성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주저한다. 이 주저함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그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줄 수 있다. 다른 사람과의 성적 친밀감을 확립하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정체감 위기를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한 이들은 잠재적인 정체감 약화를 나타낸다. 여섯째, 집단성원으로서의 자질 획득으로 지도력의 양성화 대 권위주의 확산 단계가 있다. 이 단계에서는 지도하고 이에 따를 수 있는 청년의 능력이 요구되어진다. 마지막으로, 가치관 확립 대 이상의 확산 단계이다. 청년은 철학, 이념, 종교를 택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념적 관여가 성공적일 경우 확고한 긍정적 정체감이 획득되어진다.

아동 중기에 일어나는 변화는 대부분 점진적이며 규칙적이어서 날마다 혹은 달마다 급격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지만, 청년기에는 심리적, 생리적, 성적, 인지적 변화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새롭고도 다양한 지적, 사회적, 직업적 요구에 직면하게 됨으로, 자신이 보는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또한 자신이 남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가 관심을 가지면서, 과거의 역할과 기술을 미래의 요구와 어떻게 결합시킬까를 모색하게 된다(Mussen, Conger & Kagan, 1984). 이러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정체감 확립은 거쳐야만 하는 하나의 발달 과정이기에,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하나의 부산물로서 청년들은 정체감 위기를 겪게 된다.

자아정체감 형성의 재통합을 요구받는 청년기는 그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 많은 변화와 외부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또한 미래를 위한 요구와 많은 중대한 결정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동일시 통합에 성공해야만 정리된 정체감을 갖게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체감 위기를 맞게 된다. 정체감 형성이 전생애에 걸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청년기에 정체감 위기를 맞게 되는 이유는 바로 청년기가 많은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미래의 관여에 대한 많은 것이 문제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기존의 정체감은 청년이 내려야 하는 선택이나 결정에 적절해 지게 된다. 그러므로 청년기에는 정체감 형성을 위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Maier는 정체감 위기를 사춘기 이후 급격한 신체적 성장, 내적균형을 파괴하는 성적 성숙,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아동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인세계의 도전을 맞이할 직면한 자기상의 정립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면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 있는 청년들에 있어서도 자아정체감의 위기가 일어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Maier, 1965). 첫째, 청년기의 자아통합에서 과업의 곤란에 의하여 위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둘째, 신체적 발달에 따라 성적 성숙이 이루어짐으로 내적 충동의 질적, 양적 변혁을 초래하게 되어 id, ego, superego의 균형이 깨어져, id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심리학적 행동을 조절·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위기가 생긴다. 셋째, 직업이나 진학과 같이 성인기를 준비하는 선택, 즉 사회 심리적 성숙의 요구로 말미암아 이에 잘 대응치 못할 경우, 정체감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Erikson은 정체감 위기가 생기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Erikson,

1968),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직업 선택을 그 첫 번째 이유로 들고 있다. 만일 청년기에 그가 속하는 사회에서 장차 그가 점유할 자리나 장래의 가능성을 전망하지 못한다면, 정체감 혼미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진로와 같은 실질적 문제에 부딪치는 청년기의 정체감 혼미자들의 경우,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일차적 요소가 진로에 대한 정체감의 미확립이라 보고, 이 시기의 직업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년기는 직업적 정체감을 추구하는 자기 준거화의 시기라 할 수 있다. 두번째 이유는 이념세계관의 발달이다. 즉 개인적으로 참여할 가치가 있는 종교적 이념과 정치적 이념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을 때 정체감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선택과 성적 적응을 위한 성역할 및 성적 태도에 관한 문제들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는 청년기 발달과 성적 성숙의 도래를 그 이전의 것에 의존해 있던 이른바 동일성과 연속성의 파괴로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아정체감 형성은 청년기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도 청년기의 종료와 더불어 끝나는 것도 아닌, 개인과 그 사회에 의식되지 않은 채 계속되는 일생동안의 발달이다(Erikson, 1959; Murray, 1964; Douvan & Adelson, 1969). 더우기, 현대 젊은이들이 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Douvan & Adelson, 1966; Hauser, 1976; Marcia, 1967; Waterman, 1975). 원시 사회에서는 급격한 사회변화가 거의 없었고, 성인의 역할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아정체감이 비교적 단순한 과업에 속했고, 또 성취하기도 비교적 쉬운 편이었으나, 오늘날, 모든 것이 극심한 변화를 겪고, 복잡화된 사회에서는 선택의 폭이 너무 넓고, 선택의 여지 또한 많아 정체감의 형성은 어렵고도 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과업이 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지나치게 많은 선택에 가로 놓인 청년들은 자기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해 정체감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Erikson, 1968; Podd, 1972). 정체감 확립의 극 개념인 정체감 혼미가 위기로 인식되어 오지만, 이 위기는 전생애 발달 과정 중 극히 정상스러운 것으로 더 나은 상태를 향한 디딤돌이다. 정체감 위기는 그 때까지 그 사람을 통합하고 있던 가치의 붕괴이며 그것에 수반되는 자기 이미지의 해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쉽게 병적인 세계로 옮겨갈지도 모르는 위기인 동시에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보다 풍부한 현실성을 가진 자기상을 키우고 변화하고 발전해 가면서도 일관성을 가진 정체감을 확립해 가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박아청, 1987). 그러므로 청년들이

위기에 부딪치게 될 때, 회피하거나 도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에 맞서 새로운 자기를 통합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참다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청년기에 이룩해야 할 정체감 확립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청년기가 질풍노도일 소지는 다분히 안고 있으나, 인간은 전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매단계마다 겪어야 할 위기와 이룩해야 할 발달과업이 있으며 청년기만이 유독 힘들고 넘기기 어려운 격동기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Erikson의 견해이다. 그에 의하면 오히려 청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심리적 유예기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시기가 된다. 즉, 청년기는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시기로 자신에 대한 결정을 잠시 보류할 수 있는 시기인 것이다. 오랜 기간의 정체감 탐색은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으나, 그것은 결국 보다 높은 차원의 인격적 통합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다.

정체감이 확립되기 위해 필요한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를 깨닫는 과정인 자아개념의 발달과 자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로 이루어지는 자존감은 청년의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개인의 적응력에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모든 인간이 자존감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욕구가 충족된 경우에는 자신을 가치롭게 여기며 본인에 대해 유용감을 갖게 되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을 갖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된다(Maslow, 1965).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문제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신질환을 초래할 가능성마저 갖는다. 본인에 대한 낮은 자존감은 부정적 정체감과 연결될 수 있다. 부정적 정체감이란 Marcia(1966)에 의하면 부모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자아개념이다. 이 부정적 정체감은 부모나 사회로부터 바람직한 행동이나 개인적 행동에 대한 강화나 지원이 없을 경우 생기기 쉽다. 소년 범죄자나 문제아 등으로 불리는 청소년들은 부정적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행위를 내면화할 기회가 적어 사회가치에 반대되는 태도나 행동 등으로 자신을 동일시하여 그것을 자기 암시하는 등의 악순환적 과정을 통해 부정적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Erikson의 '정체' 개념은 청년의 문제행동을 보는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체감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청년은 본인의 자아에 대해 안정

되고 통합적인 견해를 갖는데 실패한 상태인 정체감 혼미를 경험한다. 바로 이 정체감 혼미의 개념이 가출 청소년이나 중퇴자, 퇴학자, 일탈행동자 등을 비롯한 청소년 문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Erikson의 정체감 혼미 개념이 소개되기 전에는 이런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비행청소년'이나 '문제아'로 낙인찍혔었다. 그러나 정체감 혼미 개념의 소개는 이런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좀 더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 비행청소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청년들이 정체감 위기를 경험한다. 단지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조금 쉽게 그 위기를 넘길 뿐이며, 또 어떤 이들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뿐이다. 자기를 발견하려는 노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청년기는 자기를 발견하는 적극적인 시기이며 이 시기에 자기 발견의 노력은 복종이나 동조, 반항 등의 청년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 따라서 청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로 간주할 필요도 없으며, 순응의 시기로 못박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정체감 확립은 사회적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개인의 신념, 가치, 역할 등에서의 안정성과 통일성, 독특성 및 연속성 등은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사회의 성격에 따라, 다시 말하면 그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에 따라 한 개인의 정체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청년은 기성세대가 예견하고 메스컴이 보도하는 부정적 고정관념에 스스로의 행동을 맞추기도 한다. 한 사회가 청년에게 정체감 확립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황과 반항을 확대 해석하고 그것을 청년다움으로 규정한다면, 그 사회의 청년은 그에 걸맞는 본인에 대한 견해를 갖게 되며 그들의 행동을 그와 같은 방향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Erikson의 주장과 같이 우리는 청년을 보는 관점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청년의 문제행동을 확대 주목해서도 안될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그들의 일탈 행동을 합리화시켜 방관해서도 안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청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적극적인 이해의 자세이다. 여기에서 청년 특히 청년 전기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전략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청년기가 반항의 시기일 경우 문제행동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그러나 청년기가 자신의 발견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시기이며 그 노력의 과정 중 순응이나 반항 행동이 외부로 표출될 수도 있는 시기이거나, 오히려 청년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 거라면 좀 더 유연한 대처방안이 선택되어야 하며, 청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동시에 주어지야 할 것이

다.

제 2장 : 약물과 범죄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

지금까지 우리는 청소년의 개념을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개념은 학술적으로도 매우 애매모호한 것이며 특히 청소년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는 학설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개념과 그에 따른 연령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사회적인 허용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역시 확인되었다.

본 장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포함한 약물에 대한 이론적인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음주와 흡연과 같은 성인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나 청소년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약물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않될 중요한 점은 도덕적인 판단과 경험적인 연구결과를 분석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으나,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전 두가지 모두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에게 음주와 흡연을 몇 살부터 허용해야 하는가 문제는 그 사회의 도덕적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음주와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사회에서는 심지어 성인에게조차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1940년대 미국에서 금주운동이 보수적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일어나 음주 자체를 금지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만 해도 지금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청소년에 해당되는 연소자에게도 상황에 따라 음주가 허용되기도 했다. 요즈음도 제사를 지낸 후에 음복주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정도에게는 허용되고 있으며, 수학여행시에는 교사가 고등학생들에게 술을 사주기도 한다.

한편 음주와 비행간에 인과관계가 있는가의 문제는 이러한 도덕적인 판단과 관련은 있으나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음주와 흡연과 같은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의 배후에는 음주와 흡연의 약리적 해독과 더불어 약물은 비행과 범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 배후에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즉 술과 담배, 특히 술과 같은 약물은 청소년의 정신상태를 미혹하여 다른 심각한 비

행을 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허용되어서는 않된다는 주장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도덕적 판단과 인과적 관계는 분석적으로는 별개의 문제이나 실질적으로는 이와 같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연 술과 담배와 같은 약물과 비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존의 이론과 경험적 연구 결과를 통해 알아보는 작업은 의미 있는 것이다. 만일 인과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술과 담배를 허용하는 나이를 높일 수도 있는 것이며 인과관계가 없다면 허용 연령을 보다 더 낮출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인과관계가 설령 없다고 해도 청소년에 대한 음주와 흡연 허용 연령은 그 사회의 도덕적 기준에 일차적으로 의거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가 규제 연령의 결정에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뿐이다.

본 장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청소년들 술과 담배를 포함한 약물 남용 정도가 어떠한지를 필자가 연구책임자로 실시한 조사를 통해 알아 보고자 한다. 그리고 약물과 비행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본 뒤, 약물남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절 : 유해약물의 남용 실태

필자가 연구책임자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²⁾, 조사대상 1419명 가운데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모두 470명으로 33.1%의 응답율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40.0%)이 여학생(21.6%)의 두 배 정도로 많이 피워본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별로는 역시 고등학생(41.8%)이 중학생(24.7%)보다 두 배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많이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남학생이 가장 많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의 50.6%가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술의 경우엔 담배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전체의 66.3%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담배 경험율의 두 배에 달하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 연구, 1995

는 수치이다. 또한 담배의 경우엔 남자의 경험빈도가 여자의 2배 정도로 많았던데 비해 술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엔 오히려 여학생들이(85.5%) 남학생들보다(79.8%) 술마셔 본 경험이 더 많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의 80% 이상이 한 번 이상 음주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음주는 청소년기에 벌써 보편적인 현상임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음주 경향은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에 공통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본드나 가스과 같은 약물들은 술이나 담배에 비해서 그 경험정도가 대체로 낮아 전체 응답자 중 70명(4.9%)이 본드를, 55명(3.9%)이 가스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기에서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는 고등학생들이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만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성별간의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흔히 알약종류라고 일컫는 각성제, 진정제, 진통제, 진해제, 히스타민제 등도 본드나 가스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응답율을 보여 각각 순서대로 76(5.4%), 38(2.7%), 119(8.4%), 23(1.6%), 31(2.2%)의 응답율을 보였다. 다섯 종류의 약물 가운데에서는 진통제의 응답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여학생들 가운데 진통제의 사용이 많다는 점(20.9%)은 주목할 만하다.

일반학생들이 약물을 단순경험 해 본 정도는 술에 있어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담배였으며 계속해서 본드나 가스등의 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본드나 가스의 경우는 남학생들이 많이 사용하였으며 진통제나 진해제 등은 여학생들이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약물 남용과 청소년비행과의 관계를 보면 그 상관 정도가 매우 높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술과 담배 등 사소한 약물에 젖어들면서 비행을 시작하며, 더 심각한 비행으로 빠지게 되면서 본드나 부탄 가스를 접하게 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술과 담배 그 자체의 해악보다는 술과 담배가 더 심한 약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에 빠져들지 못하도록 예방할 필요가 대두되는 것이다.

2절 : 약물과 범죄의 인과관계

국내의 약물범죄는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양태를 띄어 왔다. 5,60년대 아편, 메사돈으로 시작되어 70년대 대마초, 80년대 히로뽕으로 대변되는 국내 마약범유형은 90년대에 들어서 히로뽕, 대마초 이외에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코카인사범이 검거되기 시작했고, 동남아에 근거한 헤로인 유통업자들도 국내에 진출할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점은 이러한 마약류 사범의 증가추세가 단순히 성인들에게만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이나 주부들 사이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정도는 점차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유흥가나 향락업소에 종사하는 청소년들간의 약물남용은 물론이며, 특히 해외유학생들로부터 반입되는 마약류는 청소년들사이에 하나의 과시용으로 전파되어 보다 강하고 질 좋은 마약을 사용해 보았다는 것이 자랑거리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은 그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가 단순히 마약이나 대마에 국한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상용의약품, 유해화학물질규제법의 규제대상인 본드, 부탄가스³⁾ 등 다양한 종류의 약물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의할 요하는 문제이며,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의 규제대상인 담배와 술을 포함하면 그 폐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담배나 술, 가스나 본드와 같이 마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독성이나 내성 등이 강하지 않은 약물들은 입구약물(Gate Drugs)이라고 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강한 마약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 단계의 약물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술과 담배와 같은 약물은 본드나 가스, 마약과 같은 약물과는 달리 일반적인 청소년들이 정상행위와 다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반적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술과 담배를 남용하는 것을 자신들이 스스로 비행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있을 수 있는 행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약물남용행위는 단순한 행동적 발현이기 이전에 약물이라는 특수한 매개체를 통한 행위의 표현이므로 그 매개체에 대한 상황적 인지가 선행된다. 따라서 그 약물(매개체)에 대한 행위자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로

3) 1995년 2월 21일자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부탄가스의 흡입도 법적인 규제대상이 되었다. (조선일보 1995년 2월 22일자)

외국의 연구사례들을 살펴보면 약물남용행위에 대한 연구들의 상당수가 약물에 대한 태도와 실제행동간의 관계를 중심이슈로 삼고 있다.⁴⁾ 부연하면 비록 술과 담배와 같은 약물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반화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술과 담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즉 술과 담배는 약물이 아니라는 인식이 중요한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역으로 술과 담배의 남용을 통해 더 심한 약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술과 담배가 청소년 사이에 확산되는 현상이 문제로 대두된다는 점이다.

술, 담배를 남용한다는 자체가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비행이며 더 심한 약물로 발전하는 입구약물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다른 비행과 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술과 담배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성인들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에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술과 담배는 여러 맥락에서 다른 비행이나 범죄와 연관성이 높다.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주요한 유형이 금품갈취이다. 금품갈취의 중요한 원인은 두말할 것 없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청소년들의 유흥이란 곧 청소년에게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이성과 즐기는 것이 주종을 이룬다. 즉 술집이나 유흥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친구들의 금품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술과 담배는 비행과 범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술과 담배를 포함한 약물과 범죄와의 인과관계를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술과 담배에 국한시킨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일반적인 맥락에서 약물과 범죄(비행 포함)와의 관계를 살펴 보기로 하자.

약물남용과 범죄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다음의 세가지로 접근되어 왔다. 그 첫째는 약물남용이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고, 둘째는 약물남용과 범죄 사이에서 발견되는 상관관계는 약물과 범죄 두 현상 배후에 있는 공통의 원인에 기인한 허위관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며, 마지막 논의는 약물남용이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범죄를 촉진시키는 촉매의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다.

4) 이와 같은 연구로는 Acock & DeFleur(1972), Andrews & Kandel(1979), Grube & Morgan(1990) 등이 있다.

약물남용과 범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견해는 주로 초기 범죄학자들이 주장한 것이다. 예를 들어 썬덜랜드와 크레시는 약물중독자 중에는 절도범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약물남용에 의해 절도율이 증가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약물과 범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Sutherland & Cressy, 1970). 이와 유사한 연구로는 불과 그의 동료들이 연구한 헤로인 중독자들의 범죄행태에 관한 연구들 들 수 있다. 헤로인 중독자들은 심층적으로 연구한 결과 약물남용 이전과 이후에 범죄율이 증가하는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일단 중독자가 된 후에는 남용기간에는 비남용기간에 비해 범죄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연구자들은 헤로인 중독자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범죄율은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향을 띠운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물남용은 범죄 유형과 관계 없이 범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약물남용을 적절히 통제하고 남용자를 치료함으로써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Ball, et al., 1981).

약물남용과 범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상관에 불과하는 주장을 살펴보자. 그 대표적인 학자로서 체이켄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하자. 체이켄은 약물남용에 대해 기존의 연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약물남용과 범죄 사이에서 발견되는 관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첫째, 약물남용자의 대부분은 비폭력적인 사람들이며 약물남용 이외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다는 것이다. 그들 중 극소수만이 강도나 살인 등 폭력범죄를 저지르며 대부분은 간헐적으로 재산범죄를 저지른다. 둘째, 더구나 이들의 이러한 성향은 약물을 남용하기 훨씬 전인 청소년 시절부터 지속되었던 현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약물남용이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Chaiken and Chaiken, 1982). 약물남용과 다른 범죄는 어떠한 공통의 원인, 예를 들면 불우한 가정환경과 같은 요인의 산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약물에도 젖어들고 동시에 범죄에도 빠져드는 것이지 약물을 남용한 결과로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약물남용이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살펴보자. 약물남용과 재산범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고울드먼 헤로인

남용자들은 폭력범죄보다는 재산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헤로인 남용자들의 20-30%가 절도를 저지르나 헤로인 남용이 절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며 다만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즉 헤로인 중독자들은 약물을 구입할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절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암시장에서 약물 가격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헤로인 중독자들은 합법적인 소득이 매우 적거나 없는 관계로 약물을 판매하거나 간헐적인 절도를 통해 약물을 구입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Gould, 1974). 즉 헤로인 남용 상태에서 절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헤로인을 구입하기 위해 절도를 한다면 약물남용을 절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비슷한 견해를 피력한 갠도시와 동료들의 연구 역시 약물남용자들이 재산범죄 - 그들은 소득확보 범죄라고 불렀다- 에 연루되는 중요한 이유는 값비싼 약물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결론짓고 있다 (Gandossy, et al., 1980).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볼 때, 약물남용과 범죄 사이에 진정한 의미에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실한 결론은 내리기 힘들 실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성인 약물남용자들의 대부분은 청소년 시절부터 각종 약물을 남용한 경험이 있으며, 약물이 원인이 되었건 약물을 구입하기 위해서건 재산범죄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설사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피력한 학자들도 약물남용과 범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보면 약물 중독을 줄이는 길이 범죄를 감소시키는 첩경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연구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비록 많은 연구는 없었으나 청소년의 음주와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젠슨의 연구에 의하면 소년교도소에 수감중인 비행소년들의 대부분이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산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의 85%가 알콜남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집단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술을 과다히 마심으로 심리적 장애를 일으키거나 사회적*가족적 관계에 장애를 불러와 결국 범죄로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Jenson, 1982). 한편 에이커스의 연구에 의하면

음주는 마리화나를 비롯한 다른 약물과 상관성이 높으나 음주를 일삼은 비행소년들은 음주시에는 물론 음주를 하지 않은 때에도 비행과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들면서 음주와 비행 간의 관계는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는 하였다 (Akers, 1985). 그러나 베넷과 화이트의 연구를 보면 강도중 대부분은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했으며, 상당수는 음주가 강도 행위에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응답하였다는 것이다 (Bennet & Wright, 1984). 윈들과 밀러-터조우어는 전국청소년시계열조사(National Logitudinal Survey of Youth)를 재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유형의 비행과 음주와는 상호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Windle & Miller-Tutzauer, 1991).

이상과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술과 담배는 비록 헤로인이나 마약, 히로뽕과 같은 그 중독성이 심하고 후유증이 심각한 약물은 아니며 성인에게는 허용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술과 담배를 하는 행위는 범죄라기보다는 지위비행(status offense)이기는 하나, 술과 담배는 본드나 가스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각종 알약으로 발전되고, 급기야는 마리화나나 히로뽕, 더 나아가 마약으로까지 비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술과 담배를 남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술과 담배가 범죄나 비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하여도 술과 담배를 즐길 수 있는 비용 즉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면 술과 담배를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청소년비행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인 것이다.

3절 : 약물 남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지금까지 우리는 약물과 범죄 그리고 청소년비행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절에서는 성행연구를 중심으로 약물남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행원인은 대체로 두 개의 근본적인 접근방법으로 분류된다. 그 하나는 행위자(actor)의 특성 즉 행위자가 특정대상에 대해 가지는 태도(attitude)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자가 처해있는 상황(situation)이 행위자로 하여금 비

행을 하도록 강제한다(표갑수, 1986). 전자는 비행의 원인을 개인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요인 입장으로서, 개인의 생물학적 유전적 특질과 인성 구조로서의 가치관양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에 비해 후자는 범죄의 원인외재하는 사회적인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사회의 산물인 가정환경, 부교우관계 및 일탈자의 사회경제적 구조, 문화체계 등에서 비행의 원인을 다. 다시 말해, 하나는 범죄행위의 원인을 개인의 행위적 측면에서 찾는 반면 하나는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적인 측면에서 찾는 것이다.

약물남용의 원인분개인의 내적인 측면들 즉 개인의 퍼스낼리티나 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은 개인적 측면 즉 청소년들이 약물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처하게 되는 상황인 친구집단의 압력이나 약물구입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의 두의 상대적 우위성을 통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약물남용에 대한 선택적 상호작용이론은 태도와 상황간의 상대적 우위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이 이론의 검증작업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던 상황일치기론(Consistency Theory)도 두 입장의 차이를 명료화하는데 도움이 될

1. 선택적 상호론

선택적 상호작용론의 원인으로 상황과 태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여기서 "선택적 상호론"은 개인과 하위문화이다. 즉 개인의 행위가 무작위적으로 하위문화에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와 활동이 하위문화와 호환함으로써 개인의 많은 선택적 대상들 가운데 특정한 개인 혹은 집단을 선택할 수 있다(Goode, 1989). 이 이론은 이처럼 개인과 하위문화 즉 태도와 상황간의 상보완기능에 역점을 두지만 Goode와 같이 개인의 선택적 의지에 높은 중립성과 Johnson과 같이 환경과 상황을 우선하는 입장 그리고 Kandel과의 입장을 통합하여 약물남용의 단계에 따라 상황과 태도가 차별적으로 두 세 가지 입장으로 분류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입장을 차례로 나아가 상황과 태도간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하

나의 가설로서의 상황일치가설을 살펴봄으로써 상황과 태도에 관한 상대적 우위를 논하고자 한다.

먼저 개인의 선택적 의지를 강조하는 Goode의 입장을 보자. 그에 의하면 약물남용자는 약물사용전에 약물을 사용하기 위한 사전준비 즉 약물남용에의 사회화가 이미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Goode, 1972). 다시 말해 아이들은 약물하위문화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의 준비작업단계로 “기대 사회화(anticipatory socialization)”를 하는 것이다. 그 결과 그는 약물남용과 관련한 가치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친구를 선택하는 선택적 충원(selective recruitment)과정을 거친다. 이것은 약물남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약물에 대한 태도나 동기 등을 형성하고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등이 미리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자신과 함께 약물을 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는 데까지 그 준비작업이 이루어 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준비작업이 완비되지 않았다면 주변상황의 전개가 약물남용에 유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행위에까지 이르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마리화나 사용자에 대한 그의 연구에 의하면(Goode, 1972), 신참자가 마리화나를 즐겨 사용하는 이유가 단순히 마리화나를 피우는 데에서 파생되는 쾌락과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마리화나를 함께 사용하게 됨으로써 주위의 친구들과 함께 있다는 것, 또한 유사한 하위문화를 그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것에서 오는 안정적 동류의식의 확보에서도 심리적 안정감이나 만족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약물남용자들은 자신의 태도 및 가치의 형성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신과 함께 동반 행위를 할 수 있는 친구를 충원하는 과정이 약물남용행위가 발현되기 위한 사전준비단계가 된다. 이 때, 신참 충원자가 기존사용자와 공유하는 가치는 약물에 대한 견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 밖에 종교적 소외, 좌경사상, 성적 허용성 등을 공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집단내에 들어오면 약물사용에 대한 가치와 집단성원과의 교류를 통해 약물사회화가 가속된다(Akers 1992).

한편, Johnson(1973)은 신참충원자가 처한 환경 및 상황에 따라 약물에의 참여정도 및 남용정도가 차별화됨을 주장한다. 부모의 하위문화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되어 있을수록 약물을 실험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해지며, 반대로 친구 혹은 동년배들의 하위문화와 더욱 친숙하고 관계가 깊을수록 약물의 실험적 사용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Johnson의 주장은 한 개인이 약물남용으로 빠지게 되는 요

인으로 개인의 태도보다는 주위환경이나 약물남용 또래집단의 유무 등 상황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택적 상호작용론에 이르러서도 상황과 태도간의 상호우위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지만 이에 대한 결론을 맺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적 관심의 결과는 Kandel(1973)의 연구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그는 개인이 약물남용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황적 요인과 약물에 대한 태도가 약물남용과정에서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설명하고자 했다. 그에 의하면 청소년은 각기 다른 개인적 특징과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지니지만 모든 개인은 일반적으로 자신과 그 특성이 비슷하거나 호환적인 집단이나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고 역으로 자신과 다르거나 비호환적인 집단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동류의식이라고 부르는데, 초기의 청소년들 즉 약물남용의 경험이 거의 없는 청소년들은 주위의 그 누구에게도 끌리지 못하는 부유자(Drifter)가 되기 쉽다. 따라서 그들이 담배나 술 혹은 약물을 얼마나 일찍 사용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우연적으로 또는 상황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약물남용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진 아이들에 있어서는 상황적, 우연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태도나 가치의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제들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또한 장기남용자의 경우엔 그들이 사용하는 약물이 한 두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약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고 따라서 이들을 사용할 때에는 '문화적으로 결정되고, 잘 규정된' 가치관 및 태도의 발전 단계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소위 출입구약물(Gateway substance)의 문제와 관련하여 '낮은 단계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더 심각한 약물사용 단계로 진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Kandel, 1980).'라는 주장도 심한 약물에 이르기까지는 개인의 태도형성이 중요함을 확인해 준다.

약물남용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상황이나 태도의 어느 한 쪽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경향이 있다. 이 때에는 약물에 대한 태도나 동료의 영향 이외에도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심리적 손상이라고도 표현되는 약물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들 자신이 스스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는가의 문제로, 약물남용으로 인해 심리적 압력을 받는 청소년은 비행성이 강할 경우엔 더 센 약물로 진전하게 되고, 약간 비행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그 상태를 유지한다. 둘째는 친구가운

데 약물을 남용하는 친구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자신보다 더 센 약물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아이는 그 친구의 영향으로 인해 보다 발전된 약물남용단계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들고 있는 것이 후기약물남용자에게 있어 가족에서부터의 소외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다. 이때 가족으로부터 더욱 소외되어 있을수록 이들은 더 위험한 약물로 진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처하는 우연적, 상황적 요인은 물론 가치 및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위의 준거인(referent) 혹은 일반화된 타자들이다. 청소년들의 준거인으로는 부모, 친구(동료), 학교, 미디어의 네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부모와 친구(동료)가 청소년들의 약물남용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부모의 영향은 종교나 정치적 가치, 인생의 장기적 목표설정 등 비교적 폭 넓고 장기적인 가치와 행동을 주입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비해 친구(동료)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단순해서 아이들의 생활양식 가운데 보다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행위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다. 따라서 아직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의 설정이나 가치관의 확립이 불완전하고 형성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친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Kandel, 1980).

이와 같이 볼 때, 약물사용의 심각성에 따라 약물에 대한 태도와 상황적 요인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선택적 상호작용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즉 약물사용이 덜 심각할수록 우연적, 상황적 특성이 보다 중요하며 따라서 친구들의 하위문화적 가치 및 약물관련행동이 대단히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약물사용에 있어 부유자이며 따라서 사용자의 약물에 대한 태도와 신념이 비사용자의 그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즉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맥주나 포도주, 담배 등은 유혹가능한 약물인 셈이다. 그러나 다음 단계 즉 약물남용의 중기 또는 청소년 중기로 표현되는 단계에서는 약물에 대한 태도 및 동료의 영향이 강하다. 나아가 약물남용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는 약물에 대한 태도 및 동료의 영향 외에도 가족관계가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이 선택적 상호작용이론에서는 약물에 대한 태도와 상황적 요인에 대한 관심을 통해 약물남용자의 단계적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에 소개되는 상황일치가설은 태도와 상황간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검증작업의 일환으로 제시된 가설로서 상황에 대한 관심으로의 회귀가능성을 시사한다.

2. 상황일치 이론

Andrews & Kandel(1979)은 고등학생들의 마리화나사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압력이 특정 행위에 대한 태도의 효과를 강화시킨다는 상황일치가설(Contingent Consistency Hypothesis)을 검증하고 있다.⁵⁾ 여기서 상황일치가설이란 “태도와 행위간의 관계를 평가할 때에는 상황적인 변수(situational variable)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태도는 모든 상황에서 특정행위를 예측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태도가 행위로 실현되기까지에는 이것을 도와주거나 혹은 방해하는 상황적인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Grube & Morgan(1990)에 의하면, 상황적 일치란 “태도라는 것이 주위로부터 우호적인 지지를 받을 때만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이상의 상황일치가설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자면 하나의 행위가 표출되기 위해서는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위의 우호적인 지지 즉 행위발생적 상황이 조성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약물남용행위와 관련하여 이러한 상황일치가설이 가지는 의미는 약물남용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약물을 하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태도가 행위로 표출되기 위해서는 그 약물남용행위가 정당하거나 혹은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거나 혹은 주변인물들의 행위 등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등 태도소유자의 행위를 유발하는 상황이 조성되어야만 결정적인 남용행동이 표출될 수 있다는 가정을 통해 주변상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상황일치가설에 대한 최근의 검증작업중의 하나가 Grube & Morgan(1990)의 연구이다. 그들은 아일랜드의 약물남용학생들을 대상으로 상황일치이론을 구체적으로 검증하였는데, 조사결과 다음의 세가지 결론을 이끌어냈다. 즉 약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행위로 이끌어내는 데에는 첫째, 부모보다는 친구로부터의 인지된 사회적 지지가 유효하며 둘째, 언어적 지지보다는 타인의 인지된 약물사용행위가 더 효과적이며 셋째, 술이나 담배와 같은 가벼운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보다는 강한 약물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일치이론이 직관적으로는 호소력이 있으나 많은 연구 결과 결론에

5) 그들에 따르면 태도와 행위간의 관계는 꾸준히 논쟁거리로 등장해 왔다.

이르기는 아직 이르다고 진제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Grube & Morgan, 1990).

첫째는 상황적 요인은 주로 현재의 행동을 예측하기 보다는 흡연, 음주, 약물남용에로의 행동변화를 예측하는 데 더욱 유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초기사용자들이 이러한 약물행위로 진화되는 과정의 설명에 적합하므로 상황에 의한 현재 행동의 예측력은 다소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간의 상황일치효과는 목표한 행동이 사회적, 개인적 비용을 수반할 때 특히 그 비용이 잠재적으로 클 때 더욱 효과적이다. 따라서 상황일치효과는 음주, 흡연과 같은 비교적 적은 사회적, 개인적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들보다는 약물 특히 대마나 마약류와 같은 큰 잠재적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셋째, 청소년들의 행위에 있어 그들이 자신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해 주리라고 믿는 대상들 즉 준거인(referent)의 중요성이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같은 상황적 요인이라 하더라도 그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서로 충돌하여 그 영향력이 희석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들로부터의 지지보다는 친구들로부터의 지지가 더욱 중요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결과적으로 상황일치이론에서는 태도와 상황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일치이론에서는 특정행위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그가 처한 상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시되지 않고 있으며 약간은 상황우위의 관점까지도 엿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청소년들의 약물남용과정에 대해 상황과 태도라는 두 가지의 변수가 과연 어느 정도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는 청소년들의 범죄행위 특히 약물남용행위에 대한 원인분석의 일환으로 개인의 태도와 주변의 상황간의 상대적 우위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선택적 상호작용이론과 상황일치가설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택적 상호작용이론에서 나타나는 선택적이라는 용어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기존의 고전 실증주의적 입장의 이론들이 결정론적(determinism) 입장을 견지하면서 행위자의 선택이나 자유의지를 무시했으나 최근의 사회학에서는 행위자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새롭게 부각되는 점이다. 선택적 상호작용에서 강조하는 점은 행위자의 태도와 상황적 결정요인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둔다. 이제 어느 한 요인만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어느 요인이 상대적으로 설명

을 더 잘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일 뿐이다.

태도와 상황간의 관계는 상황일치가설(Contingent Consistency Hypothesis)에 이어져 구조와 행위자간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개인의 태도와 구조적 상황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적절히 이어진다면 개인의 행동가능성은 최대가 된다. 이와 같이 이어져온 상황과 태도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들어 개인의 판단쪽에 손을 들어주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이론으로는 행위자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했던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을 들 수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억제효과(deterrence effect)에서 시작된다. 이 연구는 본래 공식적인 제재의 억제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했으며 결국 비행자들이 비행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은 공식, 비공식 제재가 가져올 처벌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기존의 억제이론이 행위의 발생을 억제하는 상황적 요인에 대한 관심에 치우쳐져 왔는데 비해, 합리적 선택이론은 행위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효과 또는 이득을 함께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개인의 판단능력의 개입이 중요시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이 일반적인 비행행위, 특히 약물남용행위에 관하여 구조와 행위, 상황과 태도의 중요성을 논하는 가운데 각 이론은 나름대로의 기준에 입각하여 상황우위적 관점 혹은 태도우위적 관점 혹은 양자를 포용하는 관점을 제시해 왔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술과 담배와 같은 그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약물의 경우에는 남용자들이 갖고 있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언하면 술과 담배를 상습적으로 남용하는 청소년들이 남용하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술이나 담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다 더 갖고 있다기 보다는 상황에 의해 술과 담배를 시작하여 지속하는 경우가 더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비교적 허용적인 사회문화적인 분위기에서는 더욱 설득력을 갖게된다. 술과 담배를 남용하는 청소년들은 술과 담배를 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하는 반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보다는 우연한 계기가 주어졌을 때 막연한 호기심에서 시작하였거나 불량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친구들의 부추김 혹은 압력으로 인해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태도 보다는 상

황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것이다. 특히 합리적 선택이론 입장에서 보면 술과 담배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 정도에 따라 남용정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있으며 남용할 장소가 청소년에게 허용된다면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술과 담배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도록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을 통제하는 편이 더 효과적인 방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즉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없게 만들어 남용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술과 담배를 남용할 수 있는 장소에 출입을 철저히 통제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이 그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령규정보다 청소년보호법을 어떻게 철저히 시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18세로 규정하건 20세로 규정하건 간에 현재와 같이 술과 담배에 대한 허용적인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령을 어떻게 규정한다고 해도 그 실효성이 증대되기는 힘들 것이다.

제 3장 : 청소년보호법상의 연령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법률 제5297호)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음란·퇴폐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이 법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퇴폐·음란문화의 유입을 통제하고 건전한 청소년들의 육성과 계발을 입법의 동기와 목적으로 한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 법률의 제정은 사회의 청소년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입법의 동기로 작용하였다. 이 법은 기존의 각종 청소년보호법률을 대체·보완하는 법률로서의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청소년보호법은 기존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을 국가가 보호·계발시키기 위한 법률이다. 특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문제라고 일컫는 청소년들의 윤락행위, 흡연, 음주, 가출, 향정신성 약물 등의 흡입 등을 규제하고 전체 사회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데에 법률 입안의 중심을 두고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법적·사회적인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 법이 규정하는 청소년의 개념규정이다.

이 법에서는 청소년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18세 미만으로 정하여(제2조 1호) 다른 법률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그러므로 이 규정은 민법과 다른 법률들의 미성년자 연령 규정과 그 내용이 달라서, 법 적용상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그리고 민법과 별개로 청소년의 보호 육성을 위해 입안된 기타 법률들의 연령 규정들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만18세의 규정이 과연 한국사회의 청소년을 결정하는 타당한 연령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현재 가장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이 법률의 연령 규정이다. 그러나 이 법률의 법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연령 규정 외에도 다수 존재한다.

이 법률의 세부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보호법상의 제한 연령은 실질적인 과학적인 자료가 아니다. 이 법률이 규제하는 제한 연령은 특별한 연구나 분석에 입각한 결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의 현실적인 문

제와 그 영향에 대해서 지참을 주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2. 이 법률은 일반인들의 규범 의식과 괴리되어 있다. 즉 입법 과정에서 전혀 일반 국민들의 규범 의식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태도는 행정 편의적인 정치적인 입법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 같다. 3. 청소년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의 기타 법률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의 다른 법률들과 많은 부분 모순·중복되고 있다. 이 법률의 제6조에서는 이 법률이 다른 법률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법원칙인 '신법우선주의'는 이와 같이 법체계적인 고려없이 개념적인 우선규정을 됴므로써 달성되는 원칙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법률의 우선규정은 법체계적으로 검증 받아야 한다. 4. 다른 나라들의 법률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청소년보호법은 지나친 형량과 제반 여건에 대한 고려 없는 조처들로 생각된다.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법률이 다른 국가의 청소년보호법률과 다른 점이 드러난다. 특히 이 법률이 주로 처벌규정위주로 규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자들의 권위주의적 법률관을 드러내 준다. 또한 비교형량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형벌 규정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처벌 효과만을 기대하는 무사안일한 입법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법률의 체계적인 측면에서도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미숙함을 보인다. 결국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착상과 기타의 법체계와 사회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정치적인 입법이라는 데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 장에서는 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미국·독일·일본의 미성년자보호법률을 한국의 청소년보호법과 비교 분석하여 법제도상으로 나타나는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절 :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

1. 입법 동기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폭력성의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에

의 청소년 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동기이다⁶⁾.

이 입법동기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보호에 관한 청소년보호법의 의지는 주로 음란·폭력물에 관한 금지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이나 음주, 흡연 등은 마찬가지로 금지와 규제의 대상이다.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법률이 의도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내용

이 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법 제2조 1호). 그리고 청소년보호를 위한 전 국가적인 배려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제3조 내지 5조). 즉 각 사회 구성원들이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유해한 행위에 대해 신고 또는 경고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보호의 주체를 특정화하고 있다. 이 법은 청소년유해물품이나 유해환경을 업종으로 하는 업주 등에게 자율적으로 청소년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지도하고 있다(제4조, 제5조, 제12조). 이러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7조-33조).

모든 음반, 영상물, 공연물 등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규정하고(제8조), 이에 따라 청소년유해물품으로 분류된 품목들이 청소년들에게 유통·전시되지 못하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한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제14조 내지 제20조).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청소년들을 고용할 수 없고 청소년출입제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할 의무를 부담하며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엄격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제24조 및 제26조). 지방자치단체등이 청소년이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출입할 수 없도록 지역(Zoning sector)을 정하여 출입을 금지할 수 있게 법제화하였다(제25조). 민법에

6)1997년 3월 7일자 관보 제13552호, 28 이하.

의해 사단법인으로 존재하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이 법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게 하여 중복되는 행정력의 손실을 막고 있다(제45조).

이 법에 위반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징수금액은 모두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용도에 사용하게 하고 있다(제49조). 이 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형량을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여 청소년보호에 강력한 의도를 표명하고 있다(제50조 이하).

3. 법률제정에 대한 평가

한국사회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비판의 여론이 팽배한 시점에 발표된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범형식적으로 본다면 복합적인 입법 형식으로 되어 있다. 즉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제재중심의 법률형식과 국가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조치중심의 법률형식이 혼합되어 있다. 또한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제6조), 기타 법률들과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는 형식을 쓰고 있다.

사실 국가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유도해 낸다는 것과 어떤 행위를 금지시키는 자유제한의 범형식은 서로 조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률형식은 오히려 문제해결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금지법률의 대표인 형법은 범죄행위를 금지한다는 의미보다는 범죄행위자에 대한 자유의 폭을 확정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⁷⁾. 이러한 이유에서 모든 법률은 '마그나 카르타'적인 성격을 갖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처럼 금지행위에 대한 내용을 엄격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수형법을 입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제 이 법률에 의해 새로운 범죄행위가 생기기 때문이다.

어떤 행위를 기대하는 조치법률은 대부분 각 행위를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금이나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라는 명령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보호법상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법률규정은 그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법률로 명령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법률은 위의 금지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률과는 법체계적인 차원이 다르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가 대상

7) 김일수, 한국형법 1, 1997 참조.

이 되는 법률과 일정한 국가의 행위를 명령하는 명령법과는 그 질적인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엄격한 형벌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법률은 이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대상이다⁸⁾. 마치 모든 국민들의 행위를 국가가 관장하고 통제하는 듯한 '부권주의'(Paternalism)는 근대국가에서는 맞지 않는 낙후된 사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상은 우리의 헌법정신과도 맞지 않는 행정편의주의 또는 국가우월주의의 전근대적인 산물이다.

올바른 입법형식을 취하려면 법률을 구분하여 조치명령에 대한 기금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행위목록을 별도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금지대상이 되는 항목들을 형법본조에서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형법에 위임하고 나머지 행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기금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만을 묶어서 입법했어야 법체계적인 정신에 부합한다. 부언할 말은 대부분의 청소년보호법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른 기타 법률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그리고 이 법이 정해 놓은 형량의 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형량을 기록할 만한 정도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양형의 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높은 양형의 결정이 형사법적인 체계적인 고려 없이 행정편의주의 근거로만 결정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2절 : 비교법적인 고찰

거의 모든 국가들은 청소년보호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대략적인 비교를 하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만을 제한하는 규제주의와 청소년의 육성과 계발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하는 양육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만 비교한다면 미국은 규제주의를 독일과 일본은 양육주의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1. 미국

⁸⁾이러한 법형식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의 '성폭력특별법'의 경우가 그것이다.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른 청소년보호법률을 운영한다. 그러므로 통일된 미국의 청소년보호법제를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하의 연구는 주로 연방기본법 주석인 USCA(United States Code Annotated)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미국의 미성년자규정은 민사적인 권리능력과 형사처벌시 고려되는 형사책임능력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minor'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만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후자는 'juvenile'이라는 용어를 쓴다. 보통 후자는 만22세와 만18세를 공동의 기준으로 하고 전자는 만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문제되고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에 관한 규정은 형사법적인 "juvenile"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의 권리 능력인 "minor"를 대상으로 한다.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21조는 모든 종류의 주류를 18세 미만의 청소년(minor)에게 팔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⁹⁾.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류판매규제법'(Alcohol Beverage Control Law)에서 규정한다(USCA Amendment 21 Note 98). 이 규정에 의해 모든 주류와 담배 등의 유해물품은 만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미국 내의 청소년유해물품의 판매 및 제공은 연방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또한 미국은 거의 모든 주에서 州 酒類局(State Liquor Authority)나 알콜음료 관리국(Alcoholic Beverage Control Board/ Commission)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관리관청을 통하여 주류 허가(Liquor License)나 허가세에 관한 것 등을 담당한다.

미국의 청소년 연령규정은 일반적으로는 민사상의 권리능력 취득 시기인 만18세로 정해져 있다.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대략 만18세로 되어 있지만 형사책임능력을 의미하는 형사상의 책임능력 연령은 이와 같지 않다. 일반적으로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22세의 경우¹⁰⁾와 만18세 이하의 경우로 다시 구분된다¹¹⁾. 이와 비교해서 각주마다 개별적인 규정도 존재한다. 미국은 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특히 보건복지관계법과 관련하여 약물이나 주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이를 다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때의 연령은 만21세 미만자로 규정되어 있다¹²⁾. 이

9)수정헌법 제21조 2항 : The Transportation or importation into any State Territory, or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for delivery or use therein of intoxicating liquors, in violation of the laws thereof, is hereby prohibited.

10)USCA Title 18 § 5667b

11)USCA Title 18 § 5667d

12)USCA Title 42 § 290aa-8, (f)

규정은 '약물남용에 관한 법률'(USCA Title 18 § 11801-11805 - Anti-Drug Abuse Act of 1988)에서도 준용된다. 미국법의 특징은 각 주에서 로컬 카운티에 음주 연령에 대한 것과 주류판매 허가를 위임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각 주마다 차이가 생긴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음주허가연령은 대부분 만21세였다. 그 후 최근에는 그 연령이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여 만18세가 보편적인 것이 되었고, 지금은 주마다 만18세와 만21세가 혼용되어 있다.

예컨대 메릴랜드(Maryland)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the District of Columbia),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주에서는 주류 소지를 만21세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다른 주들보다 금지 연령을 높게 잡고 있다. 콜롬비아 특별구(일반적으로 워싱턴 D.C.)에서 음주가능연령을 만21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금 다른 이유가 있다. 이 지역에서 청소년의 권리능력이 성인과 같아지는 연령은 만18세로 규정하여 다른 주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콜롬비아 특별구의 소년법원에서는 만21세미만을 소년범으로 다루기 때문에 주류취급금지 연령을 이와 통일시켜서 설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미성년자(minor)에 관한 연령 정의도 각기 달라서 일반적으로는 만18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뉴욕 주와 노스 캐롤라이나 주는 만16세로 규정하고 있다¹³⁾.

음주를 제외한 청소년의 유해물질에 관한 규제는 1994년에 제정된 '안전하고 약물의 남용이 없는 학교와 사회를 위한 법률'(Safe and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of 1994)로 이루어진다. 이 법률은 음주와 별개로 학교와 사회에서의 청소년들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¹⁴⁾. 이 법률은 각 학교와 사회가 정부와 이 법률의 제정으로 설치되는 위원회¹⁵⁾의 기부(§ 7104)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제거를 위한 지속적인 조사와 노력을 규정한다. 이 노력은 정부단위와 지역단위로 구분된다. 각각의 임무와 기금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정부단위의 노력은 각 지역단위의 교육위원회의 보조와 내용 전달, 교육적인 정부의 보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약물과 학교 폭력을 계몽하는 영상물 등의 제작, 배포 등이다¹⁶⁾. 지역 교육 위원회(Local Educational Agency)는 주로 위의 정부사업의 실행과 사업의 수행에 관한 결과보고 등을 한다. 이 때 주로 고찰의 대

13)김승구, 외국의 소년범죄처리제도와 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164 참조.

14)자세한 내용은 USCA 20 § 7101ff.

15)유해물질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신탁기금(National Trust for Drug-Free Youth)을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 7105에 규정되어 있다.

16)USCA 20 § 7113 - b) (1)

상이 되는 것은 청소년들의 약물과 음주의 비율, 폭력으로 인한 희생자 비율, 불법적인 청소년 폭력조직의 활동, 가정폭력과 성적인 괴롭힘(Sexual Harassment) 등이다¹⁷⁾.

현재 일반적으로 미국은 음주와 흡연 등에 대해서 만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방법 위반에 대한 조치는 영업자의 경우 과태료만이 규정되어 있다. 그외에 기타의 행정처분 등을 병과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서이건 특별한 유해행위와 관련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다. 마약류에 관한 판매 등은 예외로 한다.

2. 독일 :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독립된 청소년보호법¹⁸⁾을 갖고 있다. 이 법률의 특징은 청소년의 보호조항을 각 사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의사항과 금지사항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해당 행위에 대한 제한연령과 금지연령, 그리고 친권자의 동반 유무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 법률은 보호대상으로서의 청소년의 개념을 '소년'과 '청년'으로 구분한다(제2조 1항). 소년은 만14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청년은 만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¹⁹⁾. 혼인을 한 경우는 성년으로 의제된다. 그러므로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이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

청소년들의 권리·의무와 친권자 등의 권리·의무는 각 영업소와 해당 행위대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출입의 경우 양육권자²⁰⁾를 동반한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허용되어 있고(제3조 1항), “1.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사업에서 승인된 주최자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청소년이 여행 중에

17)USCA 20 § 7113 (d)(2)(ii)

18)1985년 2월 25일 제정 법률

19)제2조(개념정의) : ① 이 법률에서 소년이라 함은 14세 미만의 자로서, 청년은 14세이상 18세 미만의 자로 한다.

20)양육권자라 함은 '민법전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과 공동이나 단독으로 친권을 갖는 자'와 친권자와의 합의로 친권을 대리하거나 교육의 범위내에서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은 청소년복지사업의 범위 내에서 그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타의 자'를 의미한다(법 제2조 2항).

있는 경우, 3. 청소년이 직접 식사나 음료를 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만16세 이상의 청년은 양육권자의 동반없이 24시까지 음식점에 체류할 수 있다(본조 제2항). 야간 주류 또는 나이트 클럽 및 유사 위락업소는 청년과 소년 모두 입장 또는 체류가 금지된다(제3항).

공개된 음식점 또는 판매소에서는 공개적으로 “희석식 소주(Brantwein), 소주함유 음료 또는 소량의 소주만을 함유하고 있는 음료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제4조 1항의 1). 단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위에서 규정한 주류 이외의 음료를 판매할 수 있다(제4조 1항의 2). 청년이 친권자와 동반하여 주류를 마시는 경우는 허용한다(제4조 2항). 또한 공개된 장소에 자동 주류 판매기를 둘 수 없다(제4조 3항).

공중 무도장의 경우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양육권자의 동반없이 공중 무도장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16세 이상의 청년은 24시까지 출입이 허용된다(제5조 1항). 이 경우 청소년 관서의 요구가 있으면 예외가 허용된다(제5조 2항). 이러한 예외의 구체적인 내용은 “청소년 복지사업의 승인을 받은 주최자가 개최하는 무도장 또는 예술 활동이나 전통 행사에 이용되는 무도장의 경우”를 말한다(제5조 2항).

그 밖에도 세부적인 청소년 위해환경에 대한 규정도 갖추고 있다. 즉 영화의 등급 위반상영에 대한 규제(제6조)²¹⁾를 통해 청소년유해영화 등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허용된 상영의 경우도 다시 시간별로 그 관람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 제6조 4항의 1은 소년의 경우 20시전에 상영이 종료될 것을 요구하고,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22시전에 상영이 종료될 것을 요구한다. 16세이상의 청년의 경우는 24시전까지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청소년유해도서배포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er Schriften)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²²⁾. 6조와 관련하여 일정 연령 미만자에 대한 음반 및 필름의 접근, 양어

21)영화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 1. 나이 제한없음,

2. 6세부터 허용,

3. 12세부터 허용,

4. 16세부터 허용,

5. 18세부터 허용(제6조 3항).

22)이 법률은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시기에 제정된 법률이다(1985년 7월 12일). 이 법은 예술작품이나 학술연구물, 종교적인 의미를 담은 작품을 제외한(제1조 2항) 음반, 영상물, 복제물 및 기타의 청소년 유해표현물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도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6조의 ‘중대한 위협있는 도서’에 규정되어 있다. 그 구별기준은 일반형법상의 법규정에 위임하고 그외에 ‘청소년을 도덕적으로 현저하게 타락시킬 명백한 위협성이 있는 도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위법은 일반적으로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위협성 있는 도서를 청소년에게 판매·배포

등 위반(제7조), 청소년의 도박장 오락실 출입금지(제8조)²³⁾, 16세 미만의 공연한 흡연금지와 방관에 대한 사항(제9조)²⁴⁾, 청소년 유해행사에 참여금지(제10조) 등으로 청소년보호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의 금지(제1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위반은 모두 질서위반행위로 처벌한다(제12조 1항)²⁵⁾. 일반적으로 양육권

등을 한 경우 청소년보호법과 달리 최고 1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할 수 있다.

23) 제8조(도박·오락장) : ① 청소년은 공중도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사행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② 사행행위의 성과가 사소한 가치의 것인 한도에서 청소년은 국민축제, 사격대회, 대목장, 특별장 기타 유사한 행사에 사행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기대이익이 없는 전자화면오락기를 유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1. 청소년이 공연히 접근할 수 있는 통행지역
2. 영업상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사업상 이용되는 공간의 외부
3. 감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영업장소 등의 출입구 또는 부속실

④ 공연하게 유상이용에 공하여진 기대이익없는 전자화면오락은 양육권자의 동반이 없는 한 16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

24) 제9조(공연한 흡연) : 16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는 공연한 흡연이 허용되지 아니 한다.

25)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2조(질서위반) : ① 행사의 주최자 또는 업주인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질서위반으로 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음식점에 체류하게 한 때,
2. 제4조 1항에 위반하여 주류 또는 주정함음식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취음하게 한 때
3. 제4조 3항의 1문에 위반하여 주류를 자동판매기로 판매한 때
4. 제5조 1항에 위반하여 16세미만의 청소년에게 공중무도장의 입장을 허용한 때
5. 제6조 1항 또는 4항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그의 연령등급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연영상물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 때
6. 제7조 1항에 반하여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연령등급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연된 녹화물체의 접근을 허용한 때
7. 제7조 2항의 2문과 3문에 위반하여 동행에서 정한 형식에 따르지 아니 하거나 상급행정청에 의한 연령등급에 상반되는 표시를 부착한 때
8. 제7조 2항의 2에 위반하여 제한이 해제되지 아니한 영상물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때
9. 제7조 4항에 위반하여 공연된 영상물을 자동판매기로 판매한 때
10. 제8조 1항에 위반하여 대중오락장 기타 동조 동호에 게시한 장소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때
11. 제8조 2항에 위반하여 청소년의 도박참가를 허용한 때
12. 제8조 3항에 위반하여 오락기를 설치한 때
13. 제8조 4항에 위반하여 16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오락기이용을 허용한 때
14. 제8조 4항에 위반하여 16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공연한 흡연을 허용한 때
15. 제10조에 의한 집행가능한 명령에 위반한 때
16. 제11조의 1문에 위반하여 영업시설 또는 행사에 대해 적용될 법규정을 동규정에 의한 게시물로 공고하지 아니한 때
17. 제11조의 3문에 위반하여 제6조 3항의 1문에서 규정한 부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18. 제11조의 3문에 위반하여 선전 또는 광고시에 청소년유해내용을 게재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법으로 선전·광고를 한 때

자와 영업소 주인은 3만 마르크(한화 약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이 위반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만 마르크(한화 약 2,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독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조항은 존재치 않는다.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서 또하나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영업자나 행사 주최자의 청소년임을 인지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이 법의 제2조 3항은 “의심스러운 경우에 업소주인은 그 권한을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양육권자가 진정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의심스러운 경우’를 법률적으로 배려한다는 점이다. 의심스럽지 않다면 확인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착오나 과실의 범위확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형식은 영업자의 과실이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3. 일본 : 미성년자음주금지법과 미성년자흡연금지법

일본은 각 해당법률로 미성년자들의 흡연과 음주행위를 규제한다. 일본의 법률은 음주와 흡연에 대한 관리·감시권자의 책임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두 법률 모두 조문의 수가 4, 5개에 불과한 간략한 법률로 되어 있다. 일본의 법률은 모두 일본 민법 제3조의 성년자 연령규정에 따라 통일되어 있다. 일본의 민법 제3조의 규정은 만20세를 성년의 연령으로 본다. 그외의 규정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과 거의 동일하다.

1) 미성년자음주금지법 :

일본의 미성년자에 대한 음주규제는 대정 2년(1913년) 4월 1일 제정되고 소화 22년(1947년) 법률223호로 개정된 미성년자음주금지법에 따른다. 이 법 제1조 1항은

만 20세 미만의 음주음용을 위한 주류취득을 금하고 있다. 그리고 제1조 2항은 친권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감독권의 일환으로 미성년자음주를 제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다. 제3항에서는 영업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한다.

위의 규정을 위반하는 친권자와 영업자는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즉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2) 미성년자흡연금지법 :

명치 33년(1900년) 4월 1일부로 시행되어 소화 22년(1947년) 법률 제223호로 개정된 미성년자흡연금지법은 만20세 미만자의 흡연을 금지한다(제1조). 이 법은 미성년자음주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친권자의 감독소홀을 과태료로 처벌한다. 그러므로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흡연을 제지·훈육할 의무를 해태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는다(제2조 1항). 또한 이 법의 제4조는 미성년자에게 흡연기구 등을 공여하거나 판매한 자를 마찬가지로 과태료로써 처벌한다.

미성년자음주금지법과 마찬가지로 해당 미성년자나 그 보호·감독자, 또는 영업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4. 비교결과

이상과 같은 비교법적인 고찰은 다음과 같은 한국 청소년보호법의 위상을 보여준다.

한국의 청소년보호법은 다른 나라의 법률들과 비교해서 첫째 형량이 높다. 이 법의 위반영업자에 대한 벌칙조항(제50조 이하)은 대부분 3년 이하의 징역과 2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어떤 나라의 규제강도보다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비교 대상이 되었던 어떤 나라에서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흡연물품을 판매한 자에게 형사처벌이라는 중형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비교대상국들은 이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명백한 친권자나 영업자의 과실이나 고의가 입증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과로 등의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과태료법적으로 행정벌의 대상이지 벌금형이나 과료와 같은 형사처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와 관계없이 형사벌금과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비교대상이 되었던 다른 나라의 법률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청소년보호법은 친권자의 동반사항이나 예외적인 허용의 경우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 한국의 청소년보호법 제24조의 제3항은 친권자를 동반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정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친권자를 동반한 약간의 음주 등은 관행상 인정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²⁶⁾. 현행 법률대로 한다면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기타의 법률들에 의해서 규율되는 출입제한 장소만을 정하고 있지 그 정도의 문체에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단지 일반적인 법해석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법률의 입안에 이러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적용범위가 있다는 것은 입법기술상의 미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의 청소년보호법률은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가 규제되지 못하고 있다. 민법상의 성년의제조항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경우는 이 법률에 의해서 예외가 되는 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못하다. 특히 이 법의 제6조는 다른 모든 법률에 우선한다고 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 쉽다.

셋째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연령 규정이 국내의 다른 법률들과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입법 기술상의 실수로 보인다. 비교대상국의 다른 규정들은 대부분 제한 연령 규정에 일관성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민법과 다른 청소년 관련 법률들의 제한연령이 일관성이 없으므로 해서 법 적용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비교 대상국들처럼 통일적인 규제법률은 없었지만 청소년 기본법이나 식품위생법 등을 통해서 해당 사항들을 충분히 규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은 같은 사항을 다시 한 번 중복 입법함으로써 통일적-체계적 입법에 실패하고 있다.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체계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해당법률에 위

26) 청소년들의 음주나 흡연은 그 비행행위로 인한 제2의 범죄행위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문제시되긴 하지만 음주와 흡연 자체가 비행행위와 직접 인과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준호/박정선,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실태 및 비행과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113 이하.

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부수법률과 법규들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들이 다수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이러한 기본법률들을 아무런 근거없이 효력 정지 또는 중복 규정하고 있다.

3절 : 청소년보호법의 법체계상의 문제점

1. 청소년보호법의 기타 국내법과 중복·모순관계

1) 민법과의 중복·모순

청소년보호법상의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규정은 민법 제4조의 미성년자 규정인 만20세 규정과 맞지 않는다. 또한 특별법으로 1991년 12월 31일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 규정(제3조 1호 :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에도 모순된다.

만일 민법의 규정에 우선하는 우선규정이라고 한다면 청소년보호법상의 만18세 규정은 다른 법률에도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일반법인 민법상의 성년규정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의 성년규정이 일반법에 비해서 특별한 목적과 기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상의 연령규정은 단지 18세 미만자로 규정하여 18세 이상 20세 미만자에 대한 다른 법률적용을 애매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 민법상 성년의제조항(민법 제826조의 2)은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성년의제를 하고 있다. 이 조항은 혼인을 한 미성년자가 권리능력에 있어서 불리한 지위를 갖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1977년 민법개정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성년으로 의제되는 이 규정은 다시 민법 제807조에 의해서 남자인 경우 만18세 이상 여자인 경우 만 16세 이상을 절대적 혼인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제816조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보면 만16세의 여성인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만18세 규정보다도 더 낮은 연령에서 성년으로 의제된다. 이 때 만18세의 남편과 만16세의 부인으로 구성된 부부가 청소년보호법상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가 애매해질 수 있다. 일반법인

민법상의 성년의제가 인정되면 만16세이상의 부인은 성년으로 취급받아 청소년보호법상의 금지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청소년보호법의 제6조에 따라 이 법률이 모든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면 만16세이상 만18세미만의 해당 부부의 부인은 청소년보호법상의 금지행위를 못하게 된다. 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해결될 수 있는 이 문제는 특별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입법의 과정에서 토의되었어야 할 문제로 남을 수 있다. 이것은 시기에 맞추어 신속한 입법을 해야한다는 과중한 부담이 세밀한 입법내용을 살펴보지 못하게 한 결과로 생각된다. 한마디로 '줄속입법'을 보여준다.

2) 현행 청소년기본법과의 관계

이미 존재하는 청소년기본법은 제48조에 청소년유해요인의 정비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7조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의 종류·범위]의 1항 규정은 아래와 같다 :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업소출입제한,
2.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규정의 증기탕 및 성인용 유기장 출입제한,
3. 사행행위등규제법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의 사행행위금지,
4.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의 미성년자에 대한 무도장 출입 제한과 동법시행령 제2조 5호에 의한 노래 연습장 출입 제한,
5. 담배사업법 제16조 1항의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 및 미성년자의 담배 소지 금지,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1항의 유독물제조·판매·취급규제,
7.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의한 내용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제2항이 규정하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는 :

1. 위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 출입허용행위,
2. 청소년에게 해로운 물품·영상물 또는 인쇄물을 제공·판매하거나 이용 등을 용인하는 행위,
3. 청소년에 대한 사행심 조장행위,
4.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칠만한 행위에 대해 문화체육부 장관령으로 규제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청소년기본법은 이 법에서 지적하는 세부법률규정들을 통합적으로 엮어 청소년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침으로 활용하는 법률이다. 그러므로 이 법률에 의해서 세부적인 법률들인 풍속영업에관한법률, 담배사업법 등은 청소년기본법의 적용으로 실질적인 참고조문으로 활용된다. 청소년기본법의 일괄적이고 낭비가 없는 입법형식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제정으로 유명무실해진 것 같다. 청소년보호법은 입법형식으로만 보면 기존의 청소년기본법보다 훨씬 후진적이고 엉성한 법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하나의 문제는 청소년기본법상의 미성년자규정이 만24세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청소년기본법상의 연령규정은 순수 법체계적인 이해에 따를 때,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규제연령이 만18세로 낮추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만18세 이상 24세 미만자의 법률기속기준이 애매해진다. 청소년보호법이 보호대상으로 삼고있는 청소년의 기준에 청소년기준법의 보호대상인 만24세 미만의 청소년을 포함할 수 있는지가 공백으로 남겨있다. 청소년보호법상의 금지행위가 기존의 청소년기본법상의 금지행위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것들은 청소년보호법을 신법우선주의에 따라 우선 적용될 때 나타나는 결론이며 중복입법의 폐단이라고 할 수 있다.

3) 기타 법령과의 모순·충돌

국민투표법은 투표가능연령을 만20세로 규정한다(제7조). 그렇다면 국민투표법상의 투표가능연령인 만20세 규정(제7조)과 음주와 흡연가능연령으로 해석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법상의 만18세 규정의 차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진다. 헌법상으로 보장된 선거의 권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권리능력이나 자기 책임을 질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 규정이 만20세로 되어 있다는 것은 미성년자규정과 어떤 관계로 이해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의 제한연령 또는 제한 자체는 일정한 원칙에 따른다. 그러나 음주와 흡연 가능연령이 헌법상으로 보장된 선거의 권리를 실행하는 연령보다 낮아야 한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다.

그외에 소년법이나 국가공무원법상의 연령규정들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각각의 연령규정은 통일적이지 못하여서 불필요한 해석상의 수고를 야기할 수 있다.

2. 법률만능주의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에서 보여준 입법태도는 극단적인 법률만능주의 또는 법률경시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새로운 입법은 구법이 기존의 사회적 규범의식과 심각할 정도의 괴리가 인정될만한 사유가 존재하거나, 해당 구법률이 새로운 규범관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만 그 민주적인 합의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의 입법과정은 그러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법률은 시기적인 경향에 맞추려고 무리한 입법을 감행한 흔적이 다수 보인다. 그래서 기존의 법률들조차 확인해보지 않고 입법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기존의 법률을 모두 무시하는 새로운 입법은 기존의 법률에 대한 무지에 따른 결과가 아니면 기존의 법률에 대한 경시에서 비롯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청소년보호법상의 우선적용규정(제6조)은 신법우선원칙이나 특별법우선원칙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해한 듯이 보인다.

1) 법률적용의 일반원칙

법률의 적용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다수의 원칙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법우선원칙과 특별법의 일반법에 대한 우선원칙이다. 이 원칙들은 기존의 법률이 변경되었거나 유사한 법률이 동시에 존재할 때 우선적용의 순위를 보여주는 원칙들이라고 볼 수 있다.

(가) 신법우선원칙

일반적인 법해석의 원칙인 신법우선원칙이란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를 것을 지시하는 법체계적인 적용순위를 말한다. 이 원칙은 기존의 성문화된 법률의 효력근거인 일반인들의 규범관의 변화를 고려한 사정 변경의 내용에 따라 후에 만들어진 법률이 더욱 변화된 규범관에 합치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형성된 원칙들이다. 이 원칙을 단지 그 단어의 의미대로 유사한 내용의 모든 법에서 적용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새로이 나타난 법률은 모든 구법률들을 효력정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법률해석의 기본적인 정신을 망각한 형식주의에 입각한 이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신법우선원칙의 준수가 신법만능주의로 흐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체계적으로 상위법률과 하위법률이 존재한다. 예컨대 상위의 법률인 헌법이 존재하는 데도 신법이 하위의 부수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헌법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개폐되는 것은 아니다. 상위의 법률이 무엇이고 하위의 법률이 무엇인지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신법우선원칙의 한계를 그을 수 없다. 이처럼 이해하면 신법우선주의는 신법인 경우 모든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전제되는 어느 정도의 유사한 법체계적인 위치에서 동등한 또는 그보다 하위의 법률을 구속하는 원칙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항상 신법이 우선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특별법우선원칙

특별법우선원칙은 일반법보다 특별법의 우선적용을 지시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이

특별법우선원칙도 특별법이 항상 일반법보다 우선적용하라는 명령은 아니다. 만일 이처럼 특별법을 항상 우선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법에 비해서 특별법을 우선시키려는 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시급히 요구되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정변경은 보통 시간적인 적용과 공간적인 적용으로 구분된다. 먼저 시간적인 적용의 경우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처하거나 일시적인 현상을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이 필요할 때 일반법의 적용을 잠시 보류시키는 것을 지시한다. 비상경제명령 등에 의한 조치법률등이나 어느 시기를 정해서 시행하는 한시적인 법률들이 그 예이다. 두 번째의 공간적인 적용은 일반법률의 광범위한 적용과 맞지않는 특수한 그룹의 법률적용 그룹을 규율하는 법률을 예로 들 수 있다. 예컨대 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라는 것은 그 좋은 예이다. 민사법적인 내용들은 일반인들간에 적용되는 사법이라면 상사법률들은 거의가 상인이라는 특수한 계층들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일반 민법상의 이자율이 년 2할 5푼로 규율된다면 상인들간에는 그를 초과하는 이자율이 상법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칙들은 법률의 개정필요성을 입법논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준거역할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특단의 상황에 대한 사정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규범관에 맞추어서 새로이 법을 개정하든지, 당장의 위급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하여 일반법에 앞서는 특별법률을 제정하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다) 특별법우선원칙과 신법우선원칙의 내재적인 한계

위의 원칙들은 단지 그 규정이 일반법에 특별규정이라고 우월적 지위에서 적용되거나 새로이 제정·개정된 법률이라고 해서 당연히 따라야 하는 법원칙은 아니다. 이 원칙들은 오히려 해당 법률이 갖는 전체법체계적인 위치에서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상위의 법체계에 해당하는 법률의 제(개)정이 하위의 법률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는 원칙이라는 것이 신법우선원칙이나 특별법우선원칙의 기본 이념이다. 이러한 내재적인 한계는 법체계의 성격상 당연히 인정되는 성질들이다. 만일 이 기본적인 한계를 무시한다면 법률은 단순한 통치도구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문제되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이러한 원칙들을 지나치게 신뢰했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법의 규정이 모든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단순히 명시하는 것으로 이 원칙들의 적용을 기대하는 것은 상식 밖의 생각이다.

청소년보호법의 법체계적인 위치가 일반행정법규와 동격의 지위인지 아니면 기본법률인 민법이나 형법의 특별관계에 있는지가 먼저 평가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론이 기본적인 기타의 법률 등과 동격이나 오히려 하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당연히 이 규정의 중복조항들은 법체계를 위배하는 입법행위가 될 수 있기도 하다.

3. 청소년보호주체의 애매성

청소년보호법 제3조(가정의 역할), 제4조(사회의 책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는 청소년들의 보호주체를 가정, 사회, 국가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결국 이 법률에서 청소년보호주체로 강제되는 것은 국가 전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법적인 의무를 일반화하는 법률정책으로 볼 수 있다.

제3조에서 보듯이 가정의 책임에서 제지의무자는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는 청소년보호자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유해환경을 접촉하는 청소년을 친권자나 청소년보호자가 접촉금지·출입통제 등의 제지행위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제4조 1항은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접할 수 있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의무와 이를 출입 또는 이용하는 청소년을 제지하거나 선도할 의무를 규정한다. 제4조 1항의 후단과 제44조(신고의무)는 이를 알고 있을 경우 제21조 3항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다. 제5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서는 위와 같은 의무 이외에 다시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유해시설물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주체확정은 표면적으로 보면 입법상의 세밀한 배려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법률주체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심각한 혼선만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먼저 가정의 책임에 관해서 보면 가정 내에서 청소년의 선도와 올바른 육성은 전통적으로 도덕적인 가정교육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

은 노력을 다시 규정한다는 것은 '법률의 도덕법전화'를 부추기는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법률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도덕원칙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률은 도덕적인 문제를 최소한의 선에서 선언해 주는 기능만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법률문언의 내용이 도덕원칙들을 복제하기 시작한다면 근대적인 법이성의 역사에서 '탈도덕화'를 추구했던 근대법정신에 반대된다. 이러한 탈윤리화는 법률의 비도덕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윤리적인 비난이 법률적인 위치를 차지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즉 도덕적인 판단은 법률해석이나 입법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도덕적인 비난과 법률적인 비난이나 의무부과는 그 내용적인 면에서 차원이 달라진다는 측면을 중시하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상의 주체를 일반인 모두라고 할 수 있다는 착상 자체가 입법자들의 비근대적인 법률이해를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생각된다. 그 주체의 미확정은 이 법률이 원래부터 실효성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갖게 하기도 한다. 특히 이 법 제5조의 국가의 모든 기관들이 청소년보호에 이바지 해야 한다는 선언규정은 현실적인 면에서 볼 때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이 조문이 우리 국가의 일반적인 행정목표를 선언한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보호법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가기관에 대한 의무규정인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이 법조문이 청소년보호법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마련해 놓은 국가기관들의 행위부과규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실현될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법에서는 단지 몇 개의 위원회 설치에 대한 권고사항만이 함께 규정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규정들은 청소년보호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장식하기 위한 수식규정에 불과한 것 같다. 이처럼 이해할 때 청소년보호법의 주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실행주체는 없고 그 위반자만을 처벌하는 특별형법의 가장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처럼 영업주 등의 청소년 신분확인에 관한 의무에 대해 '의심스러운 경우'라는 문언을 구비하지 않은 우리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은 영업주들의 의무를 법률적인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법적인 의무가 되려면 영업주들의 양심의 긴장에 관한 주의 의무가 따로 명시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은 금지착오 등을 이용하여 이 의무가 사문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법률문언의 모호성

청소년보호법의 또다른 문제점은 법률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제10조의 청소년유해 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 보면 제1조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 내용은 :

- i)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동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ii) 청소년에게 폭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iii)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iv)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v)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위의 기준을 따를 때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들은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기준이다. 즉 기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청소년에게 음란한 것이라는 기준이 과연 성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청소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가 애매하고, 둘째 범죄적인 충동을 일으키는 매체물에 대한 기준이 어디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과연 어떤 것이 한국 사회에서의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지도 명확한 기준이 있을 수 없다. 형법상의 음란물죄에서 다루어지듯이 일반적인 음란물 판정에 대한 기준도 각 관례나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처럼 청소년보호법의 음란성과 폭력성조장에 대한 평가기준은 아무런 근거없이 대충의 내용만을 기준으로 제시하고는 다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제10조 3항). 더욱이 그 대통령령 조차도 단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몇 개 조항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구별기준에

관한 조항은 단 한 개도 없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형법 자체에서도 음란개념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다만 음란에 대해서 “그 내용이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키고 보통인의 정상적인 性的 羞恥心을 해하고 선량한 性的 道義觀念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⁷⁾.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서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4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44조에서 “전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4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음란개념에 의하면 음란개념은 두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 1) 작품(물건) 자체에 내재하는 본질적 요소로서 수치와 혐오를 느낄 정도로 성욕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성질.
- 2) 사회적 요소로서 일반 통상인의 성적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해칠만한 위험성이 있는 것.

그러나 개인과 사회의 상황에 따라 음란성은 유동적이다. 그래서 법적 판단에서 문제되는 음란의 문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개념의 문제이고, 무엇보다도 무엇이 ‘입증’될 수 있느냐라는 ‘증명’의 문제이다. -

음란성의 판단의 표준에 관한 형법상의 학설은 저작자 또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목적만으로 음란성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주관설), 객체 그자체에 내재하는 특성이나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되 그 객체가 놓여있는 구체적 제사정을 고려하지않고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내용설), 그리고 음란성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객관설)로 나뉜다. 대체로 형법학자들은 마지막의 객관설에 일치점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이 객관설을 따를때 학설과 판례등에 의해

27)이 세상, 형법각론,592 쪽;김종원(공저),형법각론, 555 쪽;서일교,형법각론, 209 쪽;유기진, 형법학(각론강의 上), 94 쪽;정영석, 형법각론, 201 쪽;황산덕, 형법각론, 151 쪽;대판 1987.12.22. 87 도 2331; 대판 1982.2.9. 81 도 2281.이것은 독일의 판례 경향과 일치한다. BGHSt 3, 295ff.;11, 67.72;BVerwG NJW 1967,S.1483;독일형법 개정어유서(1962) §206 Abs.1을 참조.

서 세워진 음란성 판단의 원칙은 아래와 같다.

- 1)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2) 평균인 표준주의에 입각하여야 한다.
- 3) 작품전체 평가주의에 의해야 한다.
- 4) 법률적 가치판단이다.
- 5) 전문적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형법상의 견해대립에서 보듯이 음란성이나 폭력성이라는 개념은 어떤 기준으로 작용하기 힘든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어떤 물체의 음란성이라든지 폭력성을 입증하기는 힘들다. 더욱이 이 물체에 의한 위험성을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청소년보호법상의 해당 규정은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명백하지 않은 애매한 문언으로 이루어진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5. 높은 형량과 원칙없는 사법처리의 가능성

청소년보호법의 벌칙규정은 최고 3년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제50조 이하). 이러한 벌칙규정은 아무런 형법상의 다른 범죄와의 비교형량적인 고려없이 규정되고 있다. 예컨대 형법상 음란물에 관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243조 이하). 그러나 청소년에 관한 음란물판매행위는 최고 3년이하의 자유형으로 상승된다.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비교대상국들의 법률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 인신구속을 위주로 한 형사처벌을 명령하고 있는 법률을 가진 국가는 없었다. 가장 우리의 경우와 유사하게 엄벌주의를 따르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약간의 과료와 영업자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의 흡연물품 판매행위를 벌금으로 다루는 뿐이다. 이러한 것은 불법을 한 시민들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국가의 법적 태도와 관계된다. 모든 국민들의 행위에 대한 범죄적인 처리를 원하는

국가는 이미 민주적인 국가가 아니다. 이것은 중세의 군주제도에서나 가능할 수 있는 착상이다. 이 사실은 우리의 법적 문화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비교대상국들은 친권자와 영업자 등을 과태료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와 같이 벌금형이나 심지어 인신구속까지 규정한다는 것은 사법적인 폭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때 문제되는 것이 단지 형량의 증가만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소년보호법은 일반법인 형법보다 특별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의 판매등은 형법상의 착오를 원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즉 업주나 판매인이 청소년임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사법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이미 열려있다. 즉 이 법 제24조는 각 영업주 등이 청소년의 신분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와 같은 의무가 일반적인 의무로 전화될 수 있는 의무인지도 의심스럽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형법상의 의무인지 생각하기 힘들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만 영업주 등의 연령조사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시민의 자유를 위해 발달한 형법적인 원칙들은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없이 일반 행정명령과 동격인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대부분 정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된다면 자유주의를 기초로 발달한 현대법체계의 수백년간의 노력을 일시에 정지시켜서 다시 중세시대로 돌려놓는 것밖에는 안 된다. 이러한 고려도 없이 입법을 하였다는 것은 이미 입법기술상의 무지에 기인한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4절 : 결론

청소년보호법의 제정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생활과 육성을 그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청소년보호법은 법률적으로는 프로그램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프로그램적인 법률의 가장 기본적인 약점은 법률 자체의 유효성이다. 효과면에서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법률들의 실효성은 항상 잊혀지게 되어 있다.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등의 비행행위²⁸⁾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물질 공급 등을 차단하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법률 자체만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토대가 없는 형식적인 입법이며 새로운 프로그램적인 선언일 뿐이다.

비교법적인 고찰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은 입법기술상의 측면에서나 그 효율적인 규제 측면, 규제의 측면에서 적당하지 않다. 다른 나라의 법률과 비교해서 비교대상국의 실정과 우리의 경우는 너무 큰 차이가 난다. 이것은 입법단계에서 지나치게 줄속으로 일을 추진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품게한다. 법체계적으로는 중복입법과 법원칙 상호간의 물이해, 법적인 수단의 맹신성등이 지적될 수 있다. 정치적인 법률의 폐해는 법률의 생명이 정치인들의 생명보다 오래간다는 점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보다 세밀한 법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했다고 보여진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실제적인 규범이해와 청소년들의 발육과 정신수준, 사회와의 갈등요인에 대한 면밀하고 자세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다. 단지 아무런 고려없는 법률규정과 강화된 형벌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비민주적이라는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또하나의 폭력일 뿐임을 명시해야 한다. 요컨대 청소년보호법의 비교법적인 고찰이 보여주는 결론은 신중한 입법과 절차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법률문화가 아쉽다는 점이다.

이러한 청소년보호법상의 모든 규정들은 다시 신중하게 토론을 해 봐야 한다. 그에 대한 법적인 해석은 다음의 점들을 주의해서 실행되어야 할 것 같다 :

1. 보호연령의 통일적인 적용

청소년보호법상의 제한 연령은 통일적인 법체계의 운용을 위해서나 현실적인 법질서의 적용을 위해서도 하나의 연령규정으로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민사법적인 미성년규정과 다른 공법상의 권리능력 제한연령을 이 기회에 정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법적인 모순관계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의 연령은 만18세로 규정되어

28) 음주와 비행행위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동일, 청소년음주와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있고 민사법이나 형사법상의 청소년은 20세로 되어 있어서 통일적인 법정책이 수행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러한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의 발육이나 문화적인 행태를 고려하고, 다음으로는 현실을 고려한다. 즉 우리사회에서 성인되는 의미를 부여하는 고등학교 졸업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성인인정의 연령과 사회적 상황의 결정요소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발육정도와 자기결정능력의 존중, 그리고 현실적인 사회상태를 고려한 청소년연령 규정은 청소년들의 문화적인 성숙을 간섭하지 않고도 사회적인 규범일탈을 방지할 수 있다. 성년과 청소년의 구분은 만18세에서 만20세까지의 연령을 별다른 고려없이 정하는 것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연령 규정은 법률로 정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법률이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불간섭주의(non intervention)는 방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불간섭과 제한적인 불간섭은 기본적으로 간섭권자의 능력과 간섭권의 타당성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사회자체가 불건전한 상태에서 청소년들의 기존 성인사회질서에의 편입만을 간섭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매우 기묘한 착상이다. 마치 자신들의 쾌락주의를 청소년들로부터 막아보겠다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간섭의 기준을 낮춤으로써 사회자체의 자제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될 때 청소년들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성숙도를 기대할 수 있고 저질 성인문화도 자체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규범적인 일탈행동은 금기성이 깨짐으로써 일상화되면서부터 그 신비로움을 잃어버린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법률이 지속적으로 금기시하면 할수록 이러한 신비감은 증대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현실적으로 20세미만의 고교졸업자에게 일괄적으로 음주나 흡연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음주나 흡연이 개인적인 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지나친 국가의 간섭과 개입이라고 생각된다. 원칙적으로는 청소년보호연령은 선거권을 갖거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연령과 맞추는 것이 통일적인 법정책과 법생활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그 기준은 그 사회의 청소년에 관한 인식과 청소년들의 자유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한도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 같다.

2. 사법적인 통제의 합리화

우리의 법률정책에서 고질적으로 시정되어야 하는 점이 바로 법적인 처벌위주의 정책이다. 이것은 너무 오래된 병폐라서 다시 지적한다는 것조차 부끄러운 문화를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법정책의 발상은 법률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입법자들의 일천한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다. 구태여 비교법적인 고찰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조항의 위반자가 감수해야 하는 형량의 범위는 상상력의 한계를 벗어난다. 이러한 발상이 어떻게 현실화되었는지가 감탄스러울 뿐이다.

청소년보호법상의 모든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은 일반형법상의 구성요건과 중복되는 때에만 일반형법에 위임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형벌규정을 일반형법상의 구성요건해당행위인 경우 위임한다는 체계가 바람직하다. 즉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고소·고발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 법률이 형벌의 내용과 양을 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특별형법의 양산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²⁹⁾. 형법의 해석수단을 통해 충분히 여과되어야 범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법적인 통제는 오히려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청소년보호주체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기관으로 확정하여 그 단체의 적극적인 청소년보호활동을 통제하고 단속할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불필요한 국가의 예산낭비와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법률로 그 내용을 확정할 것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그동안 설치된 수많은 예산낭비기관들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새로이 추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새로운 설치되는 보호위원회는 엄격한 사법통제를 받아 예산과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기획을 하고 집행하는 살아있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법의 제1차적인 목적인 청소년들의 문화를 선도하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을 쓰는 국가기관의 책임을 보호자나 일반 상인들에게 모두 떠넘기는 작태를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법률 통제는 국가에 의한 시민들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시민들에 의한 국가의 통제이기 때문이다.

²⁹⁾이에 대해서는 매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1997.

3. 기타 법률들과의 유기적인 조화

언급했듯이 현행 청소년보호법과 유사한 법률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법률규정들은 청소년기본법등과 같은 법률은 청소년보호법과 통합시키던가 아니면 새로이 다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률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세부적인 내용에서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법률조항들이 구체적으로 현행 청소년보호법과 연관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개정·조정되어야 한다. 각 유흥업소 등에 적용되는 세부지침들도 구체적으로 청소년관련법안들과 모순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유흥업소나 위락시설등에는 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법경찰관의 입회 등을 그 출입문이나 근거리에 상시배치하여 위험요소를 미리 예방·제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경찰행정의 기본 원칙은 예방과 보호이지 단속과 처벌이 아니다.

제 4 장 : 음주 및 흡연에 대한 태도에 대한 심층면접

지금까지 우리는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동시에 음주 및 흡연에 대한 규제연령을 법률적으로는 현행대로 18세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 최종적인 제안을 하기 전에 청소년보호법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심층면접을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면접은 청소년보호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학부모, 청소년 관련단체 종사자, 수퍼주인, 술집주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접기간은 1997년 4월부터 8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면접 장소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시내 간이 음식점과 학교에서 실시하였으며, 학부모는 본 연구자의 집에서, 청소년 관련단체 책임자와 수퍼주인 등은 연구자들이 단체와 수퍼를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모든 대상에게 공통적인 질문과 대상에 따라 다른 질문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우선 공통적으로 모든 대상에게 질문한 내용은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인 규제연령의 문제와 청소년보호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주로 물어 보았다. 한편 규제 대상인 청소년과 수퍼주인 등에게는 단속 경험여부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그리고 단속에 따른 어려움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심층면접 결과를 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술과 담배의 남용실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대로 술과 담배를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경우에 남용을 하는지, 남용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술과 담배와 비행간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우선 처음 접하게 된 경로는 혼자서 하기보다는 친구와 선배를 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형제나 친척 심지어는 술의 경우에는 교사나 부모를 통한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술과 담배를 처음 접한 장소 역시 자기집이나 친구집이 가장 많다고 응

답하였으며 학교 안이나 학교주위도 적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적지 않는 학생들은 공터, 빈집, 동네 놀이터, 야산, 술집, 카페, 디스코장, 비디오방, 노래방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흥업소에서 술이나 담배를 처음 접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처음 접한 장소와 현재 남용하고 있는 장소의 차이는 별로 발견하지 못하였다. 현재에도 담배는 본인의 집이나 친구집, 학교 안이나 학교 근처에서 피우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술은 주로 유흥업소와 학교근처 편의점 등에서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과 담배를 현재 구하는 경로를 보면 자기가 구입하거나 친구가 구입하거나 주로 가게에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카페나 술집과 같은 장소에서 주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처음 접하게 된 계기를 물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응답이 많았다. 가장 많은 경우가 친구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본인이 술과 담배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 친구의 권유에 의해 시작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나, 친구나 선배의 강압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시작하게 되었다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청소년들이 술이나 담배를 처음 접하게 되는 계기나 현재 남용하는 행태로 보아서 친구나 선배 등 동료집단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술의 경우에는 친척 어른이나 부모, 심지어는 수학여행 기간 중에 교사에 의해 처음 접한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태도 역시 무시 못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하지 않다면 술은 좋은 것”이라는 사회적 태도가 청소년들의 음주에 적지 않는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일부 청소년은 “어른들은 술과 담배를 마음대로 하면서 왜 우리는 할 수 없는가?”, “사실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나쁜 짓인가?”, “지나치지 않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 “요즈음 학생치고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은 학생이 몇 명이나 되나?” 등등 항변과 변명조의 반응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술과 담배에 대한 사회적인 태도가 바뀌기 전에 법적인 규제를 통해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근절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술과 담배를 남용하는 장소를 보면 자기집이나 친구집, 학교 안이나 학교근처, 집동네, 유흥업소 등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면 학생들의 생활반경 어디에서나 남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어디에서든지 술을 마실 수 있고 담배를 피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술과 담배에 대한 사회적인

높은 허용도 때문인지 사실 청소년에 대한 술과 담배는 실질적으로는 허용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장소를 보아도 동네 슈퍼는 물론이고 24시간 편의점, 유흥업소등 학생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어디에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청소년보호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대두되는 것이다.

2. 음주와 흡연과 비행간의 관계

고등학생과 대학생들 상대로 음주 및 흡연 등이 비행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지에 대해 물어 보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담배보다는 술이 비행과 연관이 있으나 실제로는 담배는 물론이고 술 역시 비행과 직접적인 연관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비행을 저지른 경우가 없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술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기 보다는 간접적인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예를 들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음란물을 같이 본 경우 등이 있기는 하지만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란물을 보았다기 보다는 같이 어울려 술도 마시고 음란물도 보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담배에 비해 술은 다른 비행과 연관이 되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신 후에 친구들과 싸움을 하였다든지, 술을 마시고 용기(?)가 생겨 절도를 하였다든지 등은 술이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배가 더 나쁠 수 있다는 학생도 있었다.

“일반 학생의 경우 담배의 위해성이 오히려 크다. 술은 그저 한 번 먹어볼 수 있지만 담배는 인이 박히는 거라 담배를 지속적으로 핀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적인 기준에서 많이 벗어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담배 피는 사람은 술도 당연히 마신다고 볼 수 있으며 비행을 할 확률도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술과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친구들로부터 돈을 빼앗거나 절도를 한 경우는 적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슈퍼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훔친 경우도 적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술과 담배를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절도나 금품갈취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중고등학생들에게 유흥비란 적지 않

은 비용이다. 처음에는 부모를 속여 돈을 마련하게 되나 유흥비가 점차로 늘게 되면 부모를 속여 마련하기가 힘들게 되면서 친구들에게 돈을 빼앗게 되며, 더 나아가 용산이나 청계천 전자상가등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 금품을 갈취하는 행태로 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담배는 다른 비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는 많지 않으나 술은 담배에 비해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비용과 술과 담배를 즐길 수 있는 유흥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저지르는 비행이 많다는 점을 보면 술과 담배는 비행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태도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거의 없었으며, 알게 된 계기 역시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이경규가 간다”를 시청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우리 나라와 같은 법문화에서 법이 제정되어 실시된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은 법에 대해 무관심할 뿐 아니라,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 수 있는 법이라고 해도 막상 법을 어겨 적발되기 전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법문화에서 법이 강력히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은 법전에만 존재하는 죽은 법이 되고 만다. 청소년보호법과 같이 의욕적으로 출발한 법이라고 해도 강력한 집행의지와 실질적인 집행력이 없는 경우에는 또하나의 죽은 법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인지도는 “이경규가 간다”라는 프로그램 덕분에 매우 높았다. 그러나 술과 담배를 규제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적었다. 학생은 물론이고 면접을 한 6명의 학부모 중 한사람도 다른 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다만 청소년 관련 단체 종사자만 알고 있었을 뿐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기존에도 다른 유사한 법이 있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놀라며 “왜 그러한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청소년보호법 역시 제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강한 불신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4. 단속 경험 및 단속에 대한 태도

단속 경험은 학생과 수퍼주인 술집주인 등에게 질문하였으며, 단속에 대한 태도는 모든 면접자에게 물어 보았다. 단속 경험에 대한 질문에 모든 응답자가 단속을 당한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심층면접이 4월부터 10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특히 학생과 수퍼주인, 술집주인에 대한 면접은 4-5월에 실시하였으며, 면접대상 인원이 학생이 10명, 술집과 수퍼주인은 4명 정도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을 일반화시키는데 문제가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이 어느 정도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술과 담배에 대한 단속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서는 술집주인, 수퍼주인, 고등학생, 대학생등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학부모, 청소년 관련단체 종사자들은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단속의 필요성이라는 원론적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학생과 술집주인, 수퍼주인 등은 단속의 실효성과 술과 담배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허용태도를 들면서 “필요하기는 하나 잘 되지 않을 것이라면 안하느니만 못한 것이 아니야?”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반면, 학부모와 청소년 관련단체 종사자, 특히 학부모의 경우에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부모들 중에서는 술과 담배보다는 음란물에 대한 단속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음란퇴폐성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청소년대상 오락쇼 프로그램 등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단속하기가 쉬워졌다는 업소 주인도 있었다. 다음의 면접 내용을 보자.

“문 : 학생들이 순수히 규제에 응하는가

답 : 주인이 하기에 달렸다. 우리는 비디오가게를 5년 정도 경영했다. 그 당시에는 법이 현재와 같이 강화되지 않은 때였다. 우리는 처음부터 미성년자에게는 성인용 비디오물을 대여하지 않았다. 요즘은 오히려 법이 강화가 되었으므로 규제대상에게 말을 하기 훨씬 편안해졌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친절하게 얘기하면 다들 이해한다.”

또한 어느 장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일까라는 질문에 한 고등학생

이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하였다.

“대학교 주변을 단속해야만 한다. 중고등학교 주변을 단속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왜, 대학주변에서 놀지 어리석게 본인 학교주변에서 얼쩡거리지는 않는다. 대학생 틈에 섞여서 술 마시는게 제일 안전하고 또 그런 곳은 규제조차 하지 않는다. 규제한다고 해도 생일 빠른 애 하나만 끼고 대학생이라고 하면 그 뿐이다. 사실 고등학생임을 식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마디로 그런 법 자체가 무용지물이지 않겠는가 ”

5. 규제연령에 대한 태도

규제연령에 대한 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뉘고 있다. 기존의 만 18세를 찬성하는 의견, 만 20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 그리고 만 19세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8세를 찬성하는 의견은 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다. 특히 대학생은 규제연령이 만 20세가 되면 상당수의 대학교 2학년까지 음주와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 강력히 표명되었다. 고등학교 학생 역시 18세에 동조하였다. 찬성하는 의견의 근거는 요즘 청소년들은 조숙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리판단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어느 대학생의 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만 18세 미만이 좋다. 왜냐, 이미 본인도 타인도 청소년기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대학생이나 고졸자들에게 법적으로 술 담배를 금지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만 20세 미만의 경우는 대학 1학년 심지어는 2학년까지도 규제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또 고등학교만을 나오는 경우 사회인이 되어서도 법적으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 18세로 했을 때 걸리는 것은 고 3학생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현실상 고 3은 굳이 규제할 필요도 없다. 왜냐, 그들은 바쁘므로 하래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고 3이 되면 한 반은 완전히 두 부류로 분리된다. 한 쪽은 공부파, 한 쪽은 공부포기파. 공부파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어찌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것을 못 이겨 술을 마실 뿐이고 본인들이 그걸 사기 위해 방황하지는 않는다. 또 그 때 마시는 게 뭐 그리 나쁜 일일것느냐. 다른 한 쪽인 공부포기파는 아무리 규제를 한다하더라도 다 마시고 다 담배 권다. 대학가기를 포기한 입장에서의 고 3은 이제 더 이상 어린 아이들이 아니

다. 규제는 무의미하다. 다시 말하면 굳이 고 3을 규제대상으로 잡아놓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사실 고 3은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틈도 없지 않는가?”.

한편, 만 20세 미만을 찬성하는 의견은 주로 학부모였다. 한마디로 “술과 담배 같이 좋지 않은 물건을 무엇 때문에 일찍부터 허용하는가?”라는 태도로 학부모들의 의견은 집약된다. 18세로 했을 때, 상당수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술과 담배가 허용된다는 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어느 학부모의 말을 인용하여보자.

“만 20세 미만이라 하면 고등학생이 없지만 만 18세 미만이라 하면 고 3의 경우 만 18세 이상에 해당하므로 법적 규제연령에서 제외된다. 보기에 고등학생 같아 보이는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본인이 사회인임을 주장할 경우 상당히 애매해 진다. 그 사람이 고등학생임을 밝혀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은 규제연령을 만 20세 미만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난 보수적이라 그런지 규제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 20세 미만으로 할 경우 대학 1학년생의 어느 정도가 규제대상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술담배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규제연령을 높여야 한다. 술담배는 인체에 해롭다고 하여 권장되는 식품이 아니다. 안할수록 좋은 것이다. 대학 1학년생이 술담배를 안하면 그게 뭐 나쁜 일이나. 또 20세 미만으로 할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을 하는가 본데, 거꾸로 말하면 그 아이들 중에 하고자 하는 사람은 또 다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만이라도 철저히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 18세 미만으로 할 경우 규제에서 풀린 고 3학생들은 이제 법적 규제에서 풀렸다고 생각해서 술담배에 더 다가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 나이는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라 주변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경우 역전에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해 술담배의 유혹에 대해 저항할 합리적 근거라도 찾을 수 있었으나, 이제 그나마 없어지면 안하는 본인들이 또래들에 비해 초라해 보일 것이다. 따라서 만 18세 미만으로 규제대상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편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만 19세라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대부분은 규제 대상이 되나 대학교 1학년 학생의 상당수도 규제대상이 된다는 문제가 있으나, 술과 담배나 음란물과 같은 좋지 않은 물건에 대한 규제연령을 구태여 18세로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다. 대학생과 근로청소년이 문제라고 한다면 예외 규정을 둘 수도 있다면서 만 18세는 이르다는 의견이다.

6. 연령확인 절차 문제점

업소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하기가 힘들며 주민등록증을 두고 왔다고 하면 사실상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다. 요즘 고등학생들은 덩치가 크고 사복을 해서 겉으로 보아서 18세와 19세를 구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대조할 때 일일이 현재 날짜를 보고 대조하는 건 불편하다. 예를 들어 1980년 1월 1일 출생자라는 식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신경을 훨씬 덜 쓸 수 있어 좋다. 아울러 고등학생인 학생이 주민등록증을 가져와만 18세 이상임을 주장하는 경우 있다. 어떤 경우는 본인이 학생이 아니라고 우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고등학생임을 밝히면서 현행법의 규제연령을 들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한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심지어는 사복을 입고 핸드폰을 들고 와서 담배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한 갑을 달라고 하지 않고 다섯 개 열 개 달라고 해서 구입 가격을 높이는 경우도 있으며, 사적으로 알고 지낸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길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결국 우리 나라와 같은 실정에서 업소 주인이 연령을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신분증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외국과는 달리 이러한 문화가 아직 사회적인 관행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소 주인은 주인대로 19세가 넘은 성인도 성인대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당국의 엄격한 단속 없이 시행될 것 같지는 않다. 적어도 당분간 주민등록증 확인 절차가 사회적 관행으로 자리잡기까지 철저한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7. 위반시 처벌에 관한 태도

청소년보호법 제 50조와 51조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벌칙에 관한 것이다. 50조를 보면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하였거나, 술과 담배를 제외한 약물 즉 본드나 부탄가스, 기타 알약, 대마, 마약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하였거나, 유해매체에 대한 수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제 51조를 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포장용 안한 경우,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술이나 담배를

판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면접대상자 중에서 이러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다만 학부모 중 1명, 업소 주인 2명, 학생 1명 정도가 벌칙이 상당히 엄하다는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위반 업소 주인을 처벌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 위반하는 업소는 처벌받아 마땅하나, 형량이 너무 과할 경우는 현실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었다. 한 업소 주인은 “너무 과하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먹고 사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또 뒷거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4인 가족 한달 생활비가 이삼백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불법거래를 없애기 위해 이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1,000만원의 벌금은 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에는 위반학생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그러나 적발하는 과정에서 유해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를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에 알리는 것에는 반대하였으나 학부모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처벌로 경찰서로 잡아가는 것 같은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 같아 훈방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꼭 처벌해야 된다면 가벼운 사회봉사명령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8. 청소년보호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전제 조건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청소년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 조건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청소년보호법”만으로 청소년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청소년문제는 가정, 학교, 사회의 문제가 청소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가 제자리를 찾아 엄격하나 자애로운 가정교육을 시켜야 하며,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학교에 정착되어야 하며, 어른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 유흥업소에 드나들지 않는 한 청소년보호법만 있다고 해서 청소년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특히 학교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교사들이 사명감 없이 입시위주 교

육만 시키고 있으며, 학교는 학생을 선도할 의지 없이 처벌위주 훈육 일변도라고 원망하였다. 학교 교사가 일차적으로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명감이 무엇보다 우선시 된다고 하였다. 한편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물지각한 어른들의 행태에 비판적이었다.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유흥업소보다 훨씬 더 심한 장소에 출입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자주 출입하는 업소의 주인도 어른이며,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를 팔거나 대여해주는 사람도 어른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른들이 먼저 정신차리지 않는 한 청소년보호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마지막으로 왜 청소년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전반적으로 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이나 기타 단속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의 응답자에게서 발견되었다.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응답자들은 “단속을 하기 전에 미리 알려 준다면서요”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단속 공무원과 적발된 업자 사이에 “검은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편견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한 대학생은

“단속 있으나 마난 걸 우리는 다 안다. 적발돼도 진술서 한 장이면 된다. 그 결과 학교 쪽에 통보 안하는 거 우리 다 안다. 다만 단속 경찰의 책임량 채우기 위해 하는 요식행위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다. 또 학교측에 연락 간다고 해도 걱정될 거 하나 없다. 그저 가서 한 두 대 맞는 거 말고 학교에서 내리는 뽀족한 수의 처벌 규정도 없다. 심지어는 먹으려면 걸리지 말지 괜히 걸려 귀찮게 군다고 혼날 뿐이다”

라고 하면서 경찰, 학교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였다. 또 다른 학생은 “지난 번 본인이 규제 받았을 때 진술서를 썼다. 쓰는 도중 업주쪽에서 경찰관과 말이 오고 갔고 나는 진술서를 쓰지 않아도 되게 됐으며 멀쩡히 귀가할 수 있었다” 라고 하면서 단속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단속은 경찰의 힘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일부 학부모에게 제시되었다. 학부모를 비롯한 민간단체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된 후 모든 학부모들이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교사들이 학교 주변 유흥업소를 단속하려 해도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업소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였다. 청소년단체 종사자들 역시 준사법권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의견이었다. 청소년보호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집행이 제대로 되어 하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물론이고 경찰의 힘으로도 해결되기 힘들다

면 민간단체에게 준사법권을 주어야 하며 감시와 직발기능을 담당케해야 된다는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술과 담배의 규제연령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해답은 있을 수 없다. 최종적으로는 가치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물음이며, 본 연구의 결론 역시 연구자들의 가치판단에 따라 결론을 지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가치 혹은 기준에 의해 규제연령을 제한할 것인가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논의에 기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연령을 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그 첫째는 청소년에 대한 개념과 평가를 기존의 이론을 중심으로 알아 보았다. 즉 히 청소년에 대한 평가는 규제연령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청소년기가 불안한 시기이며 가치판단의 혼란 속에서 방황하는 시기라면 술과 담배에 대한 규제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 반면에 청소년기가 나름대로 안정적인 시기이며 청소년들이 비록 성인에 비해서는 가치기준이 확고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도 적어도 술과 담배를 남용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가치판단은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한다면 규제연령을 구태어 높이 설정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이론과 경험적 연구에서 살펴 본 결과 아직은 확실한 결론이 없으며 이론과 학자에 따라 청소년기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기도 하며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기도 한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기가 연령으로 볼 때 언제 시작하며 언제 끝나는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 역시 확실한 대답을 주지 못했다. 학자에 따라 서로 조금씩 다르다는 것과 관점에 따라서는 청소년기가 24-5세까지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술과 담배에 대한 규제연령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에 대한 어떠한 평가 역시 이론적 그리고 경험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청소년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 긍정적인 면도 있으며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이지 모든 면에서 부정적일 수 없고 긍정적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실사 청소년기가 기본적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서 방황하며 반항하는 시기라고 해도 모든 청소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기가 안정된 시기라고 해도 모든 청소년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썩보면 당연한 결론일지 모르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 결국 우리가 청소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청소년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청소년을 긍정적으로 바라 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연령 역시 관점에 따라 16세, 17세, 18세 심지어는 24-5세까지 연장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역시 우리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학술적인 문제로 해결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이란 보통 어디까지로 규정되는가의 문제와 청소년에 대한 우리의 평가기준과 그에 따른 평가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음주와 흡연 허용 연령을 생각해 보자. 계약문화가 발달된 서구사회에서 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서구라면 우리는 법보다는 도덕이 지배하는 사회가 이상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덕은 법을 상회하는 개념일뿐 아니라 법과는 다른 개념이다. 도덕과 인륜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심한 사람이 법에 호소하는 것이지 상식과 양심이 있는 사람은 구태어 법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법문화이다. 따라서 법적인 연령과 사회문화적인 연령이 서로 상충한다면 법적인 연령의 구속력은 없어진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화 속에서 청소년이란 누구인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란 미성년 즉 성인이 아직 아닌 사람이란 의미가 가장 강하다. 한편 아동이라고 한다면 아직 어린아이라는 말이고 청소년이라면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아직 성인 즉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어린 사람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인과 아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연령이 중요한 기준이기는 하였으나 연령만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었다. 고래로 혼례를 치렀으면 어른 대접을 하였으며, 나이가 많더라도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으면 어린이 대접을 했다. 아울러 학식이 많으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대접을 하였으며, 불학무식한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도 어른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다. 나이로 봐서는 어른이라도 행동거지가 한심하다면 어른 취급을 하지 않았으나 나이가 어리더라도 행동이 옳으면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즉 어른과 아이의 구분은 나이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 학식, 인품, 행동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우리의 사회문화적인 기준에서 성인의 대접을 받는 나이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마도 학교일 것이다. 인간의 발달 단계를 아동, 소년, 청소년, 청년, 성인으로 나누어 보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아동 즉 어린아이이며, 중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소년이며,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청소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청년이며, 결혼을 했을 때 비로서 완전한 성인으로 대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문화적인 연령집단 구분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부 즉 학업이란 단순한 지식을 배우는 것은 아니다. 학업을 닦는다는 것은 인격을 닦는 것이지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도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인성교육의 부재라고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어린 소년은 아닌 대접을 한다. 아무리 대학생이 10여년 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고 해도 대학생에 대한 사회적인 대접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 조금은 특별한 대접을 하고 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대학의 현실이 어떻건 간에 대학은 아직 우리의 심성 속에서는 최고학부이며 상아탑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이보다는 학업 단계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나이가 20살이더라도 청소년이지 청년 혹은 더 나아가 성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특히 대학생이라면 성숙한 성인은 아니더라도 성인의 반열에 처음 들어선 청년이지 소년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음주와 흡연을 규제하는 나이를 일단 고등학교 재학생까지로 한정하여 보자. 그렇게 되면 만 18세 미만은 아니며 적어도 만 19세 미만이 되는 것이다. 그래도 문제는 있다. 만 19세 미만으로 했을 때, 즉 만 18세까지 음주와 흡연이 제한된다면 약 1/3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제한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만 20세 미만이라는 것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대학교 2학년생 중 상당수의 학생에게 까지 음주와 흡연이 금지된다는 것은 그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자.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다시 연령에 대한 논의는 원점으로 돌리자. 즉 20세 이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해당 행동에 대해 기본적인 가치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면 25세라고 해도 해당 행동을 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기본적인 가치는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그 행동을 하고 싶은 충동을 자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 역시 규제를 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그 행동 자체의 해악성이 너무나 심하다면 실사 성인이라고 해도 금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리

화나나 메스암페타민, 마약 등은 성인에게도 금지된 약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연령을 제한하려는 것은 술과 담배인 것이다. 술과 담배는 성인에게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허용된 것이다.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지위비행(status offense)로 규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을 갖는 술과 담배에 대한 규제를 위에서 언급한 3가지 기준을 비추어 생각해 보자.

첫째, 술과 담배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 및 태도가 어느 때 형성되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자. 다시 말하면 술과 담배가 인체에 해로운 것인지 아닌지, 사용을 해도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언제인가? 만일 고등학생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없는 나이이고 성인이 되어야 비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될 수 있는 한 규제연령을 높이 설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학생 정도라도 술과 담배가 좋지 않다는 사실은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구태어 높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연구는 제한 되어 있으나, 형사정책연구원의 한 조사 연구를 보면 고등학생 역시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긍정적인 태도보다 약간 강하게 나타났으나 부정적인 태도 역시 매우 약하다는 것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따라서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음주와 흡연을 하는 학생이라도 술과 담배가 좋다고 생각해서 하기 보다는 나쁜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아주 심하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합리화를 하면서 남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오히려 술과 담배와 같은 약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의 태도보다 성인들의 태도나 가치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오늘날 중고등학교에서 술과 담배는 실질적으로는 허용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7-80%의 학생이 술과 담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대다수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술과 담배는 실질적으로 허용된 상태에서 그다지 나쁘다는 생각없이 남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학생의 경우를 살펴보자. 대학생 중 술과 담배를 하는 학생은 술과 담배가 비록 건강에 좋지 않을지 몰라도 스스로 판단에 의해 사회적으로 허용된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신입생 환영회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술을 강제로 심하게 먹여 사망한 사건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

로 허용된 것이다.

어떠한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은 그 행위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허용되어 있는가와 관련이 크다.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은 나쁜 행동으로 간주되며 허용되는 행동은 좋은 혹은 옳은 행동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특히 성인에게는 허용된다는 사실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술과 담배를 청소년에게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술과 담배 그 자체의 해독이 적어도 청소년에게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것이고 그 유혹 역시 매우 큰 것이라고 한다면 허용 연령을 높게 설정할 뿐 아니라 규제 역시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허용적인 문화에서 규제를 해보아야 실효성도 없는 실정에서 구태어 높이 설정할 당위성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어떠한 기준에서 술과 담배의 해악과 유혹의 강도를 결정해야 하는가?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과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술과 담배는 과연 비행과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요인이 원인이 되어 술과 담배를 시작하며 지속하게 되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술과 담배는 비행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뿐 아니라 술과 담배는 더 심한 약물, 즉 그 해독성이 심한 약물로 나아가는 입구 약물이라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술과 담배를 시작하며 지속하는 계기는 술과 담배에 대한 태도보다는 상황에 의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술과 담배에 대한 규제는 지금보다는 더 철저히 시행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술과 담배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같은 태도는 청소년이라면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는 있으나 허용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먼저 시작한 친구들의 유혹이나 압력 등에 의해, 수학여행이나 친구집에서 잠을 잘 때 등의 계기가 되어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철저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술과 담배에 대한 규제 연령은 높여야 한다는 잠정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중고등학생들이 술과 담배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쁜 것도 없다는 분위기에서 우연한 계기에 호기심에 의해 시작된 것이 지속적인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비록 대학생이라고 해도 20세 미만까지는 규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술과 담배는 나쁜 것이라는 사회적인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규제연령을 만 20세 미만으로 설정할 필요성 역시 대두되는 것이다. 즉 좋을 것도 없는 것을 미리 허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보다 더 판단 능력이 있다고 생각될 때까지는 허용하지 않는 편이 더 옳다는 주장이 성립되는 것이다.

우리가 논의하는 음주와 흡연에 대한 연령규제는 법적인 규제이지 사회적인 규제가 아니다. 따라서 규제연령을 어떻게 설정하든지 간에 그것은 기존의 법 논리에 합당해야 한다. 다양한 법률 사이에 모순이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며 모든 법의 배후에 있는 법철학 혹은 법윤리에 저촉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청소년보호법을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조명해 보았다.

첫째, 청소년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연령규정이 그 근거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을 18세미만으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현행 법률과 충돌이 된다는 점이다³⁰⁾. 더 나아가 청소년을 지칭하는 법률용어가 개별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상이하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요약한 다음의 글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 명칭은 ‘청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소년’, ‘아동’등 다양하다.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법률에서 사용하고 연령범위(9세-24세)까지 함께 정의한 법률은 청소년기본법이 유일하다. 그외 연령범위는 정의하지 않고 단지 청소년이라는 명칭만 사용한 준용 법률로는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관리법등이 있다. 유사명칭으로서 ‘연소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이를 18세 미만자로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영화진흥법이고, 연령 정의 없이 연소자 명칭을 사용한 준용법률로는 공연법, 음반 및 비디오물등에 관한 법률,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다음으로는, ‘미성년자’ 명칭을 사용한 법률로는 미성년자보호법,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등이 있다. 이 법률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법률로서 유해업소를 단속, 징화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민법 제4조에 성인(만 20세 이상)만 규정되어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개념정의는 어느 법에도 없기 때문에 민법의 ‘성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미성년자’를 해석하여 20세 미만자로 적용하고 있다. ‘소년’의 명칭을 유일하게 사용한 법률은 유일하게 소년법으로서 동법에서는 소년을 20세 미만자로 규정하고 있다”³¹⁾

이와 같이 각종 법률에서 각종 개념을 명확한 구별이 없이 혼용하고 있으며 연령 역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물론 청소년과 그 유사 개념을 확일적으로 통일하고

30 음주와 흡연과 관련된 금식연령에 대한 현행 규정에 대한 요약표는 부록 3을 보라

31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생활환경개선종합대책-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에 관한 연구-, 1966

연령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법률간에 일관성은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한두개의 일관성 있는 개념으로 통일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의 입법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주마다 조금씩 달라 일률적으로 결론짓기 힘들다. 적어도 민법상의 권리 개념인 minor와 형법상의 제재 개념인 juvenile이 구별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보통 juvenile은 만 22세와 만 18세를 공동의 기준으로 하고 minor는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형사처벌의 기준인 juvenile은 2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소년이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되며, 12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여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한편 각종 권리능력을 규정한 연령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연령은 13세, 병역지원 입대연령은 17세, 주민등록증발급연령은 17세, 일반운전면허는 18세, 담배구입은 19세, 민법상 성인연령은 20세, 선거권 부여는 20세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연령규정을 획일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나 일반적인 기준으로 권리에 관한 연령은 가능한 한 낮게 규정하고 형사처벌에 관한 연령은 가능한 높게 적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8세 미만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아울러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선인 24세는 국가가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권장할 만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즉 각종 권리를 인정하는 청소년의 연령은 만 18세를 기준점으로 하되 사회문화적인 관행을 고려하여 조정할 것이며, 형사처벌능력은 현행대로 20세 미만을, 국가가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육성 의무 연령은 24세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민법상의 성인과 선거권 부여 연령 역시 18세로 하향조절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제안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가지 기준에서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연령규정을 살펴보았다. 우선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기존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을 때 어떠한 이론에 의거해서도 명확한 연령을 규정할 수 없는 문제이며 다만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요소

를 고려하여 볼 때, 고등학교 재학생까지는 청소년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었다. 그 다음으로 약물과 비행, 약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음주 및 흡연에 대한 규제는 가능한 한 철저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허용 연령을 가능한 한 높이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두 결론은 서로 상충되고 있다. 사회문화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가능한 한 하향 설정하되 학업단계를 고려하여 고등학교 재학생까지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 반면, 음주와 흡연의 해독성을 중심으로 보면 20세 미만 혹은 그 이상까지라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결과 청소년에 대한 각종 권리에 대한 연령은 하향 설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고등학교 재학생까지는 제한하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면 음주와 술과 같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약물은 비록 그 해악성이 높다고 하여도 규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어 허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령에 청소년은 “고등학교 재학생까지”라는 정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령이 설정되어야 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18세로 한다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약 2/3가 18세 이상이 되어 고등학생 신분으로 음주와 흡연이 허용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사회문화적인 기준으로 볼 때, 비록 실제적으로는 허용되고 있다고 해도, 원칙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은 18세 미만으로 하되 단서조항이나 시행령과 같은 것을 통해 고등학교 재학생은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운용상에서는 문제가 따른다. 학교 안에서는 교사에 의해 통제가 될 수 있으나 학교 밖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하다. 18세 이상이라면 주민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사복을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주민등록을 제시하면서 술과 담배를 요구하면 업주는 고등학교 학생이 아니라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고등학교 학생이 아니라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구태어 시도한다면 청소년에게 집 전화번호를 물어 집에나 전화를 걸어 부모에게 물어본 뒤 확인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절차를 의무화 시킨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아울러 18세가 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술과 담배를 합법적

으로 구입하여 18세 미만인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현행 18세 미만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20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대학교 2학년 학생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인 기준으로 볼 때, 현실성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그 중간인 19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19세로 규정하였을 때의 문제는 18세로 규정했을 때와는 반대로 약 1/3 가까운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학교 1학년 학생이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즉 거의 모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만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고등학생까지는 규제대상에 포함되나 7살에 입학한 학생들은 19세가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아 사실상 술과 담배가 사회문화적으로 허용되었는데 법이 바뀐다고 해서 그러한 관행이 쉽사리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제적인 규제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이 우려되는 것이다. 만 18세가 된 청소년 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은 예외로 하는 규정을 설사 둔다고 해도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증을 제시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으나 근로청소년의 경우에는 취업증(?)을 제시할 수도 없으며, 모든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복사해서 지니고 다니다가 제시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학생증을 제시하는 대학생은 예외로 한다고 하면 평등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대학생만 예외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19세로 규정하는 것이 “취를 잡다 장독을 깨트리는” 문제라면 18세로 규정하면 “매울 아끼다가 자식을 버리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어느 한 쪽으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사회문화적인 요인을 심층면접 결과와 기존의 경험적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심층면접과 약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는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첫째는 음주와 흡연은 우리나라 청소년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행위로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거의 인정된 행위라는 점이다. 성인들 역시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을 비록 원칙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있을 수 있는 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학여행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술을 사주기도 하며 고등학교 졸업식 직후 교사가 졸업생들에게 술을 사주고 담배를 권하는 관례가 비담으로 전해질 정도이다. 둘째, 우리나라 미문화 때문인지는 몰라도

일반인이 법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여 청소년보호법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업소주인도 거의 없었다. 설사 “이경규가 간다”라는 프로그램 덕분에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인지도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법문화가 존재하는 한 철저한 홍보를 통해 적어도 청소년보호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청소년과 업소주에게는 동법의 내용을 정확히 인식시키지 않고는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점이다. 셋째, 법의 내용보다는 법의 철저한 집행이 법의 실효성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규제대상이 되는 청소년이나 업주들의 태도를 보면 “술과 담배는 그다지 나쁜 것이 아니며”, “규제를 당할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당한다고 해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으며”, 청소년들 역시 “학교로 연락이 온다고 해도 야단이나 한두대 맞으면 넘어간다”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연령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점은 연령은 상향조정하고 집행은 지금까지 관행대로 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 질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되 집행은 철저히 하는 편이 오히려 실효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대로 만 18세 미만이 더 현실성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3에 가까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고등학교 학칙에서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학교 안에서는 음주와 흡연이 철저히 금지되며 학교 밖이라고 해도 적발이 되면 처벌된다는 사실을 청소년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상인 청소년은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생 신분으로 술과 담배를 남용하다 적발되면 학교로 통보되고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예방할 수 있을 뿐이다.

청소년보호법의 성패는 철저한 집행에 있는 것이지 합리적인 연령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다.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집행하는 것이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집행하지 않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수차례나 언급하였지만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된 “술과 담배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는 태도는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이나 그 중요한 것이 학교나 사회에서 철저히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술과 담배를 가

정에서 허용할 부모는 없을 것이다. 물론 술과 같은 경우는 '음부주'라든지 가족의 생일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허용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으나 항상 허용하는 부모는 없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학칙으로는 금지하고 있으나 규제가 철저히 못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대다수가 음주와 흡연의 경험이 있다는 사실은 고등학교 교사라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는 철저히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 밖으로 나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진다. 교복 자율화 이후 체격이 커진 청소년들을 겉으로 보아 고등학생인지 졸업생인지 구별이 가지 않아 대낮에 공공연히 담배를 피우며 각종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심지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래방, 비디오방, 소주방, 디스코텍등에서는 고등학생인 줄 알면서도 출입을 시킬뿐 아니라 주 고객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무시한 채 원론적인 면만 강조하면서 20세 미만으로 연령을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사료되면 19세 미만 역시 고등학교 졸업이면 미성년은 아니라는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현실성이 의심되는 것이다.

법만 만들어 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법만능주의는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사실 기존의 법이 제대로만 시행되었다면 구태어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새법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법은 나름대로 문제가 다소 있게 마련이지 완벽한 법이란 있을 수 없다. 다만 법이 어떻게 운용되며 집행되는냐에 따라 법의 실효성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청소년보호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의 집행은 거의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역시 일차적인 책임은 경찰에게 주어진 임무이다. 그러나 경찰의 업무를 볼 때 청소년보호법이 경찰에 의해서만 철저히 집행될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민간단체에 준사법권을 부여하여 감시와 적발기능을 대폭 이양하는데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생활지도 담당교사들이 유흥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 출입을 하려면 업소주인과 실랑이가 벌어진다. 물리적인 위협과 협박을 가해 제대로 단속을 하기가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적어도 생활지도 담당교사들에게는 준사법권을 부여하여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각종 청소년단체와 학부모회를 조직하여 음주와 흡연에 대한 적발과 예방을 물론이고 각종 음란물에 대한 감시기능을 하도록 예산지원과 준사법권을 주어야 한다. 물론 체포나 처벌과 같은 형사제제는 형사사법기관에서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발과 감시는 가능한 한 다양한

민간단체를 동원해야 한다.

이러한 관행은 음주와 흡연, 음란물 등 청소년 보호법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술과 담배, 음란물등에 대한 사회적인 허용관행이 음주와 흡연이나 음란물이 판을 치게 만든 주범인 것이다. 성인들은 자기들은 즐기면서 청소년들만 나무라는 경우가 많으며, 더 나아가 술과 담배는 그다지 나쁜 것이 아니라는 태도가 확산되어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자기도 고등학교 시절에 술과 담배를,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음란물을 경험한 성인이 상당히 많다는 점 역시 무시 못할 이유인 것이다. “우리 때도 그랬다. 그러나 지금 나를 보아라. 그다지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태도가 성인들 사이에서 만연되어 있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음주나 흡연, 음란물과 같은 청소년문제의 해결에 성인들을 적극적으로 동참시킴으로써 청소년문제의 심각한 실상을 인식시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술, 담배, 음란물 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인부터 좋지 않은 행동을 자제할 때 가능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법 집행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처벌 조항일 것이다. 법을 위반했으면 합당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벌이 죄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지나치게 관대해도 일반예방이나 특수예방이나 효과가 감소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처벌은 현실성이 결여될 정도로 심하다고 사료된다. 물론 시행령이나 지침을 통해서 적절하게 조정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며,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것은 상한선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는 법만능주의와 엄벌주의를 열볼 수 있다. 지나치게 엄격하면 적발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하려 한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도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집행은 제대로 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관행과는 괴리가 있는 법을 만들어 놓고, 걸리면 엄벌에 처하는 것을 통해 법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더 현실적인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한다면 현재와 같이 음주와 흡연을 비롯한 약물과 음란물을 규제하는데 그치지 말고 요즈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었으면 한다. 물론 약물과 음란물을 철저히 규제하면 학교폭력 역시 줄어들 것이다. 학교폭력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약물과 음란물을 즐기기 위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피해자 보호하고 가해자를 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확보된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아동학대와 같은 가정폭력, 교사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확보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규제연령은 만 18세미만”으로 하되 각종 민간단체에 준사법권을 부여하여 감시와 적발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동시에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사폭력등과 같은 각종 폭력에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일차적인 결론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하였다시피 18세 미만으로 규제연령을 결정하였을 경우 2/3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사회문화적인 특성상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일차적인 결론인 18세미만으로 규정할 때에는 전제조건이 있는 것이다. 즉 학칙으로 고등학교 재학생은 연령을 고하를 막론하고 음주와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수 있다면 18세 미만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학교 안에서는 실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학교 밖에서 집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만 19세 미만으로 규제연령을 설정하는 방안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자. 18세, 19세, 20세의 규제 연령 중 1차적으로 제안하는 연령은 18세 미만이다. 20세 미만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러나 18세 미만으로 규정하였을 때의 두가지 문제점, 즉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가치 기준에서 볼 때 상당수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제외된다는 문제점과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칙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문헌

- 국내 문헌

- 김동일(1993), 청소년음주와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승구(1994), 외국의 소년범죄처리제도와 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일수(1997), 한국형법 I, 박영사.
- 김제한, 공석영, 김충기(1991). 청년발달심리학. 서울: 세광
- 김종원(공저)(1986), 형법각론, 사법행정.
- 대검찰청(1993), 마약류 범죄백서
- 박선기(1977). 자아정체감과 장래조망에 관한 일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박아청(1987). 아이덴티티론. 서울: 교육과학사.
- 서일교(1982), 형법각론, 박영사.
- 유기천, 형법학(각론강의 上)(1982), 일조각.
- 이순형, 이영미(1997). 청소년의 가치지향과 생활만족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 4권 제 1호, 1-24, 한국청소년학회.
- 이재상(1998), 형법각론.
- 이정란(1987).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실현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전혜경(1986). 고등학생의 제배경 요인이 자아정체감과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여대 석사학위 논문.
- 정영석(1983), 형법각론, 법문사.
- 정우석(1988). 신청년심리학 - 청년발달과 비행심리의 고찰 -. 서울: 대왕사
- 정인숙(1979). 청년기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제경숙(1989). 고등학생을 위한 부모역할교육의 교과과정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복희, 정옥분, 유가호(1989). 인간발달, 서울: 교문사.
- 표갑수(1986), 청소년비행원인이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청소년의 약물남용과정에 관한 연구 - 소년원생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김상희 쪽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a), 약물남용의 실태와 통제방안 - 미국의 경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심영희 쪽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b), 성인남녀의 약물남용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문영호 쪽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 연구 -술, 담배를 중심으로-

황산덕(1983), 형법각론, 방문사.

- 외국문헌

Acock, Alan C. & DeFleur, Melvin L.(1972), "A Configurational Approach to Contingent Consistency in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ship",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7(Dec):714-726

Akers, Ronald L.(1985), Deviant Behavior - A social learning approach -,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Inc

Akers, Ronald L.(1992), Drugs, Alcohol, and Society - social structure, process and policy,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Andrews, Kenneth H. & Kandel, Denise B.(1979), "Attitude and Behavior : A Specification of the Contingent Consistency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4(April):298-310

Ausubel, D. P.(1954). Theory and Problems of Adolescent Development. New York: Grune & Stratton.

Ball, J.C., L. Rosen, J. Flueck, & D. Nurco(1981), "The Criminality of Heroin Addicts: When Addicted and When Off Opiates" in The Drugs-Crime Connection, Beverly Hills: Sage.

Bandura, A.(1964). The stormy decade: Fact of fictions? Psychology in the schools, 1, 224-231.

Becker, Howard(1963), Outsiders, A Division of Macmillan Publishing Co, Inc.

Bennet, T. & R. Wright(1984), "The Relationship between Alcohol Use and Burglary"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Buhler, Ch(1927). Das Seelenleben des Jugendlichen.. 4 Aufl.

Chaiken J. & M. Chaiken(1989), Redefining the Career Criminal: Priority Prosecution of High-Rate Dangerous Offenders, Washington D.C.: N.I.J.

Cole, L.(1959). Psychology of adolescence. Rinehart.

Corey, S.M.(1946). Developmental Tasks of Youth. in John Dewey Society Yearbook.. in D.P. Ausubel(ed.), Theory and Problems of Adolescent Development. New York: Grune & Stratton.

Douvan, E., & Adelson, J.(1966). The adolescent experie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Erikson, E. H.(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 Issues, 1, No.1.

Erikson, E.H.(1956).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ournal of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 56-121.

Gandossy, R. and J. Williams, J. Cohen, & H. Harwood(1980), Drugs and Crime: A Survey and Analysis of The Literature, Washington D.C.: N.I.J.

- Goode, Erich(1972), *Drugs in American Society*, McGraw-Hill Pub. Co.
- Goode, Erich(1989), *Drugs in American Society*, 3rd ed, McGraw-Hill Pub. Co.
- Gould, L.(1974), "Crime and Addiction: Beyond Common Sense", in *Drug and Criminal Justice System*, Beverly Hills: Sage.
- Grube, Joel W. & Morgan, Mark(1990), "Attitude-Social Support Interactions : Confingent Consistency Effects in the Prediction of Adolescent Smoking, Drinking, and Drug Us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53, No.4, PP.329-339
- Hall, G. S.(1904). *Adolescence*. Vols. I & II, New York: Appleton.
- Hauser, S. T.(1976). Self-image complexity and identity format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 161-178.
- Havighurst, R. J.(1953). *Human development and education*. New York: Longmans.
- Hurlock, E. B.(1976).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Jeson, R.(1982), "Severity of Delinquent Offense and Alcohol Involvement among Residents from a Rural Midwestern Juvenile Correctional Facility", *Juvenile & Family Court Journal*.
- Johnson, Bruce B.(1973),*Marihuana users and Drug Subculture*, New York, Wiely
- Kandel, Denise B.(1973), "Adolescent marijuana use: role of parents and peers." *Science* 181:1067-70
- Kandel, Denise B.(1980), "Developmental Stages in Adolescent Drug Development", in Lettieri et al. (eds.), *Theories on Drug Abuse*, Rockville: NIDA.
- Kroh, O.(1930). *Die Psychologie des Grvndschlkinde*s. 6 Aufl.
- Lewin, K.(1951). *Field Theory Experiment in Social Psychology*. (in *Feild Theory in Social Science*).
- Maier, H. W.(1969). *Three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Harper international edition.
- Marcia, J. E.(1967). Ego identity status: relationship to change in self-esteem, "general maladjustment", and authoritarianism. *Journal of Psychology*, 35, 118-123.
- Maslow, A. H(1956). Self-actualizing people: A study of psychological health, in C.W.Moustakas(ed.), *The self*, New York: Harper & Brothers.
- Mead, M.(1939). *From the South Seas*, New York: William Morrow.
- Murray, J. B.(1964). The identity image of the colege student. *Psychological Reports*, 14, 267-271.
- Mussen, D. H., Conger, J. J. & Kagan, J.(198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6th ed.). NY: Harper & Row, publishers.
- Neugarten, B. L.(1969).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of psychological issues into adult life. *Human development*.

- Podd, M. H.(1972). Ego identity status and mora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developmental constructs. *Developmental Psychology*, 6, 497-507.
- Schertzer, B., & Stone, S. C.(1974), *Fundamentals of Conuseling*, Boston: Houghton Mifflin.
- Sutherland, Edwin H. & Cressey, Donald R.(1970), *Principles of Criminology*, 5th ed. J.B. Lippincott Company
- Tumlirz, O.(1927). *Die Reifejahre*, I Aufl.
- USCA(United States Code Annotated) Title 18-42, 1992
- Waterman, C. K.(1975). Fathers and sons: A study of ego identity across two genera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 331-338.
- Windle, M. & C. Miller-Tutzauer(1991), "Antecedents and Correlates of Alcohol, Cocaine and Alcohol Cocaine Abuse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Drug Education* Vol. 21.
- _____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_____ (1969). *The Self and Identity*. In D. Rogers(ed.), *Issues in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부 록

[부 록 1] 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

(1985년 2월 25일 제정)

제1조 (청소년유해장소에의 체류) : 청소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장소에 청소년이 체류하는 경우에 관할행정관서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할행정관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의 각호의 1을 할 수 있다.

1. 그 청소년에게 당해장소를 떠나도록 종용하는 것
2. 그 청소년을 양육권자에게 인도하는 것 또는 양육권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을 청소년관서의 보호하에 두는 것

이러한 조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관서는 당해유해장소에 관하여 청소년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 (개념정의 : 증명) : ① 이 법률에서 소년이라 함은 14세미만의 자로, 청년은 14세이상 18세 미만의 자로 한다.

② 이 법률에서 양육권자라 함은 다음의 각호의 자로 한다.

1. 민법전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친권을 갖는 자
2. 친권자와의 합의로 친권을 대리하거나 교육의 범위내에서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은 청소년복지사업의 범위내에서 그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타의 자

③ 이 법률에 의해 양육권자의 동반이 요구되는 경우에 제2항 제2호의 자는 업소주인의 요구가 있으면 제2항 제2호의 권한 있는 자임을 소명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업소주인은 그 권한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이 법률에 의한 한계연령을 준수하는 한도에서 청소년은 요구가 있으면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만연령을 입증하여야 한다. 업소주인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만연령을 심사하여야 한다.

⑤ 이 법률은 결혼한 청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조 ① 음식점체류는 양육권자의 동반이 있는 경우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 허용된다.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사업의 승인된 주최자가 개최한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청소년이 여행중에 있는 경우
3. 청소년이 식사나 음료를 취하는 경우

② 16세 이상의 청년은 양육권자의 동반없이 24시간까지 음식점에 체류할 수 있다.

③ 청소년은 야간주점 또는 나이트클럽 및 유사위락업소에 체류할 수 없다.

제4조 (주류) : ① 공개된 음식점 또는 판매점에서 다음 각호의 1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마시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소주(Brantwein), 소주함유음료, 또는 소량의 소주만을 함유한 음료품
2. 16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는 제1호 이외의 주류

② 제1항 제2호는 청년이 친권자와 동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개된 장소에는 자동주류판매기를 둘 수 없다. 다만 자동판매기가 영업상 이용되고 있는 공간내에 설치되어 있고 일정한 장치 또는 상시적인 감독에 의해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동판매기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음식점법(Gaststättengesetz) 제20조 제1항은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5조 (공중무도장) : ①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양육권자의 동반없이 공중무도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16세 이상의 청년은 24시까지 출입이 허용된다.

② 제1항과는 달리 청소년복지사업의 승인을 받은 주최자가 개최하는 무도장 또는 예술활동이나 전통행사에 이용되는 무도장의 경우에 소년은 24시까지 16세미만의 청년은 24시까지 출입이 허용된다.

③ 청소년관서의 요구가 있으면 제1항에 대한 예외가 허용된다.

제6조 (공중영화장) : ① 영화가 상급주행정청에 의해 청소년에 대한 상영이 허가된 경우에는 청소년도 공중영화장에 출입할 수 있다. 6세미만의 소년은 양육권자가 동반한 경우에만 관람이 허용된다.

② 청소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된 영화는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다.

③ 상급주행정청은 영화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나이 제한 없음
2. 6세부터 허용
3. 12세부터 허용
4. 16세부터 허용

5. 18세부터 허용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영화가 형법전 제131조 또는 제184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그 영화를 관할형사소추행정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 제1호의 경우에 양육권자의 동반이 없는 공중영화장의 관람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소년의 경우 20시전에 상영이 종료되어야 한다.
2. 16세미만의 청년의 경우에는 22시전에 상영이 종료되어야 한다.
3. 16세이상의 청년의 경우에는 24시전에 상영이 종료되어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기록물등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영화의 공개상영에 대해 적용한다. 선전자막 및 특별프로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은 그 영화가 비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범위에서 비상업적으로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상급주행정청에 의하여 제3항 제1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영화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도서배포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제1조와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공연히 접근할 수 있는 공연영상물) : ① 공연된 녹화물, 영상음반 및 이와 유사한 영상물은 해당 프로그램이 상급주행정청에 의하여 연령별 제한이 해제되고 그 사실이 표시된 경우에만 청소년의 공연한 접근이 허용된다.

② 제6조 제2항과 제3항 제1문 및 제6항은 연령별제한의 해제 및 그의 표시에 준용한다. 연령별등급은 위조방지된 부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영상물이 상인에게 인도되거나 기타 상업적이용에 제공되기 전에 영상물과 그 포장에 동부호를 부착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상급주행정청에 의하여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18세미만 불허”로 표시된 영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청소년에 대한 제공, 양도 기타 접근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2. 영업소 이외의 소매상, 가관점, 통지할 의무없는 기타의 판매소 또는 수출상에 제공되거나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공연된 영상물은 자동판매기에서 공연하게 판매할 수 없다.

⑤ 상급주행정청이 제2항에 따라서 제6조 제3항 제1문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영상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도서배포에 관한 법률” 제1조와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6조 제3항 제2분은 준용한다.

제8조 (도박·오락장) : ① 청소년은 공중도박장 이와 유사한 사행장소(ähnliche vorwiegend dem Spielbetrieb dienenden Räumen)에 출입할 수 없다.

② 사행행위의 성과가 사소한 가치의 것인 한도에서 청소년은 국민축제, 사격대회, 대목장, 특별장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 사행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기대이익이 없는 전자화면오락기기를 유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1. 청소년이 공연히 접근할 수 있는 통행지역
2. 영업상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사업상 이용되는 공간의 외부
3. 감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영업장소 등의 출입구 또는 부속실

④ 공연하게 유상이용에 공하여진 기대이익없는 전자화면오락은 양육권자의 동반이 없는 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인간 또는 동물에 대한 성적행위, 또는 폭력행위를 묘사하거나 전쟁의 찬양 또는 무해성을 고무하는 오락기는 청소년이 공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공연한 흡연) : 16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는 공연한 흡연이 허용되지 아니 한다.

제10조 (청소년유해행사에의 참여배제) : 어떠한 공개행사 또는 영업에 제3조 내지 제8조의 적용을 통하여도 제거되지 아니하거나 본질적으로 감소되지 아니하는 제1조 제1문이 규정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관할행정청은 그 행사의 개최자 또는 영업주에게 청소년의 참여배제를 명할 수 있다. 위험을 제거하거나 극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참여배제명령은 한계연령자를 포함한다.

제11조 (제한의 고지 : 청소년유해광고) : 행사개최자 또는 영업주는 제3조 내지 제10조에 의해서 그의 영업시설 및 행사에 적용될 법규정과 영화의 등급을 쉽게알 수 있는 게시물트 고지하여야 한다. 업주는 영화 및 영상물의 등급을 고지하기 위하여 제6조 제3항 제1문의 표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급주행정청이 제6조 제3항 제1문에 따라 표시한 영화 또는 영상물의 선전 또는 광고에 있어서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기타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법으로 선전·광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제12조 (질서위반) : ① 행사의 개최자 또는 업주인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질서위반으로 한다.

1. 제3조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음식점에 채류하게 한 때
2. 제4조 제1항에 위반하여 주류 또는 주류함유식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취식하게 한 때

3. 제4조 제3항 제1문에 위반하여 주류를 자동판매기로 판매한 때
4. 제5조 제1항에 위반하여 16세미만의 청소년에게 공중무도장의 입장을 허용한 때
5. 제6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그의 연령등급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연영상물 등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 때
6. 제7조 제1항에 반하여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연령등급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연된 녹화물에의 접근을 허용한 때
7. 제7조 제2항 제2문과 제3문에 위반하여 동항에서 정한 형식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상급행정청에 의한 연령등급에 상반되는 표시를 부착한 때
8. 제7조 제3항 제2호에 위반하여 공연된 영상물을 자동판매기로 판매한 때
10. 제8조 제1항에 위반하여 대중오락기 기타 동조동항에 계기한 장소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때
11. 제8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소년의 도박참가를 허용한 때
12. 제8조 제3항에 위반하여 오락기를 설치한 때
13.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여 16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오락기이용을 허용한 때
14. 제9조에 위반하여 16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공연한 흡연을 허용한 때
15. 제10조에 의한 집행가능한 명령에 위반한 때
16. 제11조 제1문에 위반하여 영업시설 또는 행사에 대해 적용될 법규정을 동규정에 의한 게시물로 공고하지 아니한 때
17. 제11조 제3문에 위반하여 제6조 제3항 제1문에서 규정한 부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18. 제11조 제3문에 위반하여 선전 또는 광고시에 청소년유해내용을 게재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법으로 선전·광고를 한 때

② 18세이상인 자가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서 규정한 금지 또는 제7조 제3항 제1호의 금지를 통하여 제10조에 의한 집행가능한 명령을 통하여 제지되어야 할 청소년의 행위를 야기하거나 권장한 때에도 질서위반으로 한다. 제7조 제3항 제1호의 금지와 관련하여 친권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질서위반은 최고 30,000 도이치 마르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행사의 개최자 또는 영업주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1. 제1항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청소년의 육체적·정신적 또

는 도덕적 성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때

2. 제1항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때

[부 록 2] 일본의 청소년 관계법률

未成年者飲酒禁止法

(소화 22년 법223호)

제1조 (미성년자의 음주금지·친권자·영업자의 의무) :

- ① 만20세가 되지 아니한 자에게 주류를 음용시키게 할 수 없다.
- ② 미성년자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미성년자를 감독하는 자는 미성년자가 음주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제지해야 한다.
- ③ 영업자의 경우 그의 업종상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만20세가 되지 않은 자가 이를 음용하기 위하여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때에는 그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2조 (주류·기구의 처분) : 만20세미만자가 음용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소지하던 주류나 기구등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이를 몰수하여 폐기하도록 한다.

제3조 (벌칙) : 제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과료에 처한다.

제4조 (대위책임, 영업자책임) :

- ① 영업자에 대한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에 관한 이 법률의 적용은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단 영업상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같은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고 믿을 만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영업자와 그 대리인, 동거자, 고용인 등의 위와같은 행위에 대해서 영업자는 지휘·감독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③ 명치 33년 법률 제512호는 본법에 의한 범죄행위에 준용한다.

未成年者喫煙禁止法

(소화 22년 법223호)

제1조 (미성년자흡연의 금지) : 만20세가 되지 못한 자는 담배를 흡연할 수 없다.

제2조 (흡연기구 등의 몰수) : 전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행정처분으로 흡연에 사용된 일체의 기구 등을 몰수한다.

제3조 (친권자의 처벌) :

① 미성년자의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미성년자의 흡연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1엔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② 친권을 행사하는 자 대신에 미성년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과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제4조 (판매자의 처벌) : 만20세미만의 자가 스스로 흡연할 것임을 알면서도 담배를 판매한 자는 10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록 3] 청소년 음주 흡연 금지 연령에 대한 현행 규정

구 분	관련 법률	규제 연령
음주 및 흡연 금지	미성년자보호법,	20세 미만
	식품위생법	20세 미만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20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18세 미만
	국민건강증진법	19세 미만
유흥업소 출입금지	미성년자 보호법	20세 미만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20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18세 미만
유흥업소 고용금지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18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18세 미만
	식품위생법	20세 미만



POLICE SCIENCE INSTITUTE